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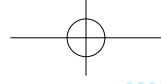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21.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21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 (조세특례제도의 목적) 「조특법」 제66조에서 제68조에 걸쳐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 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조합 또는 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적 농업 경영 즉,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조세지출금액) 「조특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 140억원, 법인세 188억원 총 328억원임
 - 「조특법」 제67조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 3억원, 법인세 30억원 총 33억원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
 -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 소득세 41억원, 법인세 186억원 총 227억원임
 - 3개 조항에 걸친 조세지출금액은 2020년에 합계 552억원으로 전망되며, 2021년에는 572억원으로 전망됨

- (본 연구의 목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조항들도 모두 2003년부터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2021년 말에 일몰기한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일몰에 따라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등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 농·어업 산업여건상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방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원방법 적절성) 농어촌 인구고령화와 공동화로 소규모 영세경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려움
 -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대형화를 유도하려면 조세지원 방식이 적절함
 - (지원수준 적정성)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을 장려하는 목적이 농업인 전반의 소득증대라면, 현행 감면조건은 법인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비슷한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음
 - 그러나 농업 생산의 속성과 전 세계적으로 개인(가족)농의 비중이 법인 농업경영체보다 훨씬 높은 현상을 보아 추론한다면, 법인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해서 법인화가 크게 증가할지는 미지수임
 - (유사중복성) 「조특법」상 조세지출제도나 개별 세법상 세금감면제도 및 재정사업 중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평가

- (효과성 분석) 동 지원제도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변화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증대효과) 소득분위별 소득지원효과를 추정한 결과, 농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55,000원 수준, 어가는 평균 65,000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증대 규모는 가구 총소득 규모의 0.08~0.15% 수준이나, 농어가 소득이 비농어가 가구에 비하여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무시할 수는 없음
 - (소득재분배효과)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따라 소득증가 효과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봄
 - 농가와 어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37%(0.457645 → 0.457816), 0.036%(0.531175 → 0.531363)로 약간 상승하여 상대소득격차가 약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비농어를 포함하는 전 가구 대상으로 동 제도의 소득분배구조 효과를 추정하면 지니계수가 0.0017%(0.460531 → 0.4605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 동 제도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일탈 행위)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농지 투기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부실이 이러한 일탈 행위를 방조하게 됨
 - 2019년 현재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약 45%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운영(휴업, 폐업), 소재불명 등의 법인으로 밝혀짐

- (실태조사의 강화) 우선적으로 농업법인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관리기구의 설치) 농업법인 관리기구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한 농업법인 관리 강화) 2021년 7월 23일 국회에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통과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일부 반영됨¹⁾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
 -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 도입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7. 24.)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일몰 연장) 3개 평가대상 감면제도는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몰 연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본래 목적에 충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부 일탈 법인 때문에 동 조세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 현재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세제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농업법 인제도(어업법인 포함)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나타나는 제도 악용 현상임
 - 따라서 세제 개선보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2021년 7월의 관련 법률 개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음

목 차

I. 서론	15
II.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19
1. 제도 배경 및 목적	21
가. 제도 개요 및 목적	21
나.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구분	22
다. 농가 및 어가 현황	26
2. 제도 운용 현황	28
가. 법인 현황	28
나. 제도 내용	39
다. 제도 연혁	47
라. 조세지출 규모	54
3. 선행연구와 주요 쟁점	59
가. 선행연구	59
나. 주요 쟁점	67
III. 해외 사례	71
1. EU 국가	73
2. 일본	76
가. 법적 형태	76
나. 농업경영체 현황	79
다. 농어업법인 관련 특례제도	81
3. 프랑스	87
가. 법적 형태	87
나. 농업경영체 현황	90

다. 농업법인 관련 특례제도	91
4. 독일	92
가. 법적 형태	92
나. 농업경영체 현황	93
다. 농업경영체 관련 특례제도	96
5. 영국	100
가. 법적 형태	100
나. 농업경영체 현황	100
다. 농업경영체 관련 특례제도	101
6. 소결	104
IV. 타당성 분석	107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109
가. 시장의 실패	109
나. 산업여건	112
2. 지원방법의 적절성	131
가.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조세지출	131
나.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133
3. 지원수준의 적절성	137
가. 제도 활용 현황	137
나. 지원수준의 적정성	138
4. 타 제도와와의 유사중복성	142
V. 효과성 분석	145
1. 농·어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147
가. 조세지원의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정책지향성	147
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50
다. 농·어가 소득분포 구조	157
라.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결정요인분석	172

마.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소득계층별 분포	182
바.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186
2. 정책시사점	187
VI. 결론	189
1. 요약	191
2. 농업회사법인의 관리	194
3. 결어	196
참고문헌	198
<부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5
<부록 2> 농업회사법인의 효과를 제외한 정책효과 분석	207

표 목 차

<표 II-1> 농업인(자경농민) 정의 및 요건	23
<표 II-2> 농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기준 비교	24
<표 II-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25
<표 II-4>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비교	26
<표 II-5> 연도별 농·어가 인구 및 경제 현황	27
<표 II-6>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	28
<표 II-7> 농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29
<표 II-8> 농업법인 실태조사상 농업법인 운영 현황	30
<표 II-9> 농업법인의 경영 경지면적 추이	31
<표 II-10> 사업 유형별 농업법인의 수(2019년 기준)	31
<표 II-11> 농업법인 출자금 형태별 현황	32
<표 II-12> 농업법인별 매출액 현황(2019년 기준)	33
<표 II-13> 농업법인 자산·부채 현황(2019년)	34
<표 II-14>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에 따른 농업법인 수(2019년)	35
<표 II-15> 연도별 농업법인 경영실태(법인당) 추이	36
<표 II-16> 어업법인 현황	37
<표 II-17> 운영주체별 어업법인 현황	38
<표 II-18> 연도별 어업경영체 법인 수 현황	39
<표 II-19> 연도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수 현황(설립연도 기준)	39
<표 II-20> 법인별 법인세 감면 한도	41
<표 II-21> 법인별 배당소득세 감면 한도	43
<표 II-22> 법인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44
<표 II-23> 농업법인 관련 세제 혜택 요약	45
<표 II-24> 평가대상 특례제도 내용	46
<표 II-25> 3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주요 연혁	47
<표 II-26>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주요 연혁	48

<표 II-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연혁	49
<표 II-28>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주요 연혁	50
<표 II-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연혁	51
<표 II-30>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요 연혁	51
<표 II-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요 연혁	53
<표 II-32> 연도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54
<표 II-33> 연도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54
<표 II-34> 연도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55
<표 II-35>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56
<표 II-36>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 비교	57
<표 II-37> 농어업분야 주요 국세 감면 제도 현황(2019년 실적)	58
<표 II-38> 선행연구 요약	66
<표 III-1> EU 국가의 농업경영체 및 농용지 면적 현황(2016년 기준)	75
<표 III-2> 일본의 농업법인 구분	77
<표 III-3> 일본 농업법인 법적 형태별 주요 특징	78
<표 III-4> 농업경영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혜택	79
<표 III-5> 일본의 농림업경영체 현황	80
<표 III-6> 일본의 조직형태별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81
<표 III-7> 일본의 농업경영체당 경영수지 추이	81
<표 III-8> 일본의 농업인 관련 세제지원(특례조치)	82
<표 III-9> 일본의 어업인 관련 세제지원(특례조치)	83
<표 III-10> 일본의 소득세의 세율 구조	84
<표 III-11> 법인세 세율(「법인세법」 제66조, 「조세특례조치법」 제42조의3의2)	86
<표 III-12> 프랑스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구분	88
<표 III-13> 프랑스 농업법인 비교	89
<표 III-14> 프랑스 농업경영체 수 추이	90
<표 III-15> 프랑스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별 추이	91
<표 III-16>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94
<표 III-17> 독일의 농업경영체 농용지 면적 분포 추이	95

<표 III-18> 독일 지역 간 농업경영체 구성(2016년)	96
<표 III-19> 독일의 농업관련 조세특례	96
<표 III-20> 농업소득 특례 적용 요건(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98
<표 III-21> 영국의 농업경영체 규모	101
<표 III-22> 영국의 소득세율	102
<표 III-23>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 금액 변화	103
<표 IV-1> 최근 5개년간 농어가 인구 현황	112
<표 IV-2> 경제활동별 실질성장률(전년대비 증감률)	113
<표 IV-3>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113
<표 IV-4> 농·어가 가구소득 추이	114
<표 IV-5> 연령별 농가호수 비중 추이	115
<표 IV-6> 우리나라 주요 농업생산성 지표 추이(호당 평균)	118
<표 IV-7> 어업가구 및 연령별 어가인구 추이	119
<표 IV-8> 어가인구 연령별 구성 추이	120
<표 IV-9> 보유어선 톤급별 어가 추이	121
<표 IV-10> 보유어선 톤급별 어가비중 추이	121
<표 IV-11> 어업형태별 가구분포 추이	122
<표 IV-12> 어업형태별 가구비중 추이	123
<표 IV-13> 농·어업법인 수 현황	125
<표 IV-14>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추이	127
<표 IV-15>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 분포 추이	128
<표 IV-16> 농업법인의 영어이익규모 분포 추이	130
<표 IV-17>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135
<표 IV-18>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 감면 범위	139
<표 V-1> 재정패널조사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2019년 기준)	155
<표 V-2>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비농어가) 기술통계	156
<표 V-3> 농·어·비농어가의 총소득·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분포 비교 (2인 이상 가구 기준)	162

<표 V-4> 농·어·비농어가의 총소득·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분포 비교 (전 가구 기준)	164
<표 V-5> 전 가구(농·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득결정식 회귀분석 결과	176
<표 V-6> 농·어·비농어가의 적자가구비율 추이	178
<표 V-7>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비함수 회귀분석 결과(OLS) ...	181
<표 V-8> 총소득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가, 1인 가구 포함)	184
<표 V-9> 총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어가, 1인 가구 포함)	184
<표 V-10> 총소득 분포 및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2019년, 농·어·비농어가 포함 전 가구)	185
<표 V-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기준)	187
<부표 1> 총소득 및 영농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가, 1인 가구 포함)	208
<부표 2> 총소득 분포 및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어·비농어가 포함 전 가구)	209
<부표 3> 영농·영어조합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2019년 기준)	210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어업법인 현황	37
[그림 II-2] 국제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 추이	57
[그림 III-1] EU 국가의 농업경영체 대비 법인 비중 및 평균 농용지 면적	76
[그림 IV-1] 연령별 농가호수 추이	116
[그림 IV-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추이	117
[그림 IV-3] 농·어업법인 수 추이	124
[그림 IV-4] 농업법인의 규모 추이	126
[그림 IV-5] 농업법인의 매출규모 분포 추이	127
[그림 IV-6] 농업법인의 수익규모 분포 추이	129
[그림 IV-7] 영농·영여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조세지출 추이	137
[그림 IV-8] 동 제도에 의한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138
[그림 V-1] 비농어가·농가·어가 총소득 변화추이	159
[그림 V-2]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도시 거주 2인 이상 기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대비	161
[그림 V-3] 농·어·비농어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 추이(2인 이상)	165
[그림 V-4] 농·어·비농어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 추이(전 가구)	166
[그림 V-5] 소득 10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비교 (2019년)	166
[그림 V-6] 농·어·비농어의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2인 이상 가구)	168
[그림 V-7] 농·어·비농어의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전 가구)	169
[그림 V-8] 소득분위별 농·어·비농어의 가구주 평균 연령 (2019년, 전 가구 기준)	169

[그림 V-9] 농·어·비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추이(2인 이상 가구) 171
[그림 V-10] 농·어·비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추이(전 가구) 171

I. 서론



I. 서론

- 「조특법」 제66조에서 제68조에 걸쳐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 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조합 또는 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적 농업 경영 즉,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목적으로 도입함
 - 농업은 자본화·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작 농가의 비중이 증가함
 - 2019년 현재 0.5ha 미만 경작 농가의 비중이 전체의 48.3%임
 -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등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함

- 「조특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 140억원, 법인세 188억원으로 총 328억원이며, 2020년 전망치는 344억원, 2021년 전망치는 357억원으로 2018년 이래 30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조특법」 제67조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 3억원, 법인세 30억원으로 총 33억원이며, 2020년 전망치는 31억원, 2021년 전망치는 32억원임
 -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지출금액은 2019년 기준 소득세 41억원, 법인세 186억원으로 총 227억원이며, 2020년 전망치는 177억원, 2021년 전망치는 183억원임
 - 3개 조항에 걸친 조세지출금액은 2020년에 합계 552억원으로 전망되며, 2021년에는 572억원으로 전망됨

- 1989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이후, 농업회사법인은 1995년, 영어조합법인은 1997년에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조항들도 모두 2003년부터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2021년 말에 일몰기한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일몰에 따라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등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II.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 배경 및 목적

가. 제도 개요 및 목적

- 동 보고서상 조세특례제도 심층평가 대상인 3개의 특례조항은 다음과 같음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어업인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출자자의 배당소득세,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동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인 3개의 특례제도는 농업 및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중 하나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임
 - (영농·영어조합법인)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고, 한·칠레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입함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하여 농업 분야 기업 경영 활성화 및 조합원 등 농업인의 소득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의 전문화를 위하여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구분

1) 농업인

□ (「농지법」) 「농지법」 제2조에서의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정의함

- 동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은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²⁾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의 기준³⁾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함⁴⁾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⁵⁾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에서도 농업인을 동일하게 정의함

5)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인 또는 자경농민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표 II -1> 농업인(자경농민) 정의 및 요건

관련 법령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농업인 요건)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 • 4년 이상 직접 경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²⁾ • 직전년도 농의소득 3,700만원 미만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으로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2) 재촌요건의 경우 2020년까지는 20km였으나, 2021년부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0km로 완화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임소영 외(2019), p. 45 재인용

2) 농업법인

□ (「농지법」) 「농지법」 제2조에서는 농업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정의함⁶⁾

6)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반적으로 세계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농업인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경영 또는 경작 농지가 1,000㎡ 이상이거나 농지 또는 축사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함

〈표 II -2〉 농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기준 비교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분류 기준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판매액 기준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2) 330㎡ 이상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 3) 660㎡ 이상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 가축 사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30㎡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규모를 사육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곤충 사육 및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자 	

주: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16조, 제1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농업인 확인 기준 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농작물 및 가축, 곤충 사육 및 생산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며, 이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신청 자격 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다음의 <표 II-3>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비교한 것임

<표 II-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18조 동법 시행령 제9 ~ 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0조
법인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 가능
설립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결원시, 1년 이내에 충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타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자료: 서종석 외(2017), pp. 13~14; 최근 개정 내용을 확인함

3) 어업법인

- 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 어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함
 - 여기서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체”로, 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
 -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따르며, 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

〈표 II -4〉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요건	• 어업인 5인 이상 조합원 참여 - 비어업인의 경우 의결권 없는 준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비어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 초과 불가(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비어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총출자액이 80억원 초과한 경우)
사업내용	• 어업·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 사업 • 어업·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 및 가공, 수출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수산업의 경영 또는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 (동법 시행령 제19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p. 4; 최근 개정 내용으로 보완함

다. 농가 및 어가 현황

- 연도별 농가 및 어가 인구와 경제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5>와 같음)

7) 농어가의 인구 및 경제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Ⅳ장 제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음

- 2019년 농가 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0만 7천호이며,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2,245천명임
- 2019년 어가 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5만 3,634호이며, 어가 인구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12만 520명임
 - 어가 수 및 어가 인구의 경우 농가 및 농가 인구 대비 약 5%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 2020년 농가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4,503만원이며,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5억 6,562만원임
 -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3,759만원임
- 2020년 어가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5,319만원이며,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억 320만원임
 -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6,390만원임
-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어가 평균 소득이 농가 평균 소득에 비해 약 816만원 많은 반면, 평균 자산은 어가가 농가보다 약 6,24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 부채는 어가가 농가보다 약 2,631만원 많음

〈표 II -5〉 연도별 농·어가 인구 및 경제 현황

(단위: 호,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가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
농가인구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
농가소득	37,197	38,239	42,066	41,182	45,029
농업소득	10,068	10,047	12,920	10,261	11,820
농업외소득	15,252	16,269	16,952	17,327	16,608
이전소득	8,783	8,902	9,891	11,230	14,263
비경상소득	3,095	3,022	2,302	2,364	2,337
농가자산	474,309	505,881	495,687	529,455	565,622
농가부채	26,730	26,375	33,269	35,718	37,589
어가	53,221	55,617	54,259	53,634	-
어가인구	125,660	128,654	123,790	120,520	-
어가소득	47,077	49,016	51,836	48,415	53,187
어업소득	26,598	26,692	25,670	20,672	22,716
어업외소득	11,551	12,576	13,523	13,326	12,959
이전소득	5,479	6,055	10,193	11,220	14,331
비경상소득	3,448	3,693	2,450	3,198	3,181
어가자산	408,960	437,234	434,274	456,701	503,196
어가부채	42,870	42,452	61,004	63,493	63,903

주: 어가 및 어가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내수면 어가가 포함됨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2021), p. 25 및 p. 30.

2. 제도 운용 현황

가. 법인 현황⁸⁾

1) 농업법인

- 2010년 전체 농업법인 대비 농업회사법인 비중은 16.8%였으나, 2019년에는 56.1%로 과반수 이상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나타남⁹⁾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9년 10,230개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2019년 13,085개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함
 - 농업회사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농지 소유 요건 완화가 농업회사법인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

<표 II -6>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영농조합법인	8,107	8,724	10,023	10,792	11,599	12,979	12,768	13,363	10,163	10,230
농업회사법인	1,633	2,143	2,958	3,760	4,883	5,778	6,645	8,296	11,617	13,085
합계	9,740	10,867	12,981	14,552	16,482	18,757	19,413	21,659	21,780	23,315

주: 2017년까지 농업법인 수는 출자자 개별 운영 및 실질 운영법인을 합산한 수이며, 2018년, 2019년은 실질 운영법인 수만 집계함. <표 IV-13>의 농업법인 수의 경우 실질 운영법인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차이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8)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활동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전수조사는 아님

9) 사동천(2018)은 농업회사법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법인의 경우 투자수익이 높은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전용을 도모, 이를 처분하여 투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음(홍범교, 2020, p. 159)

-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농업법인은 21,659개이며, 이 중 실질 운영법인은 20,200개, 출자자 개별운영법인¹⁰⁾은 1,459개임
 -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6%, 11.7%, 10.1% 증가한 수치임
 - 2017년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로 이 중 실질 운영법인이 12,280개,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이 1,083개로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7%, 4.3%, 9.5% 증가함
 - 2017년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로 이 중 실질 운영법인은 7,920개, 출자자 개별운영법인은 376개로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8%, 25.5%, 11.9% 증가함

<표 II -7> 농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운영주체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개	구성비	개	구성비		
전체	합계	19,413	100.0	21,659	100.0	2,246	11.6
	실질 운영법인	18,088	93.2	20,200	93.3	2,112	11.7
	출자자 공동운영	10,486	54.0	11,374	52.5	888	8.5
	대표자 단독운영	7,602	39.2	8,826	40.7	1,224	16.1
	출자자 개별운영	1,325	6.8	1,459	6.7	134	10.1
영농조합법인	합계	12,768	100.0	13,363	100.0	595	4.7
	실질 운영법인	11,779	92.3	12,280	91.9	501	4.3
	출자자 공동운영	8,021	62.8	8,231	61.6	210	2.6
	대표자 단독운영	3,758	29.4	4,049	30.3	291	7.7
	출자자 개별운영	989	7.7	1,083	8.1	94	9.5
농업회사법인	합계	6,645	100.0	8,296	100.0	1,651	24.8
	실질 운영법인	6,309	94.9	7,920	95.5	1,611	25.5
	출자자 공동운영	2,465	37.1	3,143	37.9	678	27.5
	대표자 단독운영	3,844	57.8	4,777	57.6	933	24.3
	출자자 개별운영	336	5.1	376	4.5	40	1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II-8>과 같음¹¹⁾
 - 2019년 정기 실태조사는 총 6만 6,87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44.8%가 운영 중, 38.6%가 미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실태조사 대비 운영 법인은 5,139개 증가, 미운영 법인은 7,612개 증가
 - 미운영 법인 증가 요인은 임시휴업, 휴업,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10) 출자자 각자가 별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11)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등기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인 반면, 농업법인조사는 등기 법인 중 국세청 법인세 신고를 마친 운영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앞의 <표 II-6>~<표 II-7>과 법인 수가 다름

<표 II -8> 농업법인 실태조사상 농업법인 운영 현황

(단위: 개, %)

조사 연도	구분	조사 대상	운영중	미 운영					소재 불명	일반 법인 전환
					운영 준비	임시 휴업	휴업	폐업		
2016년	전체	52,293 (100.0)	24,825 (47.0)	18,235 (34.8)	2,671	723	6,689	8,152	9,097	136
	영농 조합	37,453	17,416	14,213	1,550	529	5,849	6,285	5,770	54
	농업 회사	14,840	7,409	4,022	1,121	194	840	1,867	3,327	82
2019년	전체	66,877 (100.0)	29,964 (44.8)	25,847 (38.6)	2,308	1,253	7,638	14,648	10,877	179
	영농 조합	41,413	17,361	18,188	1,025	804	6,151	10,208	5,815	49
	농업 회사	25,464	12,603	7,659	1,283	449	1,487	4,440	5,072	1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9); 마상진 외(2020), p. 45 재인용

□ 2019년 기준,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경지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9>와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수는 3,587개이며, 이 중 논 경지면적은 24,471ha, 밭 경지면적은 25,381ha임
 - 이는 전년 대비 각각 9.3%, 8.9% 증가한 수치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수는 3,759개이며, 이 중 논 경지면적은 7,925ha, 밭 경지면적은 11,897ha임
 - 논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9.9% 감소한 반면, 밭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1% 소폭 증가함
- 전체 농업법인으로 보면, 2018년에는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하면서 경지면적이 상승 추세로 전환됨

<표 II -9> 농업법인의 경영 경지면적 추이

(단위: 개, ha,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영농 조합 법인	농업 회사 법인	전체	영농 조합 법인	농업 회사 법인	전체	영농 조합 법인	농업 회사 법인	전체
논	32,080 (51.7)	6,410 (39.7)	38,490 (49.2)	22,389 (49.0)	8,799 (42.5)	31,187 (47.0)	24,471 (49.1)	7,925 (40.0)	32,396 (46.5)
밭	29,924 (48.3)	9,751 (60.3)	39,675 (50.8)	23,315 (51.0)	11,886 (57.5)	35,200 (53.0)	25,381 (50.9)	11,897 (60.0)	37,279 (53.5)
합계	62,004 (100.0)	16,161 (100.0)	78,165 (100.0)	45,703 (100.0)	20,684 (100.0)	66,388 (100.0)	49,853 (100.0)	19,822 (100.0)	69,675 (100.0)
법인 수	5,115	2,800	7,915	3,553	3,448	7,001	3,587	3,759	7,347

주: 1. () 안은 경지면적 대비 비중임

2. 법인 수는 각 연도말 기준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수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수를 살펴보면 <표 II-10>과 같음

- 2019년 기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은 8,140개이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0.1%,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9.9%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은 15,175개이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40.5%,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9.5%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0> 사업 유형별 농업법인의 수(2019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농업생산			농업생산 이외 사업					
	합계	작물 재배업	축산업	합계	농축 산물 가공업	농축 산물 유통업 (도소매업)	농업 서비스업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기타 사업
영농 조합 법인	4,080 (50.1)	3,354 (50.2)	726 (50.0)	6,150 (40.5)	1,933 (39.2)	2,580 (35.8)	360 (60.2)	557 (62.7)	719 (46.5)
농업 회사 법인	4,060 (49.9)	3,333 (49.8)	727 (50.0)	9,025 (59.5)	2,994 (60.8)	4,635 (64.2)	238 (39.8)	331 (37.3)	828 (53.5)
전체	8,140 (100.0)	6,687 (100.0)	1,453 (100.0)	15,175 (100.0)	4,927 (100.0)	7,215 (100.0)	598 (100.0)	888 (100.0)	1,547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금 형태별 현황은 <표 II-11>과 같음
 - 2019년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법인 수는 10,230개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법인 수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3,085개로 나타남
 - 출자금 중 현금출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2조 283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조 495억원으로 나타남
 - 출자금 중 현물출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2,314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한 5,564억원으로 나타남

<표 II -11> 농업법인 출자금 형태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출자 법인 수	출자금			출자 법인 수	출자금			
		현금 출자	현물 출자	합계		현금 출자	현물 출자	합계	
조직 형태	영농조합 법인	10,163	2,037,053	205,051	2,242,104	10,230	2,028,265	231,374	2,259,640
	농업회사 법인	11,617	3,623,460	431,435	4,054,895	13,085	4,069,517	556,436	4,625,953
사업 유형	작물 재배업	5,756	1,290,709	213,791	1,504,499	6,687	1,669,858	249,006	1,918,863
	축산업	1,416	801,197	140,511	941,709	1,453	883,398	225,767	1,109,165
	농축산물 가공업	4,517	1,296,928	60,247	1,357,175	4,927	1,348,122	99,671	1,447,794
	농축산물 유통업	6,737	1,568,832	154,789	1,723,622	7,215	1,602,795	98,687	1,701,483
	농업 서비스업	771	126,474	13,531	140,005	598	87,341	5,744	93,084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890	181,118	8,559	189,676	888	206,075	73,417	279,492
	기타사업	1,693	395,255	45,058	440,313	1,547	300,193	35,519	335,7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의 <표 II-12>와 같음
 - 2019년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약 17.9억원이며, 영농조합법인은 약 11.6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약 22.8억원임

<표 II -12> 농업법인별 매출액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	
결산 법인 수	9,714	12,433	22,147	
매출액	1,163	2,278	1,789	
매출액 규모별 법인 수	1억원 미만	4,144 (42.7)	4,173 (33.6)	8,317 (37.6)
	1~5억원 미만	2,465 (25.4)	2,574 (20.7)	5,039 (22.8)
	5~10억원 미만	912 (9.4)	1,299 (10.4)	2,211 (10.0)
	10~20억원 미만	808 (8.3)	1,285 (10.3)	2,093 (9.5)
	20~50억원 미만	877 (9.0)	1,662 (13.4)	2,539 (11.5)
	50~100억원 미만	318 (3.3)	866 (7.0)	1,184 (5.3)
	100억원 이상	190 (2.0)	574 (4.6)	764 (3.4)

주: () 안은 결산 법인 수 대비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자산은 11억 2,8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유동자산이 5억 3,000만원, 비유동자산이 5억 9,800만원이며 자본금 규모는 4억 7,800만원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자산 20억 4,100만원 가운데 유동자산이 8억 5,700만원, 비유동자산이 11억 8,400만원이고, 자본금 규모는 6억 6,000만원임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4억 7,800만원 정도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6억 6,100만원 정도임

<표 II -13> 농업법인 자산·부채 현황(2019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결산 법인 수	자산			부채			자본
		소계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소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계(평균)	22,147	1,641	714	927	1,060	575	485	580
영농조합 법인	9,714	1,128	530	598	650	331	319	478
농업회사 법인	12,433	2,041	857	1,184	1,380	765	615	6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4>와 <표 II-15>와 같음
 -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1억~5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4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0억원 이상이 3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자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1억~5억원 미만인 법인 수가 3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억원 미만이 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기준 농업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16.4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11.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자산은 법인당 약 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함
 - 2019년 기준 농업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10.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부채는 법인당 약 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함

○ 2019년 기준 농업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5.8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임

- 영농조합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자본은 법인당 약 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함

<표 II -14>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에 따른 농업법인 수(2019년)

(단위: 개, %)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계
자산 규모	1억원 미만	1,956 (20.1)	1,986 (16.0)	3,942 (17.8)
	1억~5억원 미만	3,883 (40.0)	3,798 (30.5)	7,681 (34.7)
	5억~10억원 미만	1,459 (15.0)	1,878 (15.1)	3,337 (15.1)
	10억원 이상	2,416 (24.9)	4,771 (38.4)	7,187 (32.5)
부채 규모	1억원 미만	4,705 (48.4)	3,668 (29.5)	8,373 (37.8)
	1억~5억원 미만	2,521 (26.0)	3,303 (26.6)	5,824 (26.3)
	5억~10억원 미만	994 (10.2)	1,731 (13.9)	2,725 (12.3)
	10억원 이상	1,494 (15.4)	3,731 (30.0)	5,225 (23.6)
자본 규모	1억원 미만	3,600 (37.1)	4,801 (38.6)	8,401 (37.9)
	1억~5억원 미만	3,826 (39.4)	4,504 (36.2)	8,330 (37.6)
	5억~10억원 미만	1,163 (12.0)	1,441 (11.6)	2,604 (11.8)
	10억원 이상	1,125 (11.6)	1,687 (13.6)	2,812 (12.7)
결산 법인 수		9,714 (100.0)	12,433 (100.0)	22,147 (100.0)

주: 1. () 안은 결산 법인 수 대비 비중임
 2. 결산 법인 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법인 수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표 II -15> 연도별 농업법인 경영실태(법인당)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
2015년	자산	908	2,086	1,346
	부채	527	1,341	830
	자본	380	744	516
2016년	자산	994	2,156	1,450
	부채	564	1,360	877
	자본	430	796	574
2017년	자산	990	2,244	1,539
	부채	556	1,431	939
	자본	435	813	600
2018년	자산	1,183	2,039	1,638
	부채	703	1,357	1,051
	자본	481	682	588
2019년	자산	1,128	2,041	1,641
	부채	650	1,380	1,060
	자본	478	660	5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2) 어업법인

- 어업법인은 2016년 기준¹²⁾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27개이며, 이 중 영어조합 법인이 985개,¹³⁾ 어업회사법인이 142개인 것으로 파악됨
 - 2016년 기준 어업법인 중 영어조합법인은 8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은 12.6%를 차지함
 - 영어조합법인은 전년과 동일한 수치인 반면,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전년 대비 36.5% 증가함

12) 어업법인조사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임

13) <표 II-18>과 <표 II-19>에서 2020년 기준 해수부에서 제공한 어업경영체 DB상 자료를 수록하였는데, 전산화 처리가 안 된 법인 자료가 있어서 실제 어업법인 수와 차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여기서는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표 II -16> 어업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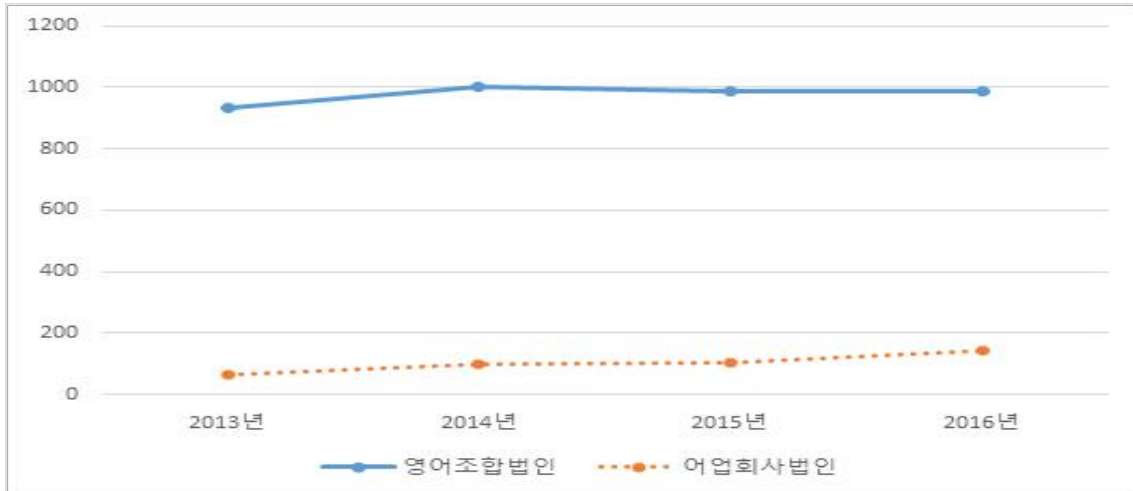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증감	증감률
영어조합법인	933	93.4	1,004	91.0	985	90.4	985	87.4	0	0.0
어업회사법인	66	6.6	99	9.0	104	9.6	142	12.6	38	36.5
전체	999	100.0	1,103	100.0	1,089	100.0	1,127	100.0	38	3.5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어업법인 조사보고서』, 2018, p. 17.

[그림 II -1] 연도별 어업법인 현황

(단위: 개)



주: 좌측은 영어조합법인 수, 우측은 어업회사법인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어업법인 조사보고서』, 2018, p. 17.

□ 어업법인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7>과 같음

- 2016년 어업법인은 총 1,127개로 이 중 출자자 공동 운영 및 대표자 단독 운영인 실질 운영법인의 경우 1,084개이며, 출자자 개별 운영법인은 43개임
- 2016년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총 985개로 이 중 실질 운영법인은 946개이며, 출자자 개별 운영은 39개임
 - 실질 운영법인 중 대표자 단독 운영법인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반면, 출자자 개별 운영법인은 전년 대비 69.6% 증가함
- 2016년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총 142개로 이 중 실질 운영법인은 138개이며, 출자자 개별 운영은 4개임

<표 II -17> 운영주체별 어업법인 현황

(단위: 개, %)

구분	운영주체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증감	증감률
영어 조합 법인	실질운영 법인	945	94.1	962	97.7	946	96.0	△16	△1.7
	출자자 공동 운영	527	52.5	380	38.6	400	40.6	20	5.3
	대표자 단독 운영	418	41.6	582	59.1	546	55.4	△36	△6.2
	출자자개별 운영	59	5.9	23	2.3	39	4.0	16	69.6
	합계	1,004	100.0	985	100.0	985	100.0	0	0.0
어업 회사 법인	실질운영 법인	93	93.9	102	98.1	138	97.2	36	35.3
	출자자 공동 운영	36	36.4	31	29.8	39	27.5	8	25.8
	대표자 단독 운영	57	57.6	71	68.3	99	69.7	28	39.4
	출자자개별 운영	6	6.1	2	1.9	4	2.8	2	100.0
	합계	99	100.0	104	100.0	142	100.0	38	36.5
전체	실질운영 법인	1,038	94.1	1,064	97.7	1,084	96.2	20	1.9
	출자자 공동 운영	563	51.0	411	37.7	439	39.0	28	6.8
	대표자 단독 운영	475	43.1	653	60.0	645	57.2	△8	△1.2
	출자자개별 운영	65	5.9	25	2.3	43	3.8	18	72.0
	합계	1,103	100.0	1,089	100.0	1,127	100.0	38	3.5

자료: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6 어업법인 조사보고서』, 2018, p. 21.

- 다음의 <표 II-18>의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영어조합법인 신규 등록 수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표 II-19> 참조)

<표 II -18> 연도별 어업경영체 법인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어조합법인	361	398	443	480	513	529	
어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5	9	12	16	20	21
	주식회사	64	82	99	119	141	152
	합명회사	3	3	3	3	3	3
	합계	72	94	114	138	164	176
전체(어업법인)	433	492	557	618	667	705	

주: 전산화 처리가 안 된 법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업법인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II -19> 연도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수 현황(설립연도 기준)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어조합법인	16	37	45	37	33	16	
어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2	4	3	4	4	1
	주식회사	16	18	17	20	22	11
합계	34	59	65	61	59	28	

주: 전산화 처리가 안 된 법인 자료가 있으며, 등록연도가 아닌 법인 설립연도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나. 제도 내용

1) 법인세

□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¹⁴⁾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 중 일정 범위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조특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한도까지 법인세를 면제함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함

- 산식: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한도까지 법인세를 면제함
 - 산식: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조특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함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⁵⁾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50% 감면함
 - 그 외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은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 2019년 3월 20일 「조특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신설하여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액 중 비농업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제외 소득으로 함

15)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어로어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일정 범위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조특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한도까지 법인세를 면제함¹⁶⁾
 - 산식: 3,0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한도까지 법인세를 면제함
 - 산식: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표 II -20〉 법인별 법인세 감면 한도

법인 구분		감면 한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그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그 외 소득: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간 50% 감면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0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그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자료: 이동규 외(2018), p.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토대로 보완함

16) 2020년 2월 11일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2) 배당소득세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조특법」 제66조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함
 - 산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 산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¹⁷⁾ ÷ 총소득금액}
 -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
 - 산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한도 초과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는 5%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조특법」 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면제
 - 산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 총소득금액
 -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17)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함(「소득세법」 제67조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 1인당 1,200만원 한도임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저율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음

<표 II -21> 법인별 배당소득세 감면 한도

법인 구분		감면 한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그 외 배당소득: 1,2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배당소득의 경우 5% 저율 과세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 배당소득 산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그 외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200만원 한도 - 한도 초과 배당소득은 5% 저율 과세

자료: 이동규 외(2018), p.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토대로 보완함

3) 양도소득세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및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조특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4·5항)
 - 단,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자경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조특법」 제66조 제5항)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조특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7·8항)

-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조특법」 제6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12·13항)
 - 어업인의 경우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함(「조특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면제가 가능함(「조특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표 II -22〉 법인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법인 구분		감면 한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전액 감면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전액 감면

자료: 이동규 외(2018), p.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토대로 보완함

4) 요약

- 농업법인 및 농업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약하면 <표 II-23>과 같음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축산업 임업 소득,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50% 감면
 - 농지 또는 초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표 II-23> 농업법인 관련 세제 혜택 요약

대상	세목	내용
법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¹⁾: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4년간 50%(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일몰기한: 2023. 12. 31.)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일몰기한: 2023. 12. 31.)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표 II -23>의 계속

대상	세목	내용
조합원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1과세기간 1억원, 5과세기간 2억원 한도) ▪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농지, 초지는 제외) ▪ 농지와 초지 조성을 허가받은 초지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 발생한 배당소득: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연간 1,200만원 한도 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주: 1) 축산업, 임업,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임소영 외(2019), p. 86, 내용을 최근 개정 내용으로 일부 수정·보완함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3가지 과세특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II -24>와 같음

<표 II -24> 평가대상 특례제도 내용

구분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6조)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7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8조)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 면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한도 면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까지 면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배당소득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조합원 배당소득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세	출자자의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을 면세,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자료: 저자 작성

다. 제도 연혁

- 평가 대상인 3개 조세특례제도는 1989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신설된 이후 1995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997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순으로 모두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음

<표 II -25> 3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8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조합원당 386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386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정)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386만 → 500만원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500만 → 1,200만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정)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1,200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정)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준 금액 한도 확대: 1,200만 → 3,000만원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기한 도래: 2021년 12월 31일

자료: 이동규 외(2018), p. 31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함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표 II -26>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89.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농지소득으로 규정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및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일부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징
199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세목에서 방위세 및 교육세 삭제
199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1998.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200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농지에서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개정함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전환 • 양도소득세 사후관리규정 추가 - 초지 및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지분의 100분의 50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징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또는 초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2018.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201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I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89.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상당가산액’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율을 적용함
1990.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추가 (386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배당소득세 비과세 설정: 386만원까지
199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 386만원 → 500만원
199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1995.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조합원당 1,200만원
1998.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2020.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표 II -28>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97.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정
1998.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2018.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201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I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97.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의2) - 법인세 면제 한도 설정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 수/12) - 배당소득세 면제 한도 설정 (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1998.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2020.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인세 면제 금액 구분 - 어로어업소득과 그 제외 소득금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3)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 동 제도는 1995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과세특례 대상의 추가 및 일몰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4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혜택을 추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배당소득 감면제도를 신설함

〈표 II -30〉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95.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신설 • 내용: 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② 농업인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시기: 1996. 1. 1. 이후
1998.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전면 개정 시 구법 제53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로 이관하고 일몰기한 2003. 12. 31. 신설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06년 12월 31일

<표 II -30>의 계속

연도	내용
200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추가 • 적용시기: 2005. 1. 1. 이후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일몰기간 연장 및 면제대상 소득 범위 명확화 - 일몰기간 연장: 2009년 12월 31일 -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2년 12월 31일
201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농업소득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5년 12월 31일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적용시기: 2014. 1. 1. 이후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연장: 2018년 12월 31일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초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감면 범위 합리화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2018.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201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I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07.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추가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2012.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2. 농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2014.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017.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 발생한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019.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조항 신설(2019. 3. 20.)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의 경우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이며,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이 해당
2020.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라. 조세지출 규모

- 3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액(합산)은 588억원(2019년 실적 기준)으로 이는 전년 대비 44억원 감소한 수치임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 2019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 감소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 전망치는 344억원, 35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II -32> 연도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소득세	156	32	65	125	105	87	130	140	150	156
법인세	197	194	193	192	200	197	202	188	194	201
합계	353	226	258	317	305	284	332	328	344	35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 2019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 증가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 전망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II -33> 연도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소득세	4	8	4	8	4	2	2	3	1	1
법인세	19	19	20	21	22	23	27	30	30	31
합계	23	27	24	29	26	25	29	33	31	3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 2019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서 2018년에 법인세 감면규모가 증가한 요인은 농업회사법인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8년 법인세 감면 신고를 한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 수는 550개로 전년 대비 25.0% 증가하였으며, 농업 외 소득 대상 농업회사법인 수도 1,058개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II-35> 참조)

<표 II -34> 연도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소득세	-	-	-	-	-	-	40	41	0	0
법인세	167	88	79	123	153	154	231	186	177	183
합계	167	88	79	123	153	154	271	227	177	18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4)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 국세통계연보상 연도별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은 다음의 <표 II-35>와 같음
 - 2019년 영농조합법인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일반법인은 약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2,945개, 일반법인은 95개로 각각 전년 대비 1.1%, 42.1% 감소함
 - 2019년 영어조합법인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약 0.3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486개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5개로 전년 대비 44.4% 감소함
 - 2019년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은 약 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579개로 전년 대비 9.7% 증가, 일반법인은 22개로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임
- 2019년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 중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금액은 약 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일반법인은 약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5% 감소함
- 감면 대상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1,220개로 전년 대비 15.7% 증가, 일반법인은 4개로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임
- 2019년 전체 법인세액 감면 신고 금액 중 영농조합법인은 약 0.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이 약 0.5%,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이 약 0.4%, 영어조합법인이 약 0.1% 비중을 차지함
- 감면 대상 법인 수의 경우 전체 중 영농조합법인이 약 1.4% 정도이며, 그 뒤로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외 소득 대상) 0.5%, 농업회사법인(농업소득 대상) 0.3%, 영어조합법인 0.2% 순임

<표 II -35>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영농 조합법인	18,073 (3,171)	1,165 (189)	19,099 (3,025)	934 (196)	18,672 (2,968)	1,058 (197)	19,400 (2,977)	810 (164)	18,432 (2,945)	364 (95)
영어 조합법인	2,044 (450)	57 (10)	2,135 (461)	42 (11)	2,271 (437)	25 (10)	2,688 (447)	36 (9)	2,949 (486)	33 (5)
농업 회사법인 (농업 소득)	3,275 (290)	3,197 (22)	5,436 (388)	750 (39)	5,461 (412)	771 (28)	7,024 (528)	1,012 (22)	7,261 (579)	894 (22)
농업 회사법인 (농업 소득 외)	5,334 (567)	526 (10)	7,947 (780)	1,158 (13)	7,354 (918)	1,850 (6)	13,265 (1,054)	1,790 (4)	9,938 (1,220)	511 (4)
전체	1,011,433 (171,103)	347,994 (444)	1,154,972 (184,863)	549,448 (461)	1,298,809 (202,163)	1,021,358 (444)	1,420,006 (216,122)	919,547 (382)	1,260,405 (224,306)	757,161 (284)

주: 1. () 안은 신고법인 수

2.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연도별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6>과 [그림 II-2]와 같음

- 2019년(실적) 국세 감면액은 약 49.6조원으로 2018년 44.0조원 대비 약 5.6조원 증가함
- 2020년 및 2021년 전망치는 각각 53.9조원, 56.8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각 4.3조원, 2.9조원 증가한 수치임
- 농림수산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 2014년 이래 다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II -36>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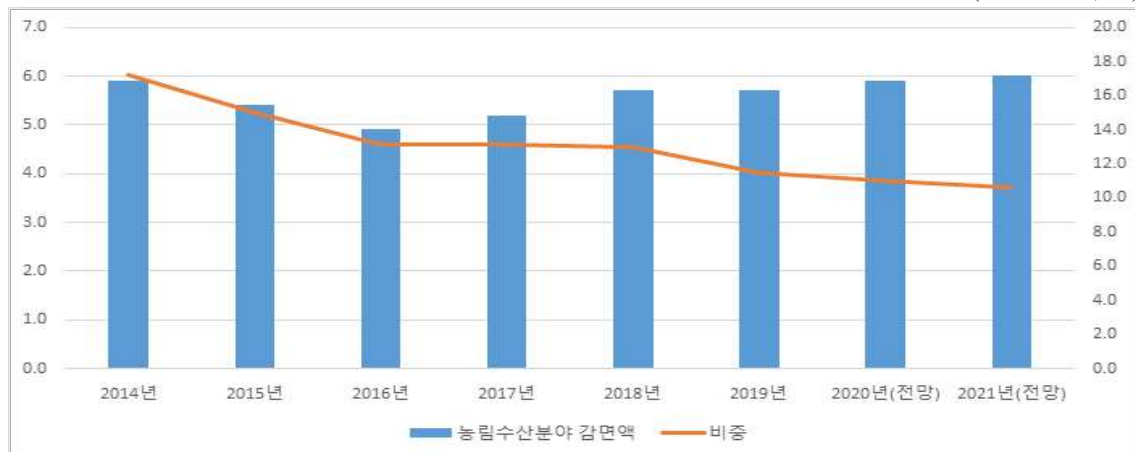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 감면액	34.3	35.9	37.4	39.7	44.0	49.6	53.9	56.8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	5.9	5.4	4.9	5.2	5.7	5.7	5.9	6.0
비중	17.2	15.0	13.1	13.1	13.0	11.5	11.0	10.6

주: 1. 비중은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을 의미함
 2. 2020년 및 2021년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그림 II -2]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주: 1. 좌축은 조원, 우축은 %
 2. 비중은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분야 감면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37> 농어업분야 주요 국세 감면 제도 현황(2019년 실적)

(단위: 억원)

국세 세목	감면 내용	근거 법령	감면 세액	일몰 기한
소득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사목	추정 곤란	없음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174	없음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9조	12,435	없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9조의2	116	2022. 12. 31.
	농지 대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70조	561	없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87조의2	53	2022. 12. 3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0	2022. 12. 31.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69의3	19	2022. 12. 31.
상속 및 증여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5,859	2022. 12. 3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특법」 제71조	596	2022. 12. 31.
부가가치세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546	없음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18,770	2022. 12. 31.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36	2022. 12. 31.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105조의2	1,245	없음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추정 곤란	2021. 12. 31. (종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2,892	2021. 12. 31. (제1호 종료) 2022. 12. 31. (제2호)
	면세 농·수산물 등의 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28,578	없음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제66조	188	2021. 12. 31.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8조	186	2021. 12. 31.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제67조	30	2021. 12. 3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72조	3,636	2022. 12. 31.
인지세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 제1항 5,6,7,9,11호	81	2021. 12. 31.

주: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할 경우 대표적인 세목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농어업분야의 주요 감면제도에 대하여 요약하면 <표 II-37>과 같음
 - 국세 중 농어업분야 감면제도는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약 22개 정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는 각각 188억원과 186억원으로 농업분야 감면제도 중 추정이 곤란한 제도를 제외하고 각각 11번째, 12번째 순위
 - 어업만을 단독으로 조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19년 실적 기준 약 49억원으로 농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3. 선행연구와 주요 쟁점

-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는 3개 조항 모두 도입된 지 20년 이상 된 특례제도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일몰연장 및 감면 범위 조정 등을 거쳐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3개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됨에 따라 영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검토를 통해 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가. 선행연구

- 마상진 외(2020)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농업법인 제도 신설 이후 정부의 출자한도 규정 완화, 농지 소유 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농업법인이 활성화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농업법인이 활성화됨에 따라 설립 이후 운영하지 않는 부실 법인¹⁸⁾이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증가하였으며, 비농업인의 농업 진출 및 농지 소유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¹⁹⁾
 - (미운영 법인)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미운영 법인이 38.6%로 2016년 조사 대비 3.8%p 증가하였으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 (목적 외 사업) 일부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 매입 후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도 법률 위반행위 사례 중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6.9%로 나타남
 - (비농업인 농지소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90%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급증, 이에 농업계에서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축소하고 비농업인이 참여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주장하기도 함
 - (보조금 부당 지원) 미운영(휴업, 폐업), 소재 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국가보조금이 부당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²⁰⁾
 - (조세지원 형평성) 개인영농과 법인 설립 간 조세지원을 비교하면 오히려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커서 법인 설립의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직 형태 간 구분 모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 생산과 비생산 분야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조직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어려움
 - (법인 관리 체계 미흡)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농업법인 사업운영 관리 및 농지취득자격 허위 신청·발급업무 부당 처리,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 관리 미흡, 비목적사업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 등을 지적함
- (설문조사 결과) 현재 미참여 농가 중 과반 이상이 법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법인 설립 참여 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설립 절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6,877개소 중 44.8%가 실제 운영 중이고 미운영 법인이 38.6%,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6.3%,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0.3%로 나타남

19) 마상진 외(2020), pp. 44~50을 요약함

20)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6개 시도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6개소의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의 농업법인에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마상진 외, 2020, pp. 47~48)

-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전문인력 지원 채용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농업생산법인과 생산 외 사업 법인의 차별 지원,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개선방안)
 -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농업 구조 정책 및 농촌 정책에 농업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질적·양적인 내실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 및 범위 경계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 등이 필요함
- (농가 및 지역 조직화 및 창업 활성화)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 단위 생산자 조직의 법인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법인을 활성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 현행 농업법인 취지에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가족농 육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설립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를 통해 농업 생산 외 가공 및 유통 활동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법인²¹⁾과 비생산법인의 차별화) 비농업인의 법인 참여, 농지 소유 자격 및 사업 내용 등의 확대로 조직 형태 간 차별성이 사라짐
 - 농업인 참여규모,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 사육 규모,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농업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의 유형화가 필요
 - 또한, 농업생산 및 지역 연계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세제 감면혜택을 비생산법인과 차별화해야 함
 - 2018년 농업법인 중 생산 매출이 없는 법인이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당 경지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농지관리기구 도입을 통해 모든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업생산법인에 농지이용이 집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지원체계 구축) 전문성 있는 농업법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 운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예: 프랑스 농업회의소, 독일 농업회의소와 협동조합협회, 일본 농업법인협회

21)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인에 의해 주도되고, 농업생산이 주가 되고 유통, 가공 및 서비스 활동은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함(마상진 외, 2020, p. 173)

- (관리체계 강화) 현재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폐업 관리 체계의 개선과 함께 농업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 (회계 투명성 강화) 농업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를 통해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확고히 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토대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보완이 필요
- (조세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와 관련하여 개선 요구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같이 개인 농가의 농업법인 전환 측면에서 볼 때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농업인 개인과 법인설립 시 받는 세제 감면 규모를 비교하면, 법인설립 시 받는 세제 혜택이 불리하고, 농업인 참여율이 낮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간 동등한 세제혜택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농업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개선도 필요
 - 현행 양도소득세 면세한도 1억원을 유지하되, 면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촉진하도록 함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생산법인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며, 농업비생산법인은 조세상 혜택보다 정책지원 사업이나 외부 투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시 이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임소영 외(2019)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규모화가 중요한 만큼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최소한 소득세 공제한도 수준과 동등하게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단, 농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혜택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함

- 이동규 외(2018)에서는 해당 3개의 조세특례제도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검토, 소득 재분배 효과 및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효과 등을 분석함
 -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재분배효과와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효과 등을 추가 검토함
 - 미시모의실험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농가소득 수준별 소득증대효과를 비교하고 이를 전 가구로 확대하여 그 효과를 계층별로 비교분석함
 - 일반균형모형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로 인한 농업부문의 세금감면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며,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한 모형 결과로 소득분위별 혜택 분포를 파악함
 - 분석 결과, 농어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함
 - 농어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도입한다면 그 출자기준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임종선·김경신(2016)은 영농조합법인과 조세특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업생산자단체의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혜택 부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함
 - 전문경영인이 아닌 어업인이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운영 초기 안정적인 사업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영어조합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생산자단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분석 결과, 부실 및 부적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금 혜택을 제한하여 건실한 영어조합법인에게 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원형태도 일괄적 지원이 아닌 조합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의 형평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영어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별적 대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지는 과세의 공정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비교해보면 영어조합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조세특례가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적용 한도액 기준이 높음

□ 박문호·임지은(2014)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분석함으로써 농업법인체 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생산기술, 유통 및 판매, 경영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
- 연구 결과, 경영의 생산기술 측면에서 노동력 확보 문제를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유통 및 판매 측면에서는 판로확보 문제, 수익성 저하 등을 요인으로 지적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 규모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농산물 유통 측면에서는 시설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규제 측면에서는 농가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및 기타 건축 및 환경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함

□ 김미복·김수석(2011)은 농업부문 조세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해외 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모의실험을 함

- 이 중 현행 농업부문 조세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하고 과세 후 공제하며, 분리과세를 통해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 과세 후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환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서희열·심충진·최천규(2010)는 농·어업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어업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함

- 현행 농어업법인과 관련하여 조세제도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함
 -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및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농어업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 및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를 확대
 - 농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를 확대
 - 업종 간 조세 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등
- 김수석 외(2007)에서는 농업법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함
 - 농업법인의 복합 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있음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관이 없으며, 세제상 지원이 한시적임을 지적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업법인 관리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에 부여하거나, 부실법인 정리, 세제상 지원 강화, 필요에 따라 법인의 법적 형태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또한 농업법인을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를 제안함

〈표 II -38〉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마상진·안석· 김유나(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임소영·원은송 (2019)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업법인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나,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단, 농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혜택 부여가 필요함
이동규·이명헌· 성명재·김승래 (2018)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동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검토하였으며, 재분배효과와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함. 분석 결과, 동 제도를 농어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단,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에 대해서는 차등적 세제혜택을 적용할 출자기준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임종선·김경신 (2016)	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일반론에 대한 선행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의 형평성 있는 적용 등과 같이 영어조합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생산자단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김동신·조덕호· 여창환 (2016)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업법인 조직 참여 영농인의 농업소득이 그렇지 않은 영농인의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함
박문호·임지은 (2014)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통계청 자료의 분석을 통해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분석함(농업법인 경영주 대상 인터뷰 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과의 농업법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에 따라 농업법인체 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표 II -38>의 계속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목적
김정섭·김미복 (2013)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동기, 목적,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조사하고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관련하여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제도와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함
장태평·정규언·서희열 (2011)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농업의 변화 시기에 맞춰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킬 조세제도를 검토한 뒤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김미복·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농업 관련 조세 중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해서는 농업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농업법인세를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농업 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서희열·심충진·최천규 (2010)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현행 농·어업 관련 조세제도를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김수석·박석두 (200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업법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인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자료: 저자 작성

나. 주요 쟁점

1) 법인의 목적 외 운영에 대한 관리 필요성

- 동 특례제도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법인의 목적 외 운영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세제 지원에 대한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 국회, 감사원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기재부에서도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등 정책목적 달성 기여도 및 지원 수준의 적정성·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비농업인의 출자 비중이 높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도 지적함

- 2016년 3월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영농조합법인 경영체 등록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조합원 명단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이나 국세감면 등 정부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요청함(「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 감사원의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 관리 부적정’ 통보²²⁾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7월에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고 있는지 등 농업법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함
 - 법인 등기부 등본상 법인 설립목적에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전기 관련 사업²³⁾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482개 농업법인을 추출한 후, 이들 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자료를 토대로 비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검토함
 - 검사 결과 35개 농업법인의 매출은 부동산 매매 등 전액 비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들 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리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²⁴⁾
 - 농지를 취득한 후에 짧게는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²⁵⁾, 최장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하여²⁶⁾ 부당 이익을 올림

22) 감사원(2021), pp. 14~34.

23) 주로 태양광 발전 및 판매 사업을 의미함

24) 여기서의 문제 지적은 현재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오용 사례라기보다는 농업법인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부동산 투기)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임

25) 하동군 농업법인의 경우

26) 평택시 농업법인의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지자체에서 농업법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사동천(2018)은 현행 「농지법」에서는 특정 시설 부지로의 전용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용도가 자유로워진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함
 - 그러나 농지 취득 이후에 지자체에서 일정 주기를 두고 실제 점검함으로써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농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²⁷⁾

-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비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나,²⁸⁾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해산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농업법인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수 있음

2)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 어업법인 입장에서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간 세제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기도 함
 - 영어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별적 대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지는 과세의 공정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²⁹⁾

27) 감사원에서 적발한 위의 사례들을 보면 모두 1년 안에 매매가 이루어져 3년 주기의 실태조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례들임

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5호

29) 임종선 외(2016), p. 406.

-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곡물재배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과세를 유지한 반면,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도 하였음
 -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을 비교하면 농가와 어가의 인구 비중과 비례함
 - 또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만을 확대할 경우 축산업·임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과세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정확한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
 - 2020년 통계청 농가 및 어업 경제조사 결과, 2020년 평균 어가 소득(5,319만원)이 농가 평균소득(4,503만원)보다 높기도 함

Ⅲ. 해외 사례



Ⅲ. 해외 사례

-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대체적으로 개별 경영 또는 가족 단위 경영이 대부분이나, 조합이나 법인의 형태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진 농업경영체도 있음
 - 이동규 외(2018)에서는 농업 구조, 사회주의체제 경험 여부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가진 법적 형태 비중의 차이가 있으며, 조세제도가 농업경영자들이 어떤 법적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 본 장에서는 각국에서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EU 국가를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농업 및 어업경영체에 대한 조세제도 및 특례 조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1. EU 국가

- EU의 농업경영체(agriculture holding)라는 표현은 농업생산 활동이 EU 경제 영역 내 기술적·경제적으로 단일한 경영관리하에 운영되며, 농업 활동을 기본적으로 또는 보조 활동으로 수행하는 단일 경영체라는 의미임³⁰⁾

- 2016년 EU 농장 구조 조사(Farm Structure Survey(FSS))에 따르면, 총 1,050만개 농장 중 가족농이 약 95.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³¹⁾
 - 평균 가족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약 70ha 정도이며, 그 뒤로 룩셈부르크, 덴마크가 50ha를 초과하며, 이어서 독일, 핀란드, 프랑스 순임

30) 우병준 외(2017), p. 22.

31)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griculture_statistics_-_family_farming_in_the_EU(검색일자: 2021. 3. 11.)

- EU 국가의 법적 형태별 농업경영체 수 및 농용지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음³²⁾³³⁾
 -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자연인(Natural person), 법인(Legal person), 그룹 경영체(Group holding), 공용 토지 단위(Common land unit)로 구분됨
 - EU 국가에서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약 25.3% 정도임
 - 그 뒤로 에스토니아(20.3%), 벨기에(15.8%), 슬로바키아(12.5%), 체코(11.8%), 스웨덴(8.3%), 네덜란드(7.3%) 순임
 - 농용지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80.2%이며, 그 뒤로 체코(69.9%), 에스토니아(64.9%), 불가리아(46.1%), 헝가리(41.7%) 순임
 - 농업경영체당 평균 농용지 면적 중 법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높은 국가는 체코로 경영체당 774.3ha임
 - 그 뒤로 독일(526.5ha), 슬로바키아(473.8ha), 리투아니아(459.1ha) 순임
 - 농업경영체 대비 법인 비율에 비해 농용지 면적 대비 법인 비율이 더 높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인 경영체가 자연인 경영체에 비해 농업 경영 규모가 크다는 것(농업경영의 규모화)을 알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평균 농용지 면적이 클수록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1] 참조)
 - 즉,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농업경영체 중 법인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영농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32) <https://ec.europa.eu/eurostat/web/agriculture/data/database>(검색일자: 2021. 3. 3.)

33) EU 통계는 상법상 회사 형태의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조합형태의 경영체는 제외됨

〈표 III-1〉 EU 국가의 농업경영체 및 농용지 면적 현황(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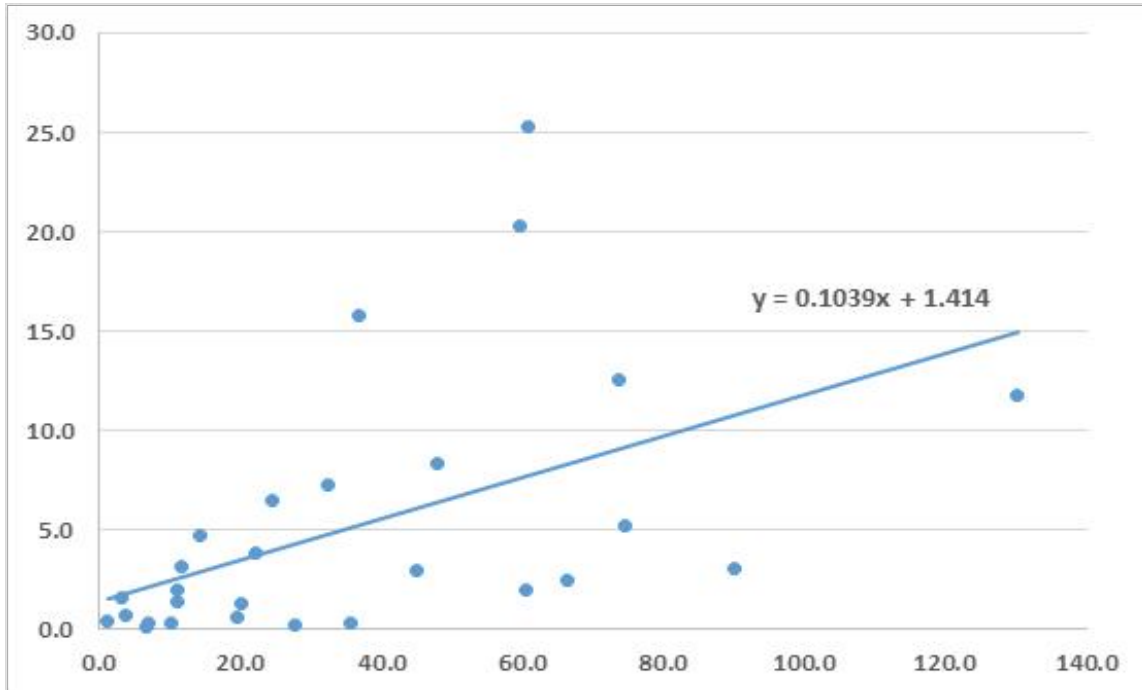
(단위: 개, %, ha)

국가	농업경영체 수					농용지 면적					경영체 당 평균 농용지 면적				
	전체 (A)	자연인 (B)	법인 (C)	법인 비율 (C/A)×100	법인 비율 (C/A)×100	전체 (D)	자연인 (E)	법인 (F)	법인 비율 (F/D)×100	전체 (D/A)	자연인 (E/B)	법인 (F/C)	법인 (F/C)	법인 (F/C)	
															법인 (C)
벨기에	36,890	31,070	5,820	15.8	1,354,250	1,117,650	236,590	17.5	36.7	36.0	36.0	40.7	40.7		
불가리아	202,720	194,660	7,770	3.8	4,468,500	1,708,800	2,060,760	46.1	22.0	8.8	8.8	265.2	265.2		
체코	26,530	23,400	3,120	11.8	3,455,410	1,039,680	2,415,720	69.9	130.2	44.4	44.4	774.3	774.3		
덴마크	35,050	33,220	1,830	5.2	2,614,600	2,392,020	222,580	8.5	74.6	72.0	72.0	121.6	121.6		
독일	276,120	244,630	5,490	2.0	16,715,320	10,705,810	2,890,680	17.3	60.5	43.8	43.8	526.5	526.5		
에스토니아	16,700	13,310	3,390	20.3	995,100	349,500	645,600	64.9	59.6	26.3	26.3	190.4	190.4		
아일랜드	137,560	137,140	420	0.3	4,883,650	4,847,070	36,580	0.7	35.5	35.3	35.3	87.1	87.1		
그리스	684,950	684,250	650	0.1	4,553,830	3,138,840	13,740	0.3	6.6	4.6	4.6	21.1	21.1		
스페인	945,020	880,640	61,020	6.5	23,229,750	16,105,620	5,691,080	24.5	24.6	18.3	18.3	93.3	93.3		
프랑스	456,520	296,110	115,610	25.3	27,814,160	9,979,550	10,685,000	38.4	60.9	33.7	33.7	92.4	92.4		
크로아티아	134,460	130,260	4,180	3.1	1,562,980	1,003,690	280,400	17.9	11.6	7.7	7.7	67.1	67.1		
이탈리아	1,145,710	1,129,400	15,690	1.4	12,598,160	11,589,330	906,090	7.2	11.0	10.3	10.3	57.7	57.7		
사이프러스	34,940	34,370	570	1.6	111,930	95,000	16,930	15.1	3.2	2.8	2.8	29.7	29.7		
라트비아	69,930	69,050	130	0.2	1,930,880	1,725,960	19,760	1.0	27.6	25.0	25.0	152.0	152.0		
리투아니아	150,320	149,410	860	0.6	2,924,600	2,526,060	394,800	13.5	19.5	16.9	16.9	459.1	459.1		
룩셈부르크	1,970	1,840	50	2.5	130,650	115,030	780	0.6	66.3	62.5	62.5	15.6	15.6		
헝가리	430,000	421,270	8,720	2.0	4,670,560	2,724,350	1,945,920	41.7	10.9	6.5	6.5	223.2	223.2		
말타	9,210	9,090	40	0.4	11,120	10,650	180	1.6	1.2	1.2	1.2	4.5	4.5		
네덜란드	55,680	51,600	4,080	7.3	1,796,260	1,680,890	115,370	6.4	32.3	32.6	32.6	28.3	28.3		
오스트리아	132,500	122,490	1,670	1.3	2,669,750	2,288,610	81,810	3.1	20.1	18.7	18.7	49.0	49.0		
폴란드	1,410,700	1,406,570	4,080	0.3	14,405,650	13,182,890	1,180,700	8.2	10.2	9.4	9.4	289.4	289.4		
포르투갈	258,980	246,150	12,200	4.7	3,641,690	2,273,880	1,254,460	34.4	14.1	9.2	9.2	102.8	102.8		
루마니아	3,422,030	3,395,930	23,310	0.7	12,502,540	6,926,260	4,090,220	32.7	3.7	2.0	2.0	175.5	175.5		
슬로베니아	69,900	69,670	230	0.3	488,400	462,870	25,530	5.2	7.0	6.6	6.6	111.0	111.0		
슬로바키아	25,660	22,460	3,200	12.5	1,889,820	373,800	1,516,020	80.2	73.6	16.6	16.6	473.8	473.8		
핀란드	49,710	43,500	1,450	2.9	2,233,080	1,867,790	95,560	4.3	44.9	42.9	42.9	65.9	65.9		
스웨덴	62,940	57,710	5,220	8.3	3,012,640	2,296,430	716,210	23.8	47.9	39.8	39.8	137.2	137.2		
영국	185,060	179,430	5,500	3.0	16,673,270	14,173,000	1,366,580	8.2	90.1	79.0	79.0	248.5	248.5		

자료: Eurostat; 이동규 외(2018), p. 48 재인용,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EF_M_FARMLEG_custom_656321/](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EF_M_FARMLEG_custom_656321/default/table?lang=en)로 업데이트됨(검색일자: 2021. 3. 10.)

[그림 III-1] EU 국가의 농업경영체 대비 법인 비중 및 평균 농용지 면적

(단위: ha, %)



주: Y축은 농업경영체 대비 법인 비중, X축은 농업경영체 전체 평균 농용지 면적
 자료: 이동규 외(2018), p. 49를 참고하여 업데이트함

2. 일본

가. 법적 형태

- 일본은 농업법인을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³⁴⁾
 - 농업법인 중 「농지법」 제2조 제3항 요건에 부합하고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농지소유적격법인(농업생산법인)³⁵⁾으로 칭함
 - 즉, 농지에 대한 권리 유무에 따라 농지소유적격법인과 일반 농업법인으로 구분함

34) 일본농업법인협회 홈페이지(<https://hojin.or.jp/>)(검색일자: 2021. 2. 18.)

35) 일본 농업법인은 2016년 4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농업 생산 법인에서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변경, 요건도 완화한 바 있음

〈표 Ⅲ-2〉 일본의 농업법인 구분

농업법인	농사조합법인 (「농협법」 제72조8)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등을 행하는 법인 (1호 법인)	「농지법」 제2조 규정	농지소유 적격법인
		농업경영을 행하는 법인 (2호 법인)		
	회사법인	합명회사		
		합동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제한회사에 한함)				

자료: 이동규 외(2018), p. 50; 일본농업법인협회 홈페이지(<https://hojin.or.jp/>)(검색일자: 2021. 2. 18.)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은 4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함³⁶⁾³⁷⁾
- 법인 형태 요건(「농지법」 제2조 제3항)
 -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또는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 사업 요건(「농지법」 제2조 제3항 제1호)
 - 매출의 절반 이상이 농업(판매 및 가공 포함)에 관련되어야 함³⁸⁾
 - 구성원 및 의결권 요건
 - 농업관계자: 농지를 제공한 개인,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에 상시 종사하고 있는 농업관계자가 전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 단체를 통해 농지를 임대한 개인도 해당
 - 농업관계자 이외의 구성원: 총의결권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임원 요건
 - 임원의 50% 이상이 농업(판매 및 가공 포함)에 상시 종사해야 함
 - 연간 150일 이상 종사
 - 임원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해야 함
 - 연간 60일 이상 종사

36) 다만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법인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위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37) https://hojin.or.jp/standard/what_is.html(검색일자: 2021. 2. 25.)

38) 농업(경작, 양축, 축산 등), 농업에 관련된 사업(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 및 가공, 농축산물의 저장 및 운반·판매,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 농작업의 수탁, 농촌체제형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농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임업(식림·육림·벌채 등)(나채준 외, 2017, p. 25)

- 농사조합법인은 농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³⁹⁾
-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농산물 운반·가공·저장사업, 농사일의 위탁,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생산, 농업 경영 등
 - (조합원) 농민, 조합(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지중간관리기구
 - (구성원) 3인 이상의 농민

<표 III-3> 일본 농업법인 법적 형태별 주요 특징

구분	농사조합법인	주주회사(개인회사)	합동회사
근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회사법」	
목적	협동이익의 증진	영리 추구	
구성원	농민 3명 이상	1명 이상	
임원	이사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업무집행사원(선택)
배당	종사 분량 배당, 이용분량 배당, 출자 분량 배당 중 선택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정관에 따라 출자에 의하지 않고 배당도 가능)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함
의결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의사결정	총회에 의한 의결	주주 총회	원칙 만장일치
영업세	농업의 비과세 축산업의 제외	있음	있음
법인세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 - 소득 800만엔 이하: 15% - 소득 800만엔 초과: 19%	자본금 1억엔 이상: 23.4% 자본금 1억엔 이하 - 소득 800만엔 이하: 15% - 소득 800만엔 이상: 23.4%	
등록면허세	비과세	자본금 7/1,000 (최저 15만엔)	자본금 7/1,000 (최소 6만엔)
조직 변경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합동회사로 직접변경 불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가능, 농사조합법인으로 변경 불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농사조합법인으로 변경 불가

자료: <https://www.yamato-gyosei.com/kigyo-sogyo/nogyo/> 農業法人形態による制度の比較; 마상진 외(2020), p. 135 재인용

39)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keiei/sosiki/noujikumiai_gaiyou.html(검색일자: 2021. 4. 1.)

□ 농업경영을 법인화할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의 <표 III-4>와 같은 혜택이 부여됨

- 제도적 혜택 중 세제적인 측면을 보면, 사업주에 대한 과세 경감, 임원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및 법인세 공제, 손실에 대해 9년간 이월 공제 등이 있음

<표 III-4> 농업경영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혜택

구분		내용
제도적 측면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배로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과세 경감, 고정금리과세에 법인세 적용, 임원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및 법인세 공제, 손실에 대해 9년간 이월 공제(청색신고법인에 한함, 개인의 경우 3년), 농업관리 인프라 강화 예비비 활용(청색신고법인 농가에 한함) 등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농민의 복지 보장 등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증가, 농업관리 인프라 강화기금(대출 한도는 개인 3억엔, 기업 10억엔, 융자대출은 최대 1억엔 무담보 대출)
	농지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에 투자

자료: 일본농업법인협회 홈페이지(<https://hojin.or.jp/>)(https://hojin.or.jp/standard/what_is.html), 검색일자: 2021. 2. 18.)

나. 농업경영체 현황⁴⁰⁾

□ 일본은 농림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가족(개인)경영체와 조직(단체)경영체로 구분함⁴¹⁾

- 농업경영체란 경지면적이 30a 이상 농가 또는 농작물의 재배 면적 또는 가축 두수 등 농림수산성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경영체를 말함

40) 일본 농림수산성(2020), pp. 1~21, https://www.maff.go.jp/j/tokei/kekka_gaiyou/noucen/2020/index.html, 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kei/einou_kobetu/attach/pdf/index-16.pdf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41) https://www.pref.fukui.lg.jp/doc/toukei-jouhou/af-census/2015afc_d/fil/kaisetsu.pdf(검색일자: 2021. 3. 12.)

- 가족(개인)경영체는 농림업경영체 규정 중 세대단위로 사업을 행하는 경영체를 말함
- 조직(단체)경영체의 경우 세대단위가 아닌 형태로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법인 등 기업농 또는 마을영농 등이 이에 해당함

□ 일본의 농림업경영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5>와 같음

- 2020년 2월 기준, 전국 농림업경영체 수는 약 109만 2천개로 2015년에 비해 약 31만 2,000개(△22.2%) 감소함
- 이 중 농업경영체는 약 107만 6천개로 2015년 대비 약 30만 2천개(△21.9%) 감소함

<표 III-5> 일본의 농림업경영체 현황

(단위: 천개, %)

구분	농림업경영체	농업경영체	개인경영체	단체경영체	
				법인경영체	
2010년	1,727	1,679	1,644	36	22
2015년	1,404	1,377	1,340	37	27
2020년	1,092	1,076	1,037	38	31
증감률 (B/A)×100	△18.7	△18.0	△18.5	4.9	25.3
증감률 (C/B)×100	△22.2	△21.9	△22.6	2.6	13.0

자료: 農林水産省, 『2020年農林業センサス結果の概要(概数値)』, 2020. 11. 27., p. 2.

□ 일본의 조직형태별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 III-6>과 같음

- 2019년 일본 농업경영체 중 조직경영체는 전체 2.9%로 농업경영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조직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조직경영체 중 법인경영체가 72.5%로 가장 많으며, 법인경영체 중에서는 회사법인이 55.6%로 가장 많음

<표 III-6> 일본의 조직형태별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단위: 천개)

구분		2015년	2017년	2019년
농업경영체		1,377.3	1,258.0	1,188.8
가족경영체		1,344.3	1,223.1	1,152.8
조직경영체		33	34.9	36
농산물 생산 여부	농산물 생산 조직경영체	-	28.8	30.3
	법인경영체	18.9	21.8	23.4
	농작업 수탁 조직경영체	-	6.2	5.7
법인화 여부	법인경영체 합계	18.9	24.8	26.1
	농사 조합 법인	5.2	7.1	7.9
	회사	12.1	13.7	14.5
	각종 단체	0.8	3	2.7
	기타 법인	0.8	1	1
	비법인 조직경영체	15.1	10.2	9.9

자료: 日本 통계포털(e-stat); 마상진 외(2020), p. 138 재인용

- 2019년 기준, 일본 농업경영체당 경영수지 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 III-7>과 같음
-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698만엔,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4만엔으로 나타남

<표 III-7> 일본의 농업경영체당 경영수지 추이

(단위: 만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경영비	490	518	566	597	660	687	698
농업소득	143	129	170	210	218	198	194
경영수지	633	647	736	807	879	884	892

자료: 農林水産省, 『農業経営統計調査』, 2021. 2. 26., p. 5.

다. 농어업법인 관련 특례제도

- 일본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의 <표 III-8>과 <표 III-9>와 같음

〈표 III-8〉 일본의 농업인 관련 세제지원(특례조치)

정책대상	시책명
인정농업자 등의 농지취득, 농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준비금 제도 “소득세·법인세”
농업인이 이용하는 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에 사용하는 경유 거래세 면제 “경유 거래세” 농업용 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및 환급 “석유석탄세” 농림 어업용 경유의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농림어업) 농림 어업용 경유에 부과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판매)
청색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색신고의 특례 “소득세·법인세”
농지소유(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자산세 특례 “고정자산세(재산세)” 농지 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완화 “고정자산세(재산세)”
농지 증여,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유예제도 《증여세·상속세》
농지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 면허세의 특례 “등록 면허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의 특례 “부동산 취득세”
농지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 공제 “소득세·법인세”
농업에 대한 사업세, 사업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에 대한 사업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영업세(사업세)”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등이 인정신규농업인에게 기계 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에 따른 과세표준의 특례조치 “고정자산세(재산세)”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에 의한 인증 계획에 따라 기계 장치 등을 도입한 경우의 특례 “소득세·법인세” 160만엔 이상의 농업 기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례(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세제) “소득세·법인세” 상업·서비스업 및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치(상업·서비스업·농림 수산업 활성화 세제) “소득세·법인세” 국고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 금액의 손금 산입 특례 “소득세·법인세”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가액의 손금 산입 특례 “소득세·법인세” 공동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사업소세”
기타 농업경영 안정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세율 경감 “등록 면허세” 농사조합법인이 분배하는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법인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특례 “고정자산세(재산세)”

자료: 홍범교(2020), p. 108; <https://www.maff.go.jp/j/aid/index.html>(검색일자: 2021. 2. 1.)

<표 III-9> 일본의 어업인 관련 세제지원(특례조치)

정책대상	시책명
어업인이 사용하는 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에 사용하는 경유 거래세 면제 “경유 거래세” ▪ 어업용 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및 환급 “석유석탄세” ▪ 농림 어업용 경유의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농림어업) ▪ 농림 어업용 경유에 부과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판매)
어선 관련 특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에 대한 “재산세” ▪ 특별수선준비금제도 “소득세 및 법인세” ▪ 사업전업·폐업보조금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 어선 교체 및 관련 조세특별규정 “소득세 및 법인세”
어업인에 대한 특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에 대한 사업세 면제
수산기계 및 장비 등 자본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경영강화법 “소득세 및 법인세” 인증계획에 따른 기계 및 장비 도입 특별 조항 ▪ 160만엔 이상의 어업기계 취득(중소기업투자촉진제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특별 조항 ▪ 상업 및 서비스 산업, 농업, 임업수업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대책 ▪ 정부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압축고정자산 등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특별 조항 ▪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격 손실 특별조항 “소득세 및 법인세” ▪ 공유이용시설 취득에 대한 조세기준 특별사례 “부동산 취득세 및 고정재산세, 사업소세”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특별공제 제도
어업 관리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신고 특별조항 “소득세 및 법인세” ▪ 어업신용기금협회 “등록면허세” 등록 등 세율 인하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특별사례 연구 “재산세” ▪ 수산협동조합 특별과세

자료: <https://www.maff.go.jp/j/aid/zeisei/gvo/index.html>(검색일자: 2021. 2. 3.)

1) 소득세

- 일본은 농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정의함⁴²⁾
 - 우리나라와는 달리 작물재배를 통한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함
 - 퇴직소득, 산림소득, 이자소득은 별도 과세하며, 나머지 소득은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함
 - 단, 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은 50%만 합산

42) 이동규 외(2018), p. 54.

<표 III-10> 일본 소득세의 세율 구조

(단위: 만엔, %)

구분	~195	195~330	330~695	695~900	900~1,800	1,800~4,000	4,000~
세율	5	10	20	23	33	40	45

자료: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2.htm(검색일자: 2021. 4. 1.)

- 농용지구역 내 농지를 지역 내 의욕이 있는 농업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함
 -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특별공제액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제도⁴³⁾에 의해 정해진 농용지 구역 내의 농지에 한해서만 적용됨

- 특별공제액은 일정 요건별로 800만~5,000만엔 정도임⁴⁴⁾
 - 800만엔 특별공제
 - ① 시정촌장 권고에 관한 협의,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조정 또는 농업위원회 알선에 의해 양도한 경우⁴⁵⁾
 - ② 농지중간관리기구⁴⁶⁾에 양도한 경우
 - ③ 농지이용집적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⁴⁷⁾

43)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에 기초하여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함

44) 흥범교(2020), pp. 110~111. 내용을 업데이트함

45) 권고에 관한 협의, 조정 또는 알선에 따라서 양도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조세특별조치법」 제34조의3 제2항 제1호, 제65조의5 제1항 제1호, 제68조의76 제1항)

이때 ‘협의’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14조의2에 따라 농지구역에 대한 ‘농용지 이용계획’과 개별 농지소유자의 농지이용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시정촌장이 현 소유자에게 그 계획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농지이용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잠재적 구매자를 지정하여 양수도과 관련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정촌장의 요청에 따라서 도도부현 지사(知事)가 개입하여 행하는 조정을 말함

‘알선’은 농업위원회가 교환분합을 위해서 농지의 소유 또는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이때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정촌 단위로 설치된 조직을 의미함

46) 농지중간관리기구는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사업주체

47) 농지이용집적(農地利用集積)계획에 따라서 양도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조세특별조치법」 제34조의3 제2항 제2호, 제65조의5 제1항 제2호, 제68조의76 제1항)

농지이용집적계획은 「농업기반강화촉진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정촌이 정하게 되어 있음

- 1,500만엔 특별공제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매입 협의에 의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매도한 경우⁴⁸⁾
- 2,000만엔 특별공제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의 특례 농지 이용 규정에 따라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양도한 경우
- 5,000만엔 특별공제
 - 전용 목적의 양도로 농지를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해 매입한 경우⁴⁹⁾

2) 법인세

- 일본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23.2%이며, 보통법인(普通法人), 협동조합,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름
 - 보통법인 중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을 초과할 경우 23.2%를 적용,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800만엔 이하 소득분에 대해서는 19.0%를 적용함
 -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협동조합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19.0%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치법」 제68조에 따라 소득 금액 중 10억엔을 넘는 부분에 한해 22.0%의 세율을 적용함
 - 단, 물품 공급 사업에 따른 수입 금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50만명 이상, 물품공급 규모는 1,000억엔 이상인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
 - 공공법인은 비과세하며, 공익법인 등은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19.0%를 적용함

48) 「농업기반강화촉진법」 제16조 2항에 기초한 매입협의를 따라서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조세특례조치법」 제34조의2 제2항 제25호, 제65조의4 제1항 제25호, 제68조의75 제1항)

이때 매입협의란 농지소유자가 그 농지 양도를 위한 알선을 농업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에서 그 농지를 양도받을 적당한 농업인을 찾기 어렵고,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농업위원회가 판단할 때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와 농지소유자 사이에 진행되는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의미함(「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5조 1항, 2항, 제16조 1항)

농업위원회가 시정촌장에게 그 매입협의 통지를 요청하고, 시정촌장은 그러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제16조 2항)

49) 「조세특례조치법」 제33조의4

- 공공법인은 독립행정법인 또는 정책금융공고 등이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공제조합, 신용기금협회,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등이 해당됨
- 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 3의2에 따라 800만엔 이하 소득분에 대해 15.0% 세율을 적용함

<표 III-11> 법인세 세율(「법인세법」 제66조, 「조세특례조치법」 제42조의3의2)

(단위: %)

세목	보통법인	중소기업 ¹⁾	농사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세	23.2	23.2	19.0
「법인세법」에 따른 800만엔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	-	19.0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른 800만엔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	-	15.0	15.0

주: 1)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에 한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https://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30.pdf>(검색일자: 2021. 2. 26.)

가) 농사조합법인의 종사분량배당 등의 법인세 특례⁵⁰⁾

- 농업을 경영하는 농사조합법인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해 확정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잉여금 배당을 종사분량 또는 이용분량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법인에게 손비처리 허용(「법인세법」 제60조의2, 제66조,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3의2)
 - 농사조합법인의 잉여금 배당 방법은 이용분량배당(利用分量配当), 종사분량배당(従事分量配当), 출자배당(出資配当)이 있음
 - 이용분량배당: 시설 등의 이용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 종사분량배당: 사업에 종사한 기간,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 출자배당: 연 7% 이내에서 출자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

50) 일본 농림수산업성, <https://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30.pdf>(검색일자: 2021. 2. 26.)

- 동 특례는 법인세에 대해 세율 19% 적용(일반세율은 23.2%), 800만엔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함
 - 종사분량배분 및 이용분량배분 소득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해당 세율 적용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분에 한함

나)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에 의한 신규취득설비 관련 법인세 특례⁵¹⁾

- 중소기업 등이 일정 기간 내 판매되었거나, 생산성이 이전 상품 대비 연평균 1% 이상 향상된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 설비를 즉시 상각 처리하거나 취득액의 10% 세액공제⁵²⁾를 적용할 수 있음
 - 감면 대상은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개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의 법인 등임
 - 다만, 대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를 받고 있거나, 지난 3개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이 15억엔을 넘는 법인은 제외함
 - 농사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삼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특례 지원이 가능한 설비 및 최저금액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기계장비: 1대당 160만엔, 최대 10년 경과 모델 대상
 - 기구비품 및 공구: 1대당 30만엔, 기구비품의 경우 최대 6년, 공구는 최대 5년 경과 모델 대상
 - 건물부속설비: 1대당 60만엔, 최대 14년 경과 모델 대상
 - 소프트웨어: 1대당 70만엔, 최대 5년 경과 모델 대상

3. 프랑스

가. 법적 형태⁵³⁾

- 프랑스의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개별 농가 또는 가족농)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1985년 농업경영의 현대화로 개별 농가의 법인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함

51)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shokusan/kikaku/attach/pdf/keiiryoku_koujou-67.pdf(검색일자: 2021. 4. 1.)

52) 자본금 3,000만엔 초과 중소기업은 7%

53) 김정호 외(2015), pp. 41~46 및 <https://agriculture.gouv.fr/exploitations-agricoles-structures-et-statuts>(검색일자: 2021. 3. 23.)을 토대로 작성함

- 프랑스는 19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와 회사 형태인 농업경영체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사 형태인 농업경영체는 민사회사법상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상업회사법상 법인회사로 구분함
 - 법인 형태로 구분하면, GAEC와 EARL, SCEA 등은 민사회사법상 법인회사에 해당하며, SARL과 SA 등은 상업회사법 상의 법인회사에 해당함

<표 III-12> 프랑스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구분

구분	개인 경영 (individuelle)	회사 경영		
		비법인	법인	
			유한책임 1인 회사	2인 이상
민사회사법	개인경영체 (Exploitation individuelle)	임의회사 (Groupement de fait)	EARL	GAEC, SCEA 등
상업회사법	개인사업자 (Entreprise individuelle)	-	EURL (유한책임 1인 경영체)	SARL (유한책임농업회사), SA(주식회사) 등

자료: 김정호 외(2015), p. 42.

- GAEC(Groupements Agricoles d'Exploitation en Commun)는 가족농에서 확장된 법인 형태인 공동농업그룹(공동농업경영단)으로 1962년에 도입됨⁵⁴⁾
 - GAEC의 목적은 구성원의 모든 농업생산활동을 통합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동노동을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함
 - 구성원 요건은 농업인으로 가족농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인에서 최대 10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드시 공동으로 구성원 전원이 농업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각자 경영주 자격을 보유함
 - 또한, GAEC의 출자는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모두 가능하며, 노동출자도 가능하여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EARL(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은 유한농업경영회사로 농업인의 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1985년에 도입한 농업경영체임⁵⁵⁾

54) 농촌 및 해양어업법 L.323-1~L.323-16 및 R. 323-8~R.323-54

55) 농촌 및 해양어업법 L.324-1~L.324-10 및 D.324-2~D.324-4 및 1832조

- EARL은 비농업인도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법인으로 GAEC보다 축소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구성원 요건은 최소 1명이 농업경영인이어야 하며, 최대 10명까지 제한,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출자해야 함
 - 단, 현물 출자 중 부동산의 경우 회사 자본의 최소 50%를 보유한 자만 가능
- 구성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1인 출자 또는 부부만으로도 설립이 가능
 - GAEC는 배우자만으로 구성이 불가능한 반면, EARL은 배우자와 구성이 가능함
- 경영면적은 최대 10SMI(최소 영농정착 면적)이며,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최소 7,500유로임

- SCEA(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은 농업인들의 공동 농업경영조직으로 농업경영민사회사(민사영농조합)를 말함
 - 앞서 살펴본 GAEC와 EARL보다 조건이 완화된 형태로 경영방식이나 수익분배 조건이 자유로움

〈표 III-13〉 프랑스 농업법인 비교

구분	GAEC	EARL	SCEA
형태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구성원	· 최소 2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자 · 농업경영인 · 본인 및 배우자만으로는 구성 불가	· 최소 1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자 · 비농업인 참여 가능 (전체 출자금 50% 이하 한도 내) · 본인 및 배우자만으로도 구성 가능	· 최소 2인 · 본인 및 배우자만으로 구성 가능 · 비농업인 및 법인 모두 참여 가능
최소자본금	최소 1,500유로	최소 7,500유로	없음
상한 면적 (농업인 인정 기준)	제한 없음	10SMI (최소 영농정착면적)	-
법적 투명성	구성원은 농업경영주 자격 보유, 정책자금 지원 시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음	제한 없음	-
농업노동참여 여부	모든 구성원 대상	자본의 50% 이상 출자한 구성원 대상	의무 아님
의결권	1인 1표	출자지분에 비례	출자지분에 비례
기타			-

자료: 프랑스 농업회의소, <https://chambres-agriculture.fr/exploitation-agricole/sinstaller-en-agriculture/choisir-le-statut-juridique/>(검색일자: 2021. 3. 23.)

나. 농업경영체 현황

- 프랑스 농업경영체 수는 2016년 기준, 총 43.6만개로 2010년 대비 11.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소규모 및 중규모 농업경영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대규모 농업경영체 수는 18.5만개로 2010년 대비 14.2% 증가함
 - 이는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 및 정부의 경영규모 확대 정책 등에 기인함

<표 III-14> 프랑스 농업경영체 수 추이

(단위: 천개, %)

구분	1988년	2000년	2010년	2016년
소규모	477 (46.9)	278 (41.9)	178 (36.3)	136 (31.2)
중대규모	540 (53.1)	386 (58.1)	312 (63.7)	300 (68.8)
중규모	393 (38.6)	218 (32.8)	151 (30.8)	115 (26.4)
대규모	147 (14.5)	169 (25.5)	162 (33.1)	185 (42.4)
합계	1,017 (100.0)	664 (100.0)	490 (100.0)	436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Agreste(2020), p. 17.

- 프랑스의 법적 형태별 농업경영체 수는 다음의 <표 III-15>와 같음
 - 개인경영체의 경우 2016년 기준, 27.8만개로 2010년 대비 18.6% 감소하였으며,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EARL의 경우 약 8만개로 2010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법적 형태 유형 중 1988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함
 - GAEC의 경우 약 4만개로 2010년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SCEA 및 SA, SARL도 2010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1988년 농업법인(EARL 및 GAEC)의 비중은 3.9% 정도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경영체 비중이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농업법인의 비중이 28.1%를 차지함

〈표 III-15〉 프랑스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별 추이

(단위: 천개, %)

구분	1988년	2000년	2010년	2016년
개인경영체 (농가)	948.7 (93.3%)	538.0 (81.0)	341.5 (69.7)	278.0 (63.7)
EARL	1.6 (0.2)	55.9 (8.4)	78.6 (16.0)	79.3 (18.2)
GAEC	37.7 (3.7)	41.5 (6.3)	37.2 (7.6)	43.0 (9.9)
SCEA 등	9.9 (1.0)	17.3 (2.6)	23.6 (4.8)	26.3 (6.0)
SA, SARL	2.1 (0.2)	5.0 (0.8)	6.1 (1.2)	7.2 (1.7)
임의회사 등	14.2 (1.4)	3.9 (0.6)	1.0 (0.2)	0.7 (0.2)
기타 법인	2.6 (0.3)	2.2 (0.3)	1.9 (0.4)	1.8 (0.4)
합계	1,016.8 (100.0)	663.8 (100.0)	490.0 (100.0)	436.3 (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Agreste(2020), p. 18.

다. 농업법인 관련 특례제도⁵⁶⁾

- 프랑스는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프랑스 협동조합과 관련된 세제 중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에 대한 혜택이 있음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운송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함⁵⁷⁾⁵⁸⁾

56) 이동규 외(2018), p. 75.

57) 손원익 외(2013), p. 76.

58) 비조합원 간의 거래의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비조합원 간 거래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투자조합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 과세면제가 취소됨

1)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농업과 관련된 상호신용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권이나 지분에 투자로 얻은 자본소득은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⁵⁹⁾
 - 또한 프랑스 일반세법상 소득세에서 농업 관련 기관만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조합 또는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임

2)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의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986년부터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 투자를 포함한 농축산물 생산액 또는 구입액에 한해 소득세 산정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수혜 대상자) 농민을 대상
 - 단, 관련 협동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년생인 농축산물을 생산 또는 구입한 경우에 한하며, 연간 소득 공제 한도 27,000유로 내에서 5년간 소득공제 혜택

4. 독일

가. 법적 형태

- 독일은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경제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농업경영체 여부를 구분함
 - 이 중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조세법상 농림업경영체 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함
 - 여기서 조세법상 농림업은 농림업 생산 활동 외에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산 활동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경우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함⁶⁰⁾

59) 원칙적으로는 채권이자 및 예금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형태의 자본소득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

60) 김수석 외(2006), p. 73.

-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는 개별경영체(Einzelunternehmen),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en), 사법상 법인(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en Rechts), 공법상 법인(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적회사는 민법상 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기타회사로 구분
 - 사법상 법인은 등록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기타법인으로 구분

- 법적 형태별 특징
 - 인적회사는 구성원 모두 또는 일부가 무한책임을 지며,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함
 - 자본회사는 구성원들의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며,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1인부터 조직 구성이 가능, 협동조합은 최소 3인이 필요함

나. 농업경영체 현황

-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별 현황을 보면, 동서독 간 농업경영체 분포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음(<표 III-16>~<표 III-18> 참조)
 - 2016년 기준, 동독지역의 경우 개별경영체 비율이 71.5%로 가장 높은 반면, 농용지 면적 비중(경지비율)은 27.5%에 불과함
 - 인적회사와 사법상 법인 비율은 각각 13.6%, 14.7%이며 사법상 법인의 경지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남
 - 즉, 동독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법인경영체가 주도적으로 농업생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을 하는 서독지역의 경우 개별경영체 비율은 90.4%이며, 경지비율은 82.3%로 개별경영체의 숫자와 경지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적회사와 사법상 법인 비율은 각각 8.9%, 0.6%이며, 경지비율도 인적회사는 16.7%, 사법상 법인은 0.7%로 낮은 수준임

<표 III-16>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천개, %)

구분	2007년		2010년		2016년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동독						
개별경영체	23,412	77.8	17,723	72.5	17,624	71.5
인적회사	3,235	10.8	3,204	13.1	3,366	13.6
민법상 회사	2,536	8.4	2,412	9.9	2,425	9.8
합명회사	12	0.0	10	0.0	17	0.1
합자회사	619	2.1	232	0.9	255	1.0
기타 회사	68	0.2	550	2.2	669	2.7
사법상 법인	3,379	11.2	3,484	14.2	3,626	14.7
등록조합	1,028	3.4	983	4.0	925	3.8
유한회사	2,102	7.0	2,246	9.2	2,455	10.0
주식회사	77	0.3	82	0.3	77	0.3
기타 법인	172	0.6	173	0.7	169	0.7
공법상 법인	54	0.2	44	0.2	44	0.2
합계	30,080	100.0	24,455	100.0	24,660	100.0
서독						
개별경영체	325,602	94.9	254,465	93.0	225,880	90.4
인적회사	15,748	4.6	17,704	6.5	22,247	8.9
민법상 회사	13,023	3.8	15,107	5.5	18,769	7.5
합명회사	82	0.0	67	0.0	75	0.0
합자회사	936	0.3	748	0.3	1,821	0.7
기타 회사	1,707	0.5	1,782	0.7	1,582	0.6
사법상 법인	1,267	0.4	1,110	0.4	1,434	0.6
등록조합	86	0.0	84	0.0	102	0.0
유한회사	690	0.2	582	0.2	820	0.3
주식회사	31	0.0	29	0.0	30	0.0
기타 법인	460	0.1	415	0.2	482	0.2
공법상 법인	542	0.2	397	0.1	349	0.1
합계	343,159	100.0	273,676	100.0	249,910	100.0

자료: BMEL 홈페이지, <https://www.bmel-statistik.de/landwirtschaft/tabellen-kapitel-c-hii-und-hiii-des-statistischen-jahrbuchs/>

<표 III-17> 독일의 농업경영체 농용지 면적 분포 추이

(단위: 천ha, ha, %)

구분	2007년		2010년		2016년	
	농용지	평균 경지규모	농용지	평균 경지규모	농용지	평균 경지규모
동독						
개별경영체	1,467.3 (26.4)	63	1,463.7 (26.4)	83	1,518.4 (27.5)	86
인적회사	1,245.4 (22.4)	385	1,236.8 (22.3)	386	1,231.7 (22.3)	366
민법상 회사	818.2 (14.7)	323	780.8 (14.1)	324	732.7 (13.3)	302
합명회사	8.1 (0.1)	676	6.3 (0.1)	631	10.1 (0.2)	594
합자회사	413.9 (7.4)	669	124.9 (2.3)	538	129.2 (2.3)	507
기타 회사	5.2 (0.1)	77	324.8 (5.9)	590	359.7 (6.5)	538
사법상 법인	2,844.8 (51.1)	842	2,840.5 (51.2)	815	2,764.8 (50.1)	762
등록조합	1,458.7 (26.2)	1,419	1,381.2 (24.9)	1,405	1,275.0 (23.1)	1,378
유한회사	1,289.8 (23.2)	614	1,359.3 (24.5)	605	1,392.7 (25.2)	567
주식회사	87.7 (1.6)	1,139	89.3 (1.6)	1,089	86.7 (1.6)	1,126
기타 법인	8.6 (0.2)	50	9.4 (0.2)	54	10.4 (0.2)	62
공법상 법인	7.3 (0.1)	135	6.1 (0.1)	138	5.2 (0.1)	118
합계	5,564.8 (100.0)	185	5,547.2 (100.0)	227	5,520.0 (100.0)	224
서독						
개별경영체	10,104.3 (88.9)	31	9,601.8 (86.3)	38	9,144.7 (82.3)	40
인적회사	1,152.4 (10.1)	73	1,422.6 (12.8)	80	1,855.1 (16.7)	83
민법상 회사	1,063.2 (9.4)	82	1,291.0 (11.6)	85	1,666.4 (15.0)	89
합명회사	2.3 (0.0)	28	2.3 (0.0)	35	3.4 (0.0)	45
합자회사	64.4 (0.6)	69	75.0 (0.7)	100	109.8 (1.0)	60
기타 회사	22.6 (0.2)	13	54.3 (0.5)	30	75.5 (0.7)	48
사법상 법인	66.5 (0.6)	52	69.9 (0.6)	63	81.5 (0.7)	57
등록조합	6.8 (0.1)	79	6.5 (0.1)	77	6.9 (0.1)	68
유한회사	22.1 (0.2)	32	25.6 (0.2)	44	34.0 (0.3)	41
주식회사	9.3 (0.1)	301	7.2 (0.1)	249	6.4 (0.1)	213
기타 법인	28.2 (0.2)	61	30.6 (0.3)	74	34.2 (0.3)	71
공법상 법인	41.6 (0.4)	77	37.8 (0.3)	95	33.0 (0.3)	95
합계	11,364.8 (100.0)	33	11,132.1 (100.0)	41	11,114.4 (100.0)	44

자료: BMEL 홈페이지, <https://www.bmel-statistik.de/landwirtschaft/tabellen-kapitel-c-hii-und-hiii-des-statistischen-jahrbuchs/>

<표 III-18> 독일 지역 간 농업경영체 구성(2016년)

(단위: %, ha)

구분	개별경영체			인적회사			법인(사법상)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 경지 면적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 경지 면적	경영체 비율	경지 비율	평균 경지 면적
동독	71.5	27.5	86	13.6	22.3	366	14.7	50.1	762
서독	90.4	82.3	40	8.9	16.7	83	0.6	0.7	57
전체	88.7	64.1	44	9.3	18.6	120	1.8	17.1	560

자료: BMEL 홈페이지, <https://www.bmel-statistik.de/landwirtschaft/tabellen-kapitel-c-hii-und-hiii-des-statistischen-jahrbuchs/>

다. 농업경영체 관련 특례제도

- 독일의 농업은 2016년 등록 기준 27만 5,400여개의 농업경영체 중 가족농 비중이 약 89%로 거의 대부분 가족농(개인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⁶¹⁾
 - 이 중 영농조합 및 영농회사가 약 9.3%, 법인이 2.0% 정도임

<표 III-19> 독일의 농업관련 조세특례

세목	주요 특례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미혼 900유로, 기혼 1,800유로) 단, 소득이 한도(미혼 30,700유로, 기혼 61,400유로)를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소규모 자영 농지 20ha 이하의 경우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표준율에 의해 ha당 일정액을 소득으로 추정함(입업적 사용 경영면적의 경우 50ha 이하) - 표준율은 농업용지의 경우 ha당 350유로, 가축동물이 있는 경우 26단위부터 ha당 300유로가 가산됨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또는 협회 형태의 농업생산협회(Produktionszusammenschluss)의 경우 9개년의 평가기간에 걸쳐서 최대 15,000유로를 공제함
영업세 (무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에 대한 서비스 또는 회원이 생산한 농림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함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세율은 19%를 적용함 -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농업경영체는 평균치에 근거하여 간이과세의 대상이 되며, 통상 10.7%를 적용함 - 임산물은 5.5% 세율을 적용함

61) BMEL(2017), p. 7.

<표 III-19>의 계속

세목	주요 특례																								
토지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에 대해 가뭄 또는 홍수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당한 총소득(Rohertrag) 감소가 있는 경우 세액을 감면함 - 50% 이상 생산이 감소한 경우 25% 세액을 감면, 100% 생산이 감소한 경우 50% 세액을 감면함 																								
상속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는 상속 후 15년간 농업경영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경영 수익 또는 임차료를 자산화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전용 동력이동기 및 부속기(Anhänger)는 면세함 																								
에너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종량세로 부과함 - 재생에너지(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로 발전된 전기의 경우 전기세를 면제함 - 제조업 및 농림업: 전기세율 25% 감면함(기본세율 20.50유로/MWh를 15.37유로/MWh로 인하) - 제조업과 농림업(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난방유, 가스, 액체가스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함 - 디젤유에 대해서는 농업용에 한해 저율과세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표준세율</th> <th>제조업 및 농림업 (농업경영체)</th> <th>농업용 디젤유</th> </tr> </thead> <tbody> <tr> <td>휘발유 (가솔린)</td> <td>654.50유로/1,000리터</td> <td></td> <td></td> </tr> <tr> <td>디젤유</td> <td>470.40유로/1,000리터</td> <td></td> <td>255.60유로/1,000리터</td> </tr> <tr> <td>난방유</td> <td>61.35유로/1,000리터</td> <td>15.34유로/1,000리터</td> <td></td> </tr> <tr> <td>천연가스</td> <td>5.50유로/1,000MWh</td> <td>1.38유로/1,000MWh</td> <td></td> </tr> <tr> <td>액화가스</td> <td>60.60유로/1,000kg</td> <td>15.15유로/1,000kg</td> <td></td> </tr> </tbody> </table> <p>자료: BMEL(2019), pp. 19~20.</p>	구분	표준세율	제조업 및 농림업 (농업경영체)	농업용 디젤유	휘발유 (가솔린)	654.50유로/1,000리터			디젤유	470.40유로/1,000리터		255.60유로/1,000리터	난방유	61.35유로/1,000리터	15.34유로/1,000리터		천연가스	5.50유로/1,000MWh	1.38유로/1,000MWh		액화가스	60.60유로/1,000kg	15.15유로/1,000kg	
구분	표준세율	제조업 및 농림업 (농업경영체)	농업용 디젤유																						
휘발유 (가솔린)	654.50유로/1,000리터																								
디젤유	470.40유로/1,000리터		255.60유로/1,000리터																						
난방유	61.35유로/1,000리터	15.34유로/1,000리터																							
천연가스	5.50유로/1,000MWh	1.38유로/1,000MWh																							
액화가스	60.60유로/1,000kg	15.15유로/1,000kg																							
보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액이 4,000유로 이하의 경우 면세함 - 단, 우박, 바람, 서리, 폭우, 범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액의 0.03% 세액 감면을 적용함 																								

자료: BMEL(2019); 흥범교(2020), p. 123.

1) 소득세

-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우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3a조(§13a EStG)에 따라 소형농의 표준율을 적용하여 ha당 일정액을 소득으로 추정함⁶²⁾⁶³⁾
 - 표준율에 의한 소득 계산은 농림업소득에만 적용함
 -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가 법적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지고 있지 않고 농업용지(자기경영)가 20ha 이하여야 함
 - 가축사육의 경우 50단위 이하, 임업적 사용 면적이 50ha 미만, 특별이용되는 경영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
 - (표준율) 농업용지의 경우 ha당 350유로, 가축동물이 있을 경우 26단위부터 ha당 300유로를 가산하여 적용함
 - 특별한 작목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작목별로 1,000유로를 가산하여 적용함

- 「소득세법(EStG)」상 농업소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 III-20>과 같은 농지면적당 두수(頭數) 요건을 충족해야 함⁶⁴⁾
 - 축산의 경우 농지 규모별로 최대 가축두수가 규정되어 있음

<표 III-20> 농업소득 특례 적용 요건(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단위: ha, VE/ha)

농지 면적	최대 가축두수
최초 20ha	10
다음 10ha	7
다음 20ha	6
다음 50ha	3
그 이상	1.5

주: VE는 동물 단위를 의미
 자료: BMEL(2019), p. 8.

62) BMEL(2019), p. 2.

63) <http://www.gesetze-im-internet.de/estg/index.html>(검색일자: 2021. 3. 9.)

64) BMEL(2019), p. 8.

-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7g조(§7g EStG)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공제 및 특별 감가상각(Investitionsabzugsbeträge und Sonderabschreibungen zur Fö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Betriebe) 제도가 있음⁶⁵⁾
 - 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투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투자액의 50%⁶⁶⁾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농림업경영체의 경우 경제적 가치(Wirtschaftswert) 또는 대체 경제적 가치(Ersatzwirtschaftswert)가 125,000유로 이하이며, 임대 및 개인 점유 토지는 포함하지 않음
 - ② 비농림업(자영업 포함)의 경우 사업 자산 규모가 235,000유로 이하, 2020년 연간 세금법(Jahressteuergesetz 2020(JStG 2020))에서는 125,000유로로 축소됨⁶⁷⁾
 - 향후 3년 이내 설비투자 의사가 있어야 하며, 2020년 세법개정으로 투자한 설비 사용 요건이 완화되어 50%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투자 공제가 가능함
 - 기존 투자비용 공제의 경우 사업자산 비용의 40%를, 사업자산의 사용 용도가 사업 목적을 위한 사용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 또는 제조 이전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었음⁶⁸⁾
 - 다만, 당해연도 및 최근 3년에 걸쳐 20만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됨

2) 법인세

- 독일의 경우 「법인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 KStG)」 제5조에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5조 1. 14항(Genossenschaften sowie Vereine, soweit sich ihr Geschäftsbetrieb beschränkt)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
 - 농업 및 임업 시설의 일반적인 사용
 - 조합원의 경영체의 농업 및 임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작업 계약으로 인한 용역(예: 운영시설, 도로 및 토지 개량 등)

65) <http://www.gesetze-im-internet.de/estg/index.html>(검색일자: 2021. 3. 9.)

66) 2020년 연간 세금법(Jahressteuergesetz 2020(JStG 2020))에 의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됨

67) <https://www.steuer-gonze.de/web/index.php/brandaktuell/373-der-investitionsabzugsbetrag-zur-foerderung-kleinerer-und-mittlerer-betriebe-gem-s-7g-estg>(검색일자: 2021. 3. 9.)

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2021)

- 토지의 가공 또는 판매
- 농림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조연

- 「법인세법(KStG)」 제25조에서는 농림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에 대한 면제에 대해 규정함
 - 농업 또는 임업과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 당해 연도와 향후 9년간 연 15,000유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단, 조합원이 조합에 농지의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며, 양도한 농용지 또는 건물 지분과 조합원 지분 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5. 영국

가. 법적 형태

- 영국의 농업경영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영체는 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조직됨⁶⁹⁾
 - Eurostat에 따르면 약 4% 정도가 법인 및 그룹 소유 형태임⁷⁰⁾
-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파트너십이 있음
 - 기본적으로 「Partnership Act 1890」에 규정되어 있는 파트너십이 있으며, 「Limited Partnership Act 1907」에 따라 규제되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이 있음

나. 농업경영체 현황⁷¹⁾

- 영국의 농업경영체 관련 현황은 다음의 <표 III-21>과 같음

69) Van Der Veen et al.(2007), p. 192.

70) Only about 4% of agricultural holdings are in the form of legal persons and group holdings(Eurostat, 2004a; Van Der Veen et al. 2007, p. 192 재인용)

71) DEFRA(2019), pp. 15~36 내용을 요약함

- 2019년 기준 농업경영체 수는 약 21만 9천호로 이는 2014년 약 21만 2천호 대비 3.3% 증가, 2018년 약 21만 8천호 대비 0.2% 증가함
- 2019년 농업경영체 평균 보유면적은 약 81천ha이며, 이는 2014년 약 82천ha 대비 1.0% 감소, 2018년 약 80천ha 대비 0.6% 증가함

<표 III-21> 영국의 농업경영체 규모

(단위: 천호, 천ha)

구분	2014년		2018년		2019년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면적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면적	농업경영체 수	농업경영체 면적
20ha 이하	95	694	104	691	103	705
20ha 이상~ 50ha 이하	41	1,364	42	1,373	42	1,390
50ha 이상~ 100ha 이하	33	2,389	32	2,271	32	2,280
100ha 이상	42	12,810	41	13,174	41	13,277
합계	212	17,257	218	17,509	219	17,652
농업경영체 평균 면적	-	82	-	80	-	81
20ha 이상 경영체 평균 면적	-	142	-	147	-	147

자료: DEFRA(2019), p. 20 및 2018년의 경우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al-data-sets/agriculture-in-the-united-kingdom>

데이터를 추가함

다. 농업경영체 관련 특례제도

1) 소득세

영국의 소득세율은 다음의 <표 III-22>와 같은 누진세 구조임

- 표준 기본공제 한도는 12,500파운드이며, 자영업자 소득 및 임대소득 기본공제액은 1,000파운드 등이 있음⁷²⁾

72) <https://www.gov.uk/income-tax>(검색일자: 2021. 3. 9.)

<표 III-22> 영국의 소득세율

(단위: 파운드, %)

구간	과세대상 소득	세율
기본공제구간(Personal Allowance)	12,500 이하	0
기본세율(Basic rate)	12,501~50,000	20
고세율(Higher rate)	50,001~150,000	40
추가 세율(Additional rate)	150,000 초과	45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income-tax-rates>(검색일자: 2021. 3. 9.)

- 영국의 농업 관련 규정(HS224 Farmers and market gardeners)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 균분(averaging relief)하여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⁷³⁾
 - 이는 농업의 경우 소득변동성이 높아 누진세로 인해 장기적으로 타 산업 대비 소득세 부담이 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임⁷⁴⁾
 - 여기서 ‘농업’은 식량 생산을 위해 상업적으로 가축이나 어류를 사육하는 경우도 포함함
 - 동 제도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 또는 5년 중 선택하여 균분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2년 기간을 선택한 경우 2개년도 소득 차이가 소득이 더 높았던 연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이어야 함
 - 5년 기간을 선택한 경우 최근 2개년 소득과 그 이전 4년간 소득의 평균 간 차이 중 더 큰 것 대비 25% 이상이어야 함

-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의 경우 농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제도임⁷⁵⁾
 - 이는 개인사업자, 파트너, 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한도까지 사업 관련 자산 투자에 한해 전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며, 2008년에 도입되었음
 - 대부분 플랜트⁷⁶⁾ 및 기계류가 연간투자공제 가능한 사업 관련 자산에 해당함

7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rmers-and-market-gardeners-hs224-self-assessment-helpline/helpline-farmers-and-market-gardeners-2020>(검색일자: 2021. 3. 8.)

74) 홍범교 외(2016), p. 70.

75)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검색일자: 2021. 3. 8.)

76) 생산용 기계장치, 공장 설비 혹은 공장 전체 등 기계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의미

- 2019년 1월부터 플랜트 및 기계류에 20만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투자공제액을 증액한 바 있음⁷⁷⁾

<표 III-23>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 금액 변화

(단위: 파운드)

자영업자/파트너 (Sole traders/partners)	유한회사 (Limited companies)	연간투자공제 (Annual Investment Allowance)
2008. 4. 6. ~ 2010. 4. 5.	2008. 4. 1. ~ 2010. 3. 31.	50,000
2010. 4. 6. ~ 2012. 4. 5.	2010. 4. 1. ~ 2012. 3. 31.	100,000
2012. 4. 6. ~ 2012. 12. 31.	2012. 4. 1. ~ 2012. 12. 31.	25,000
2013. 1. 1. ~ 2014. 4. 5.	2013. 1. 1. ~ 2014. 3. 31.	250,000
2014. 4. 6. ~ 2015. 12. 31.	2014. 4. 1. ~ 2015. 12. 31.	500,000
2016. 1. 1. ~ 2018. 12. 31.	2016. 1. 1. ~ 2018. 12. 31.	200,000
2019. 1. 1. ~ 2020. 12. 31.	2019. 1. 1. ~ 2020. 12. 31.	1,000,000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검색일자: 2021. 3. 8.)

2) 법인세

- 영국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인세 특례는 없고 19.0%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자본수당(capital allowances)
 - 장비, 기계, 업무용 차량 등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자본 공제 청구가 가능함
 - 연구개발
 - 특허소득
 - 자산 감소 및 재산소득 감소
 - 미등록 상표와 같은 영업권 및 기타 관련 자산에 대한 구제 등

7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mporary-increase-in-the-annual-investment-allowance/temporary-increase-in-the-annual-investment-allowance>(검색일자: 2021. 3. 9.)

6. 소결

- 본 절에서 살펴본 EU 국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각국의 농업정책 목표에 따라 농업법인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농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세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농사조합법인 중 농지소유자격법인에 대한 사업세 및 영업세를 비과세함
 - 농용지구역 내 농지를 지역 내 의욕이 있는 농업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요건에 따른 특별공제액을 차감함
 - 법인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농업을 경영하는 농사조합법인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해 확정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잉여금 배당을 종사분량 또는 이용분량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법인에게 손비처리를 허용함
 - 중소기업 등이 일정 기간 내 판매되었거나, 생산성이 이전 상품 대비 연평균 1% 이상 향상된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 설비를 즉시 상각 처리하거나 취득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함

- 프랑스는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은 없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세제 중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에 대한 혜택이 있음
 -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의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운송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 또한, 프랑스는 최근 직접지불 대상자의 경우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자(농업 전임자)로 한정하는 등 농업법인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⁷⁸⁾

78) 마상진 외(2020), pp. 120~121.

- 이에 따라 농업인 중에서도 비농업전임자가 포함되는 공동농업경영법인에 대한 허가 절차가 엄격해짐
- 독일은 특히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중점을 두고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면세하거나 농업 또는 임업과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 당해 연도와 향후 9년간 연 15,000유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영국의 경우에도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한 특례는 없으나, 농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사업에 한해 일부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음
 - 영국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년 또는 5년에 걸쳐 소득 균분하여 납세하도록 함
 - 또한 중소기업 사업을 대상으로 연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매년 일정 한도까지 사업 관련 자산 투자에 한해 공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캐나다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평생 자본이득면제(LCGE)를 통해 적격 농업 및 어업 자산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 중 생애기간 동안 100만달러 한도로 면제하는 제도가 있음
 - 단,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세에 50%만 반영되므로 최대 50만달러 한도로 과세 표준에서 제외함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가. 시장의 실패

-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시장의 실패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함
 - ‘시장의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함
 -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 불완전 시장, 불완전한 정보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됨⁷⁹⁾

- 농·어업 산업에서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가장 큰 측면은 식량자원이 각 국가의 안보 수단 중 하나가 된다는 점임
 -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시장에 맡겨서 비용효율적인 생산자가 시장에서 생존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생산자가 국내 공급자이건 해외 공급자이건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때 전제되는 것은 상품의 공급자가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국가의 안보 수단이 될 경우, 해외에서의 공급은 의도적으로 단절될 수 있음
 - 효율성만을 강조한다면 국내 식량 생산자가 모두 퇴출될 우려가 있고, 일단 국내 생산자가 퇴출된 뒤에는 해외 공급자들은 국내 식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농업생산물은 재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공급은 비탄력적이며, 필요에 따라 단시일 내에 그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이 아님

79) 이준구 외(2021), pp. 65~68.

- 이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함
 - 사동천(2018)에 따르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별로 일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고 농산물의 자급률을 높게 정하고 있음
 - 스위스와 일본은 각각 50%, 39%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3%(쌀 제외 시 5%)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농산물을 중국과 EU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어 이러한 주요국에서 수출중단 시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단순히 효율성의 관점에서 생산자들의 진입과 퇴출을 시장에 맡길 경우 식량 수출이 국가 차원에서 통제되는 상황에 국가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음
 - 이렇게 안보 수단이 되는 상품으로는 식량 이외에도 에너지, 의약품 등이 포함됨

- 국내 농·어업 산업을 시장에 맡길 경우, 시장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손꼽을 수 있음⁸⁰⁾
 - 먼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청년층의 도시 진출로 인하여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및 공동화(空同化)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방식의 선진화가 더디게 진행됨
 - 농·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개인의 차원에서는 여생이 길지 않아 투자와 변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보다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려는 유인이 더 큰 상황임
 -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대형화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 다음으로, 생산자(농·어민)와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도 농·어민 소득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농·어업 생산성 수준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80) 이동규 외(2018), pp. 87~88.

1) 농·어업 기업화 필요성

- 여러 연구에서 국내 농·어업 산업도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화·조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황영모 외(2016)는 2000년 이후 10년간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업생산자조직에의 참여가 경영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함
 - 김동신 외(2016)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법인 조직에 참여하는 영농인의 농업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으며 영농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함
 - 임종선·김경신(2016)은 영어조합법인이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어업인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영어조합법인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생산자단체의 기업화에서 비롯된다고 봄
 - 윤준상 외(2017)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되는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와 주민 참여율에 따른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인 형태의 마을 조직이 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재원·이인규·김성섭(2018)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상근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성 지표인 ROA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소규모 영세 영농보다 기업화 영농의 수익성이 개선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개인 차원에서는 생산방식을 기업화할 유인과 실천 여력이 부족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 제도의 운영은 타당성을 가짐
 - 동 제도는 단순히 농·어민이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로 영농·영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기업화 전환 유인을 분명히 하고 있음

나. 산업여건

- 가항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농·어업 산업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표 IV-1>에서 보듯, 최근 5개년 사이에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V-5>에서는 1970~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까지의 장기간 농·어가 호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표 IV-1> 최근 5개년간 농어가 인구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농어가 인구		고령인구 비율	
	농업	어업	농업	어업
2015	2,569	128	38.4	30.5
2016	2,496	126	40.3	32.5
2017	2,422	122	42.5	35.2
2018	2,315	117	44.7	36.3
2019	2,245	114	46.6	39.2

주: 2017~2019년 어가인구의 경우 내수면 어가를 제외한 데이터로 앞의 <표 II-5>의 어가인구와 차이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농·어업은 국내 다른 전반적인 산업과 비교할 때 평균적인 수준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옴(<표 IV-2> 참고)
 - 반면, 농·축산업이나 어업은 각각 두 차례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IV-2> 참고)
 - 같은 기간 동안 농·축산업은 세 차례, 어업은 여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특히, 어업의 경우 2016년의 -19.5%를 비롯하여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를 정도로 산업규모의 감소세가 뚜렷함
- 최근 10년 사이 국가의 경제수준이 성장한 것에 비해 농·어업은 거의 정체되었거나 심지어 성장하지 못하고 위축됨
 - 국내총생산이 1,322조원 규모에서 1,919조원 수준으로 약 45% 성장하였음
 - 반면, 농축산업은 28조원에서 31조원으로 9.8% 증가에 그쳤으며, 어업은 3.3조원에서 2.9조원으로 12.4% 오히려 감소하였음(<표 IV-3> 참고)

<표 IV-2> 경제활동별 실질성장률(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연도	국내총생산	농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업
2010	6.8	-3.4	-7.3
2011	3.7	-0.7	-1.8
2012	2.4	0.7	-3.4
2013	3.2	6.5	-7.3
2014	3.2	3.8	6.5
2015	2.8	0.2	-1.6
2016	2.9	-3.9	-19.5
2017	3.2	1.7	6.0
2018	2.9	-0.2	1.9
2019(p)	2.0	2.7	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표 IV-3>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십억원)

연도	국내총생산	농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업
2010	1,322,611	28,357.0	3,302.1
2011	1,388,937	30,684.4	3,545.6
2012	1,440,111	31,483.5	3,226.4
2013	1,500,819	31,502.9	2,874.6
2014	1,562,929	32,144.4	2,795.9
2015	1,658,020	33,225.2	2,883.1
2016	1,740,780	32,361.7	3,064.9
2017	1,835,698	33,974.3	3,580.4
2018	1,898,193	33,150.1	3,297.5
2019(p)	1,919,040	31,134.9	2,89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 농·어업 가구별 평균소득수준의 추이를 보면, 농가와 어가 모두 소득이 상승하고 있으나 도시가구의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소득의 상승폭이 크지 않음
 - 이동규 외(2018)에서 농·어가소득이 2016년까지 전국 가구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2016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소득이 6천만원에 육박하였음을 감안할 때 2016년 이후에도 농가와 어가의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⁸¹⁾
 - 농가와 어가 사이에서도 가구평균소득의 격차가 대체로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농가의 소득개선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표 IV-4> 참고)
 - 앞서 <표 IV-2>에서는 농업보다 어업에서 실질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어업은 산업의 총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어업종사 가구의 감소속도가 더 빨라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4> 농·어가 가구소득 추이

(단위: 천원)

연도	농가(A)	어가(B)	농-어가 격차(B-A)
2010	32,121	35,696	3,575
2011	30,148	38,623	8,475
2012	31,031	37,381	6,350
2013	34,524	38,586	4,062
2014	34,950	41,015	6,065
2015	37,215	43,895	6,680
2016	37,197	47,077	9,880
2017	38,239	49,016	10,777
2018	42,066	51,836	9,770
2019	41,182	48,415	7,2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81) 국가통계포털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전국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2016년까지의 조사결과와의 일관적인 비교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국가통계포털에서도 연단위 가구소득 정보는 2016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동규 외(2018)에서 보여준 2016년 자료까지만을 참고하여 비교함

□ 지금까지는 농·어업에 대한 개괄적인 산업여건을 소개하였으며, 이하에서는 각 산업을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산업여건을 살펴보고자 함

1) 농업 현황⁸²⁾

□ 농가호수는 50년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령농가는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표 IV-5>, [그림 IV-1] 참고)

○ 2019년 현재 농가호수는 1970년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78%가량이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V-5> 연령별 농가호수 비중 추이

(단위: %, 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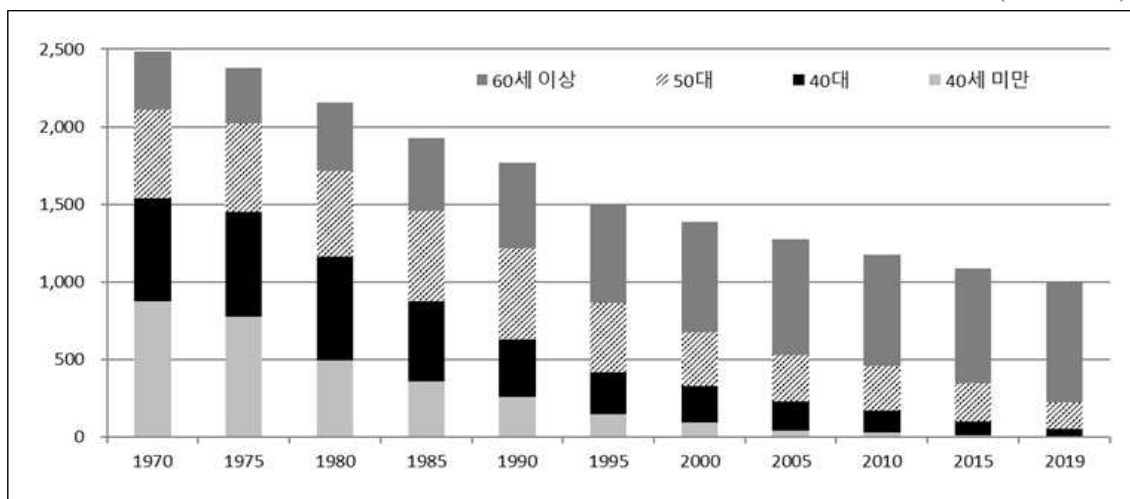
연도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총 호수
1970	35.2	26.7	22.9	15.2	100.0	2,483
1975	32.7	28.5	23.9	15.0	100.0	2,379
1980	23.1	30.8	25.8	20.3	100.0	2,155
1985	18.7	26.6	30.2	24.5	100.0	1,926
1990	14.6	21.1	33.0	31.3	100.0	1,767
1995	9.8	18.1	29.8	42.3	100.0	1,501
2000	6.6	17.2	25.1	51.0	100.0	1,383
2005	3.3	14.6	23.8	58.3	100.0	1,273
2010	2.8	11.9	24.4	60.9	100.0	1,177
2015	1.3	7.7	22.7	68.3	100.0	1,089
2019	0.7	4.5	16.9	78.0	100.0	1,0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82)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가축 사육을 통한 축산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농가의 주된 사업을 농업 대신 농·축산업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의미가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업으로 농·축산업을 대신하여 표현함

[그림 IV-1] 연령별 농가호수 추이

(단위: 천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농가별 경지규모를 살펴보면, 0.5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3ha 이상인 농가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⁸³⁾
 - 그렇지만 0.5ha 미만의 농가의 증가율이 가장 빨라 2019년에는 해당 농가의 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있음([그림 IV-2] 참고)
 - 이러한 결과는 농가 인구의 감소가 전반적인 가구당 생산면적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대규모 경작(3ha 이상)을 하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해당 농가의 비중은 전체의 10%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음
 - 1980년에 30% 수준(29.7%)이던 소규모 경작(0.5ha 미만) 농가의 비중이 2019년에는 48.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농가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농업은 자본화·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작비율의 증가는 전반적인 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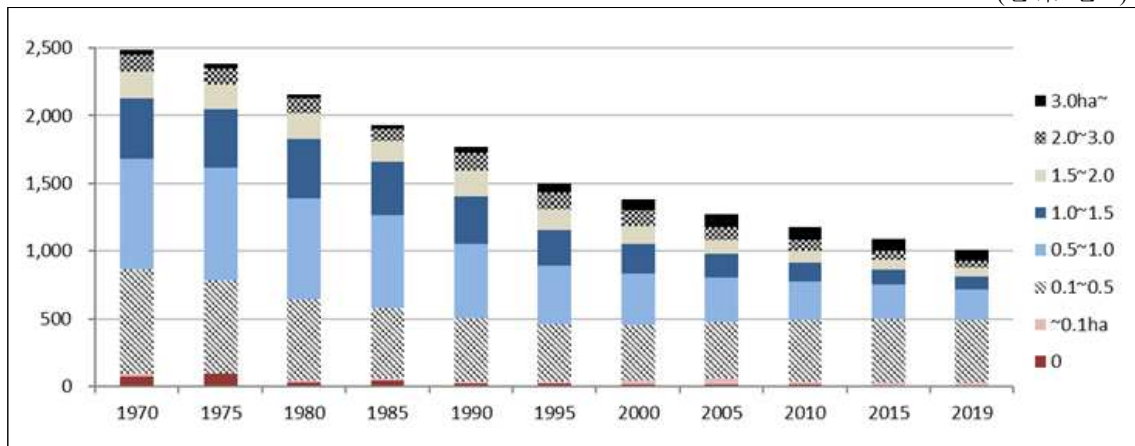
83) 1헥타르(ha)는 10,000m²임

- 엄밀하게 말해, 소규모 경작농가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중규모 경작농가가 농업에서 이탈함에 따라 소규모 경작비율이 증가한 것임
- 고령화된 농가 연령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경작 비율은 더 증가하고 농가의 생산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함
 - 고령의 경작인은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움
 - 생산방식에서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경지를 경작할 수도 없어 소규모 경작에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임

[그림 IV-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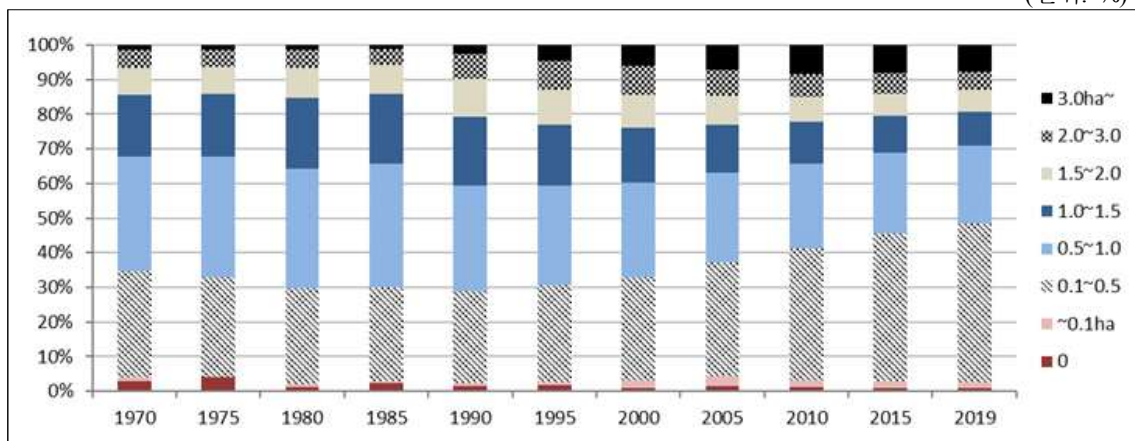
<경지규모별 농가 총호수>

(단위: 천호)



<경지규모별 농가 비중>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저조한 농업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러한 고령화와 소규모 경작 양상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음(<표 IV-6> 참고)
- 최근 10년간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농업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였고 노동집약도는 증가함
 - 자본집약도와 자본구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농업활동에서의 자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본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여 농업에서의 투자가 아직 부가가치의 확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부 대규모 경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확대되었겠으나, 상당수의 농가는 영세한 경작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자본투입을 통한 농업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오히려 부진한 상황임
 - 반면, 노동 및 토지생산성은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여 국내 농업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생산요소가 자본이 아닌 노동과 토지임을 알 수 있음

<표 IV-6> 우리나라 주요 농업생산성 지표 추이(호당 평균)

연도	경지면적	영농시간	노동 생산성	노동 집약도	토지 생산성	자본 생산성	자본 집약도	자본 구성도	자본계수
2010	13.60	1,102.94	15,698	81.09	1,273	0.32	3,920	48	3.08
2011	13.21	1,090.57	14,882	82.55	1,229	0.30	4,162	50	3.39
2012	13.24	1,033.95	16,591	78.11	1,296	0.31	4,126	53	3.18
2013	13.00	1,139.68	16,119	87.68	1,413	0.29	4,793	55	3.39
2014	13.02	1,108.10	17,326	85.10	1,474	0.30	4,878	57	3.31
2015	13.00	1,042.53	19,497	80.18	1,563	0.32	4,841	60	3.10
2016	12.48	962.16	19,525	77.12	1,506	0.31	4,924	64	3.27
2017	12.55	881.15	21,444	70.23	1,506	0.32	4,754	68	3.16
2018	12.02	1,171.88	18,003	97.51	1,756	0.28	6,324	65	3.60
2019	12.66	1,101.02	16,912	86.97	1,471	0.24	6,167	71	4.19

주: 경지면적은 경가경제조사의 표본값임.

영농시간은 자영농업 노동투하량임.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영농시간, 노동집약도 = 영농시간/경지면적,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본집약도 = 농업자본액/경지면적, 자본구성도 = 농업자본액/영농시간,

자본계수 = 자본집약도/토지생산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2) 어업(해수면 어업) 현황

- 어업도 농업과 유사하게 어가인구는 감소하고 어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표 IV-7>, <표 IV-8> 참고)
 - 어업의 경우, 농업보다 어업종사 인구의 감소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어가인구의 경우 2019년에 1985년 인구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 11만여 명으로 급감하였고, 어업가구 호수도 1985년 가구 호수의 40% 수준으로 감소함
 - 이러한 감소속도는 농업의 인구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것임
 - 고령인구 비율은 농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은 명백함
 -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1985년 9.1%에서 2019년에는 54.7%로 증가함
 - 농업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5년 24.5%에서 2019년 78.0%로 증가함

<표 IV-7> 어업가구 및 연령별 어가인구 추이

(단위: 호, 명)

연도	어업 가구	어가인구							합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985	126,800	267,331	66,820	65,814	83,343	63,991	34,815	20,123	602,237
1990	121,525	180,976	59,469	61,547	70,472	69,885	34,602	19,138	496,089
1995	104,480	92,701	36,397	40,684	56,429	62,219	39,400	19,380	347,210
2000	81,571	53,016	28,096	26,553	45,059	46,464	35,530	16,631	251,349
2005	79,942	35,039	20,390	17,826	38,602	46,778	39,827	22,670	221,132
2010	65,775	22,747	12,002	12,873	24,280	40,607	34,659	24,023	171,191
2015	54,793	12,467	6,038	8,176	13,364	31,860	32,675	23,772	128,352
2019	50,909	9,064	3,923	6,599	8,852	23,184	32,884	29,392	113,898

주: 2019년 어업가구의 경우 내수면 가구는 제외한 수치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 일자: 2021. 4. 11.

<표 IV-8> 어가인구 연령별 구성 추이

(단위: %)

연도	어가인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1985	44.4	11.1	10.9	13.8	10.6	5.8	3.3	100.0
1990	36.5	12.0	12.4	14.2	14.1	7.0	3.9	100.0
1995	26.7	10.5	11.7	16.3	17.9	11.3	5.6	100.0
2000	21.1	11.2	10.6	17.9	18.5	14.1	6.6	100.0
2005	15.8	9.2	8.1	17.5	21.2	18.0	10.3	100.0
2010	13.3	7.0	7.5	14.2	23.7	20.2	14.0	100.0
2015	9.7	4.7	6.4	10.4	24.8	25.5	18.5	100.0
2019	8.0	3.4	5.8	7.8	20.4	28.9	25.8	1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물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 일자: 2021. 4. 11.

- 어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규모를 보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V-9>, <표 IV-10> 참고)
 - 1990년에는 2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가구가 전체 어가의 2/3를 차지(67.2%)하였으나, 2019년에는 그 비율이 44.4%로 감소함
 - 반면, 그 이상의 톤급에서는 톤급별로 모두 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보유어선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5~10톤급 어선은 각 톤급 중 유일하게 절대적인 보유가구 수도 증가하여 소형어선 보유가구에서 소형어선 중에서도 보다 톤급이 높은 어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⁸⁴⁾
 - 보유어선의 측면에서 어업은 전체 영어가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보유어선은 과거에 비해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농업의 영세경작 추세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어가 보유어선의 대형화는 소규모 경작농가의 비율이 확대되는 농업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며, <표 IV-4>의 농가와 어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일정 수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4) 총톤수가 10톤 미만인 어선을 ‘소형어선’이라고 부름

<표 IV-9> 보유어선 톤급별 어가 추이

(단위: 가구)

연도	2톤 미만	2~5톤	5~10톤	10~20톤	20~50톤	50톤 이상	합계
1990	46,638	15,665	3,719	1,324	1,015	1,087	69,448
1995	33,465	15,448	4,672	1,062	1,008	961	56,616
2000	25,032	14,916	4,845	1,045	746	600	47,184
2005	23,576	13,965	5,535	943	744	503	45,266
2010	18,086	11,479	4,896	840	720	401	36,422
2015	14,962	10,638	5,073	986	719	459	32,837
2019	12,954	8,856	4,888	1,172	684	605	29,15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물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 일자: 2021. 4. 11.)

<표 IV-10> 보유어선 톤급별 어가비중 추이

(단위: %)

연도	2톤 미만	2~5톤	5~10톤	10~20톤	20~50톤	50톤 이상	합계
1990	67.2	22.6	5.4	1.9	1.5	1.6	100.0
1995	59.1	27.3	8.3	1.9	1.8	1.7	100.0
2000	53.1	31.6	10.3	2.2	1.6	1.3	100.0
2005	52.1	30.9	12.2	2.1	1.6	1.1	100.0
2010	49.7	31.5	13.4	2.3	2.0	1.1	100.0
2015	45.6	32.4	15.4	3.0	2.2	1.4	100.0
2019	44.4	30.4	16.8	4.0	2.3	2.1	1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물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 일자: 2021. 4. 11.)

- 어업의 형태에 따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양식어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어선을 이용한 어로어업의 비중이 증가함(<표 IV-11>, <표 IV-12> 참고)
 - 전체적인 가구는 어업형태를 불문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양식어업의 감소가 더 두드러짐
 - 1985년 양식어업가구의 비중은 46.0%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24.6%까지 감소함

- 반면, 어선을 사용한 어로어업가구의 경우, 절대적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증가함
 - 1985년 전체 해수면어업가구 중 어선을 사용한 어로어업가구 비중이 27.3%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 52.1%까지 상승하였고 이후에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표 IV-11> 어업형태별 가구분포 추이

(단위: 가구)

가구	어로어업		양식어업	합계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1985	33,835	34,653	58,312	126,800
1990	32,628	39,170	49,727	121,525
1995	33,362	37,109	34,009	104,480
2000	17,793	38,968	24,810	81,571
2005	19,134	36,733	24,075	79,942
2010	19,327	29,062	17,386	65,775
2015	16,865	24,434	13,494	54,793
2019	15,084	20,533	15,292	50,90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물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일자: 2021. 4. 11.

- 어선사용가구의 감소에는 어선감척사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잔존 어업인에게는 생산자 잉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⁸⁵⁾
 -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4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함
 - 또한, 주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한·중·일 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어선이 노후화된 것도 어선감척사업의 시행배경이 됨⁸⁶⁾

85) 조훈석 외(2019), p. 34.

86) 이원일 외(2018), p. 71.

- 조훈석·남종오(2019)는 어선감척사업으로 잔존 어업인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함
 - 연안 3개 어업의 지속적 생산가능곡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
 - 잔존 어업인의 생산자 잉여가 어선감척사업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어선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획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어업형태별 가구비중 추이

(단위: %)

가구	어로어업		양식어업	합계
	어선 비사용	어선 사용		
1985	26.7	27.3	46.0	100.0
1990	26.8	32.2	40.9	100.0
1995	31.9	35.5	32.6	100.0
2000	21.8	47.8	30.4	100.0
2005	23.9	45.9	30.1	100.0
2010	29.4	44.2	26.4	100.0
2015	30.8	44.6	24.6	100.0
2019	29.6	40.3	30.0	1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물통계(<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검색일자: 2021.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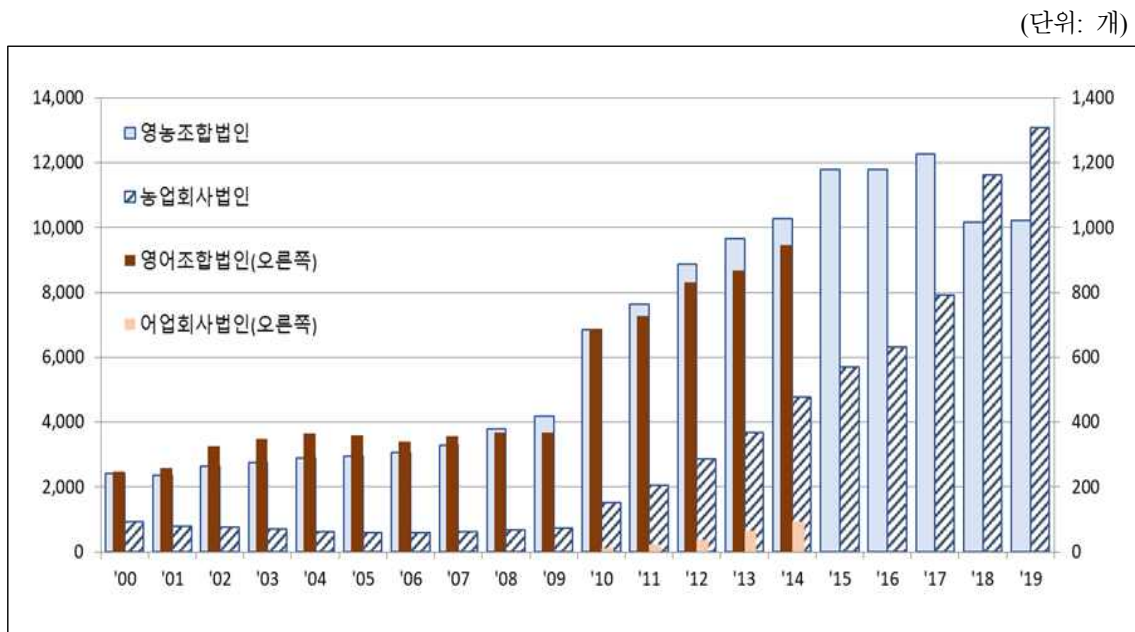
3)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현황

- 이하에서는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어업회사법인의 현황을 정리함
 -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는 2019년까지 공개된 항목이 많으나, 어업법인의 경우 공공통계자료로 공개된 것이 제한적이어서 항목에 따라 농업법인 중심으로 서술함

- 영농조합법인의 수는 1만 여개에서 정체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2000년도에 1천개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만 3천개를 넘어섬⁸⁷⁾
 - 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12,280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1만 여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2009년까지는 1천개 미만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085개에 이룸
 - 영어조합법인도 2009년까지는 300여 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10년 687개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945개까지 증가함
 - 어업회사법인도 201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함
 - 어업법인 수에 대한 국가통계는 2014년까지만 공개되어 있음

-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에 활력이 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농·어업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3] 농·어업법인 수 추이



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어업법인조사의 자료가 2014년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2014년까지만 제공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87) 실질 운영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법인 현황으로 2017년까지 데이터는 <표 II-6>과 차이가 있음

<표 IV-13> 농·어업법인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2000	2,428	938	246	-
2001	2,348	798	258	-
2002	2,653	766	325	-
2003	2,746	696	349	-
2004	2,897	633	365	-
2005	2,958	591	359	-
2006	3,066	591	340	-
2007	3,297	611	358	-
2008	3,795	683	369	-
2009	4,177	725	369	-
2010	6,849	1,512	687	11
2011	7,640	2,052	728	23
2012	8,872	2,875	832	36
2013	9,651	3,682	867	64
2014	10,262	4,781	945	93
2015	11,792	5,692	n.a.	n.a.
2016	11,779	6,309		
2017	12,280	7,920		
2018	10,163	11,617		
2019	10,230	13,085		

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어업법인조사의 자료가 2014년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2014년까지만 제공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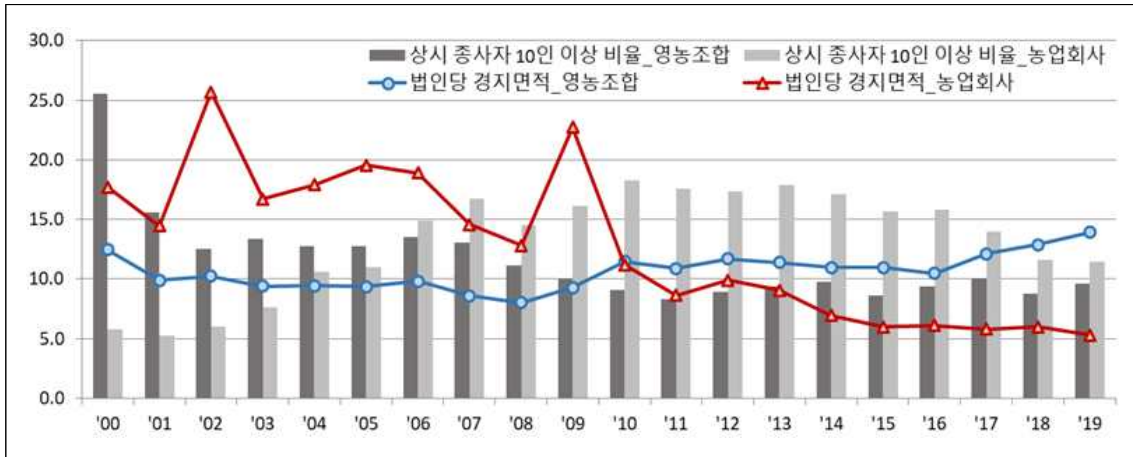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인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음

- 규모를 노동자(상시 종사자) 수와 경지면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노동이나 토지 모두 증가세를 말하기 어려움([그림 IV-4] 참고)
 - 상시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법인의 비율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법인당 경지면적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임

[그림 IV-4] 농업법인의 규모 추이

(단위: %, ha/개)



주: 경지면적은 논, 밭, 목초지 면적을 합한 값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농업법인들이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의 분포를 살펴봄
-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분포는 [그림 IV-5]와 <표 IV-14>, <표 IV-15>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억원 미만과 10억원 이상의 법인 수 비율로만 볼 때는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형법인 비중이 더 빨리 증가함⁸⁸⁾
 -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대비 2019년에 1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법인 비중이 29.2%에서 42.7%로 크게 증가하여 소규모 법인이 법인 수 증가를 주도한 양상임
 -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같은 기간 비교에서 1억원 미만 매출 법인 비중은 54.0%에서 33.6%로 감소한 데에 반해, 10억원 이상 매출 법인 비중은 15.8%에서 35.3%로 증가함

88) [그림 IV-5]와 <표 IV-14>, <표 IV-15>에서 보여주는 법인 수는 결산자료가 공개된 법인에 한한 것이므로 [그림 IV-3]이나 <표 IV-13>의 법인 수와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농업회사법인에서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농업회사법인의 대형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IV-5] 농업법인의 매출규모 분포 추이



주: 농업법인 중 결산자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된 통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4>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추이

(단위: 개, %)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 수	전체 결산법인 내 비중	법인 수	전체 결산법인 내 비중
2011	179	2.71	129	6.70
2012	197	2.58	166	6.11
2013	205	2.45	208	5.99
2014	208	2.47	260	6.10
2015	186	2.14	316	6.13
2016	196	2.25	346	6.14
2017	195	2.17	398	5.70
2018	207	2.14	532	4.84
2019	190	1.96	574	4.62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15>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 분포 추이

(단위: 개)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산법인 총합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00	365	595	289	147	82	43	1,521
2001	345	621	357	111	82	41	1,557
2002	387	696	447	103	93	61	1,787
2003	440	719	491	102	93	69	1,914
2004	485	799	569	100	92	85	2,130
2005	471	799	635	89	87	99	2,180
2006	528	855	675	101	100	122	2,381
2007	620	881	726	111	109	150	2,597
2008	783	991	836	126	144	195	3,075
2009	843	1,107	970	136	173	238	3,467
2010	2,109	2,003	1,563	385	386	563	7,009
2011	2,695	2,215	1,684	621	564	741	8,520
2012	3,200	2,631	1,805	851	866	999	10,352
2013	3,536	2,838	2,002	1,092	1,074	1,306	11,848
2014	3,446	2,929	2,050	1,268	1,307	1,688	12,688
2015	4,279	2,633	1,788	1,838	1,461	1,859	13,858
2016	4,293	2,553	1,881	1,916	1,566	2,152	14,361
2017	4,408	2,672	1,889	2,408	1,994	2,583	15,954
2018	4,211	3,258	2,219	3,647	3,423	3,931	20,689
2019	4,144	3,377	2,193	4,173	3,873	4,387	22,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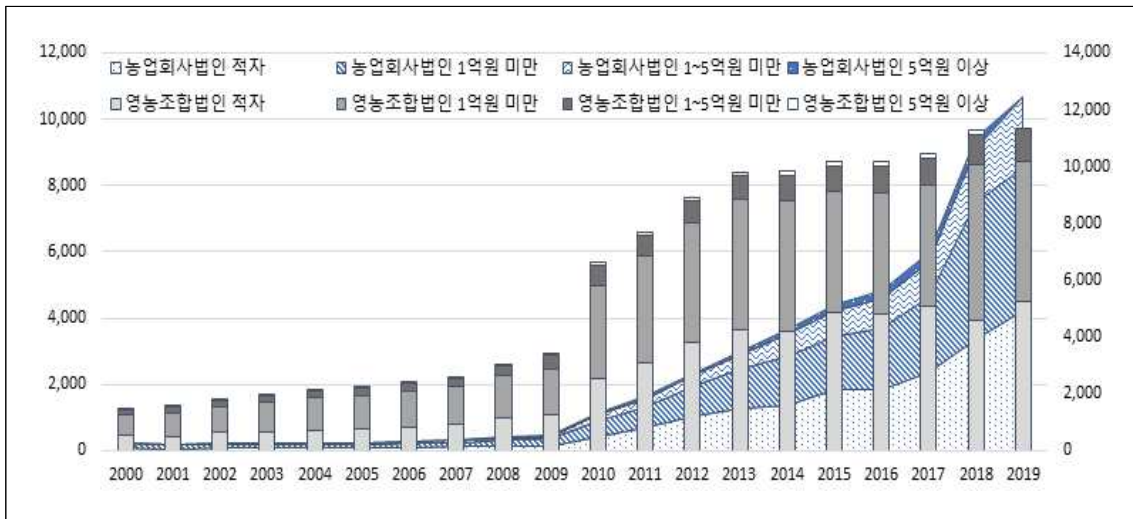
주: 농업법인 중 결산자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된 통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농업법인의 수익성은 두드러진 개선이 없는 가운데 2019년에는 크게 악화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적자 법인의 비중은 2000년도 37.1%에서 2018년에는 40.5%로 증가하였으나, 5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 비중이 같은 기간 0.6%(7개)에서 1.5%(142개)로 증가하여 크게 악화되었다거나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2019년에는 적자 법인의 비중이 46.4%로 크게 증가하고 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은 한 곳도 없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 농업회사법인 역시 영농조합법인보다는 약간 양호한 모습이기는 하나 비슷한 흐름을 보임

- 적자 법인의 비중은 2000년 37.5%에서 2018년에는 35.9%로 소폭 낮아졌으나, 2019년에는 39.5%로 다시 증가함
- 5억원 이상 영업이익 법인의 비중도 2000년 2.2%(6개)에서 2018년 3.5%(388개)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0.0%(4개)로 급감함
- 2019년도의 전반적인 농업법인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법인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따뜻한 겨울 기온과 수확기 잦은 태풍, 신선식품 구매 감소 등의 영향이 지적됨⁸⁹⁾

[그림 IV-6] 농업법인의 수익규모 분포 추이

(단위: 개)



주: 농업법인 중 결산자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된 통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9년의 영업실적은 기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살펴보다라도 영농조합 법인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소폭 개선된 수준에 머무름
 - 영농조합법인의 적자 법인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농업회사법인은 적자 법인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나 1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법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89) 농민신문, 「농가 경영악화 ‘현실’…지난해 주요 농작물 34개 소득 줄어」, 2020. 9. 28. 기사 참고

<표 IV-16> 농업법인의 영업이익규모 분포 추이

(단위: 개)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산법인 총합
	적자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적자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000	463	644	135	7	102	150	14	6	1,521
2001	443	711	156	13	62	152	18	2	1,557
2002	547	792	179	12	84	153	15	5	1,787
2003	579	888	173	10	120	118	23	3	1,914
2004	626	982	209	36	116	119	30	12	2,130
2005	682	972	221	30	104	119	38	14	2,180
2006	711	1,068	239	40	117	140	54	12	2,381
2007	801	1,132	258	36	141	157	60	12	2,597
2008	996	1,268	309	37	183	185	80	17	3,075
2009	1,094	1,384	390	52	188	226	93	40	3,467
2010	2,168	2,819	602	86	519	526	223	66	7,009
2011	2,645	3,229	603	117	830	721	267	108	8,520
2012	3,260	3,626	655	95	1,223	1,040	360	93	10,352
2013	3,653	3,929	710	84	1,512	1,346	512	102	11,848
2014	3,596	3,918	767	144	1,609	1,699	762	193	12,688
2015	4,148	3,687	731	134	2,131	1,915	885	227	13,858
2016	4,110	3,682	796	139	2,154	2,183	1,044	253	14,361
2017	4,337	3,690	782	160	2,734	2,695	1,218	338	15,954
2018	3,924	4,717	905	142	3,948	4,799	1,866	388	20,689
2019	4,510	4,203	1,001	0	4,907	5,056	2,466	4	22,147

주: 농업법인 중 결산자료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작성된 통계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인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농업법인들은 법인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인의 대형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의 기업화는 단순히 영농·영어의 형태를 개인경영에서 법인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원 및 경지·어업활동지역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분업 및 특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이 핵심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법인 중에는 개인 영농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는 소규모 영세 영농활동에 머무르는 법인이 여전히 많으며, 법인의 낮은 수익성도 이러한 영세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개별 법인의 재무자료와 기업현황이 연계된 미시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어업법인들의 수익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분석의 한계임
 - 그러나 법인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를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낮은 수익성과 규모의 경제 미실현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향후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유도는 단순히 법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보다는 법인을 통합시켜 대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동 조세지출제도를 통한 지원은 향후 농·어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의 제2절(지원방법의 적절성)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동 제도는 영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법인이 통합하고 대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정책은 효율적인 법인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자 법인들과의 격차를 확대시켜 법인의 통합과 대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지 및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가 결합되기 때문에 개별 농·어민 입장에서는 법인에 가입할 유인뿐 아니라 이왕이면 보다 생산성이 좋은 법인에 가입할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지원방법의 적절성

가.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조세지출

-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외부성이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은 앞 절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항상 시장의 실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정부의 실패’라고 부름

- 외부성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세임
 -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한계비용의 수준까지 사적 한계비용을 높여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대표적인 수단임
 - 외부경제의 경우 음의 세금(negative tax)을 부과하여 사회적 한계비용의 수준까지 사적 한계비용을 낮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함
 - 이론적으로 음(-)의 세금은 현실적으로는 보조금이나 이미 존재하는 세금에 대한 감면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음

- 국내 농·어업은 식량안보 등으로 외부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음(-)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다른 일반적인 산업들에 비해 낮춰주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줄이는 정책이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여타 산업에 속한 법인들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농·어업에 대하여 감면해주는 것은 교정 기능으로서의 조세지출이라는 이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마찬가지로 개인단위의 영농·영어활동을 법인단위로 전환하는 데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조세지출이라 할 수 있음
 - 농·어민들이 개인적으로 영농·영어활동을 하기보다 기업화·대형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익이 있다는 점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함
 - 농·어업의 생산방식을 대형화·자본화·분업화하는 것은 생산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농·어가 소득증진으로 환류될 것임
 - 따라서 농·어업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도 교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세지출은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통해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어 원론적으로 적절한 지원수단이라 평할 수 있음
 - 교정적 기능의 조세지출은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과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농·어업의 법인화를 유도하도록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을 줄여주는 정책임
 - 동 제도의 조세지출로 사적 한계비용을 줄여 동 제도가 없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 가깝게 농·어업의 법인화를 유도한다면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동 제도는 타 산업에 없는 세제상의 차별적인 혜택이지만 산업 간 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라는 조세원칙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타 산업과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렇지만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원칙은 모든 산업에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일부 산업에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면 해당 원칙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결국, 특정 산업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원칙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조세지출이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농·어촌 가구소득이 도시 가구소득에 비해 명백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어업법인 및 조합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 재정지출 vs. 조세지출

- 외부경제의 존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음(-)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기존 세금을 감면하는 것뿐 아니라 보조금도 해당될 수 있음
 -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경제적 유인제도와 규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보조금(재정지출)제도와 세금감면(조세지출)제도가 포함될 수 있음
 - 규제정책에는 인·허가 제도, 쿼터제(Quota), 배분 또는 배급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정책보다는 경제적 유인제도가 선호되는 정책임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지원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혜자나 보조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한 정책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에 대한 조세지출은 결국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음
 - 재정지출은 정책대상자들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나, 조세지출은 정책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감면하여 지원하는 방식임⁹⁰⁾
 - 재정지출은 소득(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적절함
 - 따라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임
 - 법인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는 법인은 조세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만이 수혜대상이 되므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중 한 가지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고, 두 제도를 병행하거나 조세지출 혜택을 유예시키는 방법이 적절한 경우도 있음
- 두 정책의 특성에 따른 적정성 판단 기준은 <표 IV-17>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동 제도도 재정지출에 비해 더 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를 수혜자, 보조방식, 지원시기 및 행정집행 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90) 김빛마로 외(2019), p. 83.

<표 IV-17>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구분	재정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조세지출이 타당성이 높은 경우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특정 수혜자에 대한 혜택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경우 * 고소득자에게 집중여부 별도 고려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보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다양하고, 보조수준도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비용 등) ·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보험 등) ·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여부 불투명한 사업 등)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점검, 결과확인, 대상자 선정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절차, 대상자 선정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김학수·박노욱(2013), p. 49 <표 II-1>

- (수혜자) 현재 농·어업법인들은 법인 수보다는 개별 법인이 대형화·조직화되지 못한 측면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법인이 더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지출의 형태가 적정함
- 농·어업 종사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한 가운데 관련 법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소규모 영농·영어활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우리나라의 농·어업법인들은 이미 개별 법인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법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에 제한이 많음
 - 따라서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들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익을 기록한 법인들에게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됨

- (보조방식) 농·어업법인과 조합원 및 농·어업인 현물출자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그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하고 단순한 편이어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감면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의 일정 비율로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보조대상도 단순하고 일률적인 비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한 상황임

- (지원시기) 이미 농·어업법인이 등장한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농·어업의 법인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방향성이라 할 때 지원시기 측면에서도 조세지출이 적절한 지원방법으로 보임
 - 동 제도는 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별로 1989년부터 1997년 사이에 신설되어 20~30년간을 지속해 왔음
 - 창업기업처럼 기업이 시장에서 초기 생존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서기까지 지원한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재정지출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농·어업의 기업화·대형화 전환은 종사자가 고령화되는 사회구조적인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진행해야 하는 성격의 것임

- (행정집행) 동 제도의 총조세지출 합산액은 2019년 기준 588억원으로 전체 농·어민 인구와 농·어법인 수를 감안하면 대규모 지원은 아니며, 행정집행의 용이함을 위해서도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이 가지는 장점이 존재함
 - 동 제도의 정책목표상 모든 농·어민과 농·어법인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출로 지원할 경우, 집행점검·결과확인·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우려가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농·어업 총인구는 236만명 수준이며, 농업법인은 2만 3천여 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잠재적 수혜대상 숫자 대비 총지원액이 대규모는 아님
 - 지원받은 법인당 법인세 지원규모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약 600만원, 영어조합법인은 약 500만원, 농업회사법인은 약 1천만원 수준(2019년 기준)임
 - 동 제도에 대한 총조세지출 규모를 정부의 예산 수준이나 여타 지원제도 규모와 비교할 때도 동 제도가 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는 높지 않음

3. 지원수준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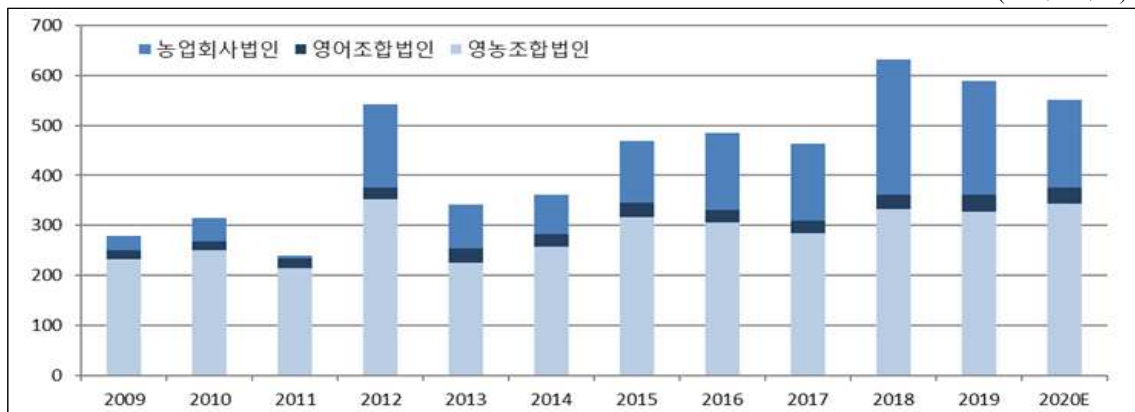
가. 제도 활용 현황

- 동 제도의 법인별 관련 조세지출액을 구분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조세지출이 가장 크며, 그 뒤를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출이 따르고 있음
 -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관련 조세지출액은 328억원이며, 농업회사법인 관련 조세지출액은 227억원임
 - 2018년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332억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271억원의 조세지출액이 발생하여 그 격차가 좁혀지기도 하였음

- 현재까지 동 제도는 주로 농업에서 많은 지원을 누렸으며, 어업은 법인 수 등의 차이로 지원 비중에서 현저히 차이가 남
 - 영어조합법인(및 어업회사법인) 관련 조세지출액은 금액도 3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동 제도로 인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음
 - 2019년 기준 관련 조세지출액은 33억원이었으며, 동 제도 내 전체 조세지출의 5.6%에 불과함⁹¹⁾
 - 이에 대해 김용민(2010)은 농업이 어업보다 FTA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업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하기도 함

[그림 IV-7]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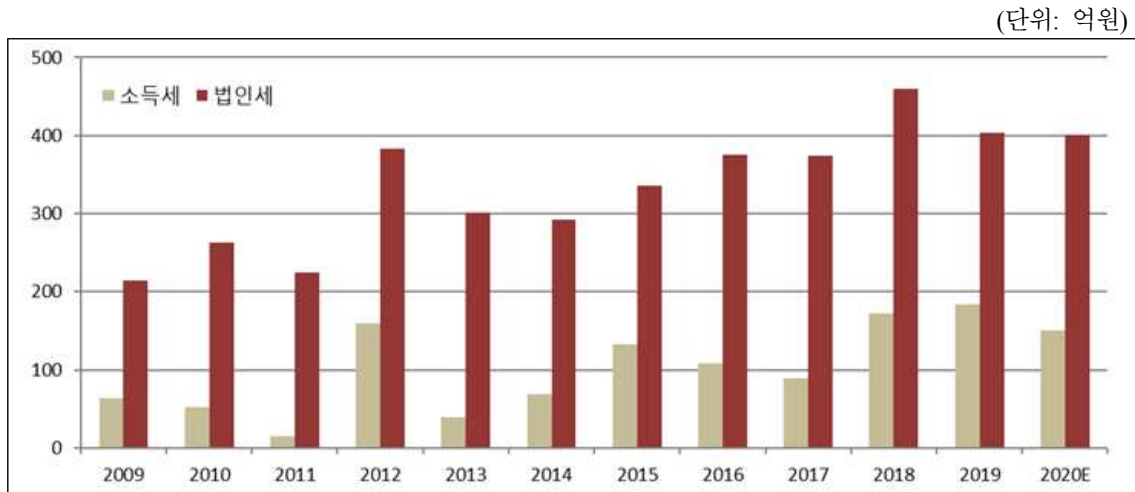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91) 동 비율은 농가 인구 대비 어가 인구 비중과 유사함

- 동 제도에 의한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법인세 감면규모가 소득세의 감면규모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 2019년 기준, 법인세 감면 규모는 404억원으로 동 제도에 의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68.7%를 차지함
 - 반면, 조합원과 현물출자한 농·어업인의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2019년 총 184억원으로 31.3%에 해당함
 - 전체적인 추이는 [그림 IV-8]을 참고할 것

[그림 IV-8] 동 제도에 의한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자료: 조세지출예산서(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지원수준의 적정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어민이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사업자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
 - 농·어민이 영농·영어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 농·어업의 기업화·법인화를 유도하려면 농·어민이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추가적인 편익이 있어야 할 것임
 - 개인 자격으로도 농·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이 이보다 크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은 되어야 법인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생길 것임

- 농업 내에서 개인과 법인 간 수평적 과세수준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하며, 기타 작물재배업 및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감면기준이 다름(<표 IV-18> 참고)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사업자 형태에 무관하게 모두 전액 비과세임(조세상 무차별)
 - 그 외 작물재배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까지만 비과세임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비농업인도 있으므로 인당 기준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됨
 - 농가부업소득도 개인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함

<표 IV-18>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 감면 범위

소득 구분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3,0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 소득금액 한도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 소득금액 한도	
농가부업 소득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업 소득 비과세	1,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 감면	1,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주: 영어조합법인의 회색부분은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이며, 영어조합법인의 백색부분은 '어로어업소득 제외 소득'에 대한 감면한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b)

- 영농조합법인의 기타 작물재배업과 농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감면효과는 조합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개인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음

- 조합원의 소득이 모두 감면한도를 초과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조건은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함
 -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는 해당 소득이 감면한도를 초과하고 다른 일부는 감면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의 세금감면액이 개인사업자보다 높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농업인 2명의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이 각각 11억원과 1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등록되면 비과세 혜택을 더 누리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을 장려하는 목적이 농업인 전반의 소득증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감면조건은 법인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비슷한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음
 - 법인에 지분이 높은 조합원들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높으므로, 지분이 높은 조합원들에게도 항상 유리하지도 않고 유리하다고 해도 분배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한도 기준 자체가 달라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 법인의 수입금액, 농업인 출자자의 지분율, 농업인 출자자 수 등에 따라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할 때 유불리가 달라짐
 - 다만,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감면한도는 수입금액 50억원까지만 전액 비과세가 되므로 대규모로 재배사업을 영위할 경우,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음
 - 이것은 경제적 유인에서 볼 때 대규모 기업화 영농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려는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함
 - 한편, 농업부문 본연의 소득원인 재배업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타 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일한 혜택만을 제공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자에 비농업인도 있으므로 재배업 이외로부터의 소득은 타 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편법의 유인을 없애고 수평적 과세형평성도 누릴 수 있어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출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 이외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한함
 - 기존에는 설립요건인 10% 이상의 농업인 출자율 또는 8억원 이상의 출자금 조건만 만족되면 모든 농업회사법인에 동일하게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됨
 -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의 출자율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출자금이 8억원만 되면 요건을 만족함
 -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일수록 농업인의 참여가 거의 없더라도 농업법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이슈가 내포됨
 - 비농업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음
 - 2019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을 신설하여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출자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혜택을 제한함
 -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함
 - 비농업인 소유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작물재배 소득은 세금감면은 유지하고 작물재배 소득이 아닌 소득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함
 - 복잡해지기는 하였으나 제도 구조적으로 기업형 농업 활성화의 취지는 유지하고 제도 오용의 가능성은 축소시킴

- 한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수준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세법 개정에서 일부 조정함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농가부업소득과 동일하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⁹²⁾
 -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법인세를 면제함
 - 이는 어업인의 어업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임

92) 임종선 외(2016), p. 401.

- 2020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9조의5를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를 정하고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을 확대함
 - 이에 따라, 기존에 어업인의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을 각각 합산하여 최대 8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됨
 - 이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수준도 함께 조정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어업소득을 어로어업소득과 비어로어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어로어업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 대비 영어조합법인의 상대적 혜택이 어로어업소득에서 기존 어업소득보다 더 확대됨(3,000만원: 1,200만원 → 5,000만원: 3,000만원)
 - 결과적으로, 영어조합법인에는 소폭이지만 기존보다 더 유리하게 개정됨

4. 타 제도와 의 유사중복성

- 동 제도를 제외하고 농어업법인을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찾을 수 없음
 - 조세특례제도 중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있으나 이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원이므로 유사 중복 사례가 아님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동 제도의 수혜대상이 동법상의 여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제도 이외의 세금감면제도에서도 농어업법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를 찾지 못하였음
 - 개별 세법 중 ‘소득세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상속세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영어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모두 법인이 아닌 농어민이나 영농·영어상속자를 위한 제도임

- 한편,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재정사업으로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꼽을 수 있으나, 지원내용으로 볼 때 동 제도와 중복 이슈는 없다고 평가됨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에 대하여 각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조직화 촉진 및 사업다각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 근거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임
 - 해당 사업이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동 제도와 수혜대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성격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유사중복성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제도가 개별 세법에 의한 세금감면제도 및 재정사업 중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례는 따로 없는 것으로 평가됨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1. 농·어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가. 조세지원의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정책지향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궁극적으로 동 법인 주주(즉, 조합원인 농·어민)들의 (가구)소득 증대로 연결됨
- 기본적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고 영세한 영농·영어 방식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통해 세후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젊은 연령인구들이 대량 향도 이농·이거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경제활동연령인구가 크게 부족해지면서 전근대적인 방식의 소규모 영농·영어 형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함에 따라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음
 - 시장의 실패 현상은 영농·영어방식의 효율성 제고와 협업·분업의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여 잠재적으로 농·어가 소득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 및 법인생산방식의 도입·발전이 부진한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
 - 한계비용에 비해 (잠재적) 한계편익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인식부족 등과 시장의 불비성 등에 따라 근현대적 생산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
 - 그에 따라 농·어가의 개별적인 영세한 영농·영어방식이 폭 넓게 유지됨
-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 형태의 영농·영어 방식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상기 정책의 주된 목적

-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를 유도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
 - 간접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법인 활동의 세후수익률 상승을 유도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의 귀농·귀어를 촉진하여 현대적 방식의 영농·영어의 대형화 및 법인화 등을 유도
 - 이를 통해 도농 간의 과도한 격차를 야기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완화·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은 농·어가 소득증대가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절의 효과성 분석은 농·어가 소득변화(증대)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 세금 부과 또는 재정수혜 전후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달리, 조세감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시장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 법인 단계에서는 사후적 관점에서 세후법인소득의 증대라는 정책효과의 성격이 강하지만,
 - 개인·가계 단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가계·가구의 시장소득을 변화시키므로 소득분배적 관점에서의 소득지원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
 - 물론 소득세 감면분은 가계의 세전소득이 아닌 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정책의 크기는 법인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편의상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득분배 정책으로 규정하여 이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정책에 대해 2018년에 수행된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어가 내부 및 농·어가 대 비농어가(도시가구) 사이의 소득분배 효과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었음
- 농·어가 내부적으로는 상기의 조세감면을 통해 오히려 소득분배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반면, 농·어가 대 비농어가(도시가구) 사이에는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음
 - 농·어가 내부적으로 상대소득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이유
 - 농·어가의 소득분배구조는 영농·영어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구는 주로 중·고소득층을 형성하는 반면 비경제활동가구는 주로 중·저소득층을 형성하는 경향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결과적으로 상기 법인들과 연계하여 영농·영어 활동을 영위하는 농·어가의 시장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상기 법인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농·어가 중 주로 중·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지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농·어가 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 분배격차가 축소되는 이유
 -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가(즉, 도시가구)에 비해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조세감면정책은 농·어가 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즉, 가구 유형 간 생산성 차이, 법인화·기업화 비율, (생산)규모 등의 차이가 농·어가(또는 농어촌) 대 비농어가(도시지역) 사이의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 장려를 통한 소득진작과 이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생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계층이나 연령층(주로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영농·영어방식의 법인화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소득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 노인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가구(자발적 실업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소득·빈곤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이전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정성적·정량적 관점 모두에서 상기 조세감면정책의 정책효과성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평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함

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 분석자료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농·어가의 (시장)소득 보전에 미친 영향을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통계청이 수집·집계·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농가), 어가경제조사(어가), 가계동향조사(비농어가)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

- 상기 조세감면 정책의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농·어가 내부의 소득증대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와 농·어가 대 비농어가(도시가구) 사이의 (시장)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분배영향에 대한 추정과 평가가 필요
 - 전자의 경우에는 농가경제조사 자료와 어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농가와 어가 안에서의 시장소득 분배구조 변화 효과를 분석
 - 후자의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가 소득지원 정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해야 하므로 농·어가 자료는 물론이고 비농어가(즉, 도시가구)에 대한 정보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상기의 두 자료 외에 비농어를 대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에 함께 사용
 - 분석 자료의 귀속연도가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신자료인 2019년 귀속분 자료를 사용
 - 동 정책의 효과성 추정결과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효과를 선행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에서 사용한 2003년, 2008년 및 2015년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추정결과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최신 추정결과(2019년 기준)와 비교분석함
 -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동 조세감면정책의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상기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동일한 미시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분석
 - 다만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2015년 추정결과 중에서 오타 또는 자료 수정 등에 따라 나타난 오류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

- 기본적으로 농가경제조사 자료와 어가경제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종전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 새로 분석한 2019년 귀속분 자료(일부 2015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에는 1인 단독가구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반영하였음

-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2016년까지 자료수집(구계열)후 조사 중단되었으며, 2019년부터 다시 자료를 표집하기 시작하여 2017~2018년 동안 자료단절이 발생
 - 비농어가에 대한 미시서베이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자료 이외에도 재정패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이 존재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음
 - 더욱이 여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가 2010년 전후 시점이기 때문에 그보다 긴 시계열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추세분석을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 2017~2018년에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라는 명칭 아래에서 표본을 교체해가며 월간 소득정보와 월간 소비정보를 별개 자료 형태로 수집하였음
 - 그러나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 표본자료 구성 등이 구계열과 신계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연도에 대해서는 자료의 연속성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직접적인 분석과 비교가 불가능함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신계열 자료의 경우 표본표집 및 자료 수집방법이 구계열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성격상 구계열 자료와 일맥상통함
 - 2019년부터 구축되는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분기자료와 연간자료의 두 가지 형태로 원시자료가 제공되는데,
 - 분기자료에서는 소득정보가 제공되지만 연간 기준의 자료에서는 소비지출 정보만 이용가능하고 소득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따라서 2019년부터 비농어가에 대한 연간소득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연간 소비지출자료로부터 연간소득 정보를 추출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재정패널 자료(소득정보는 2018년 귀속분 정보를 담고 있음)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간소득을 추정함
 - 상세한 추정방법은 아래의 2)항을 참조하기 바람

2)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간소득 정보 추정

-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가계부 기록방식의 월간 조사방식으로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에 동 자료가 담고 있는 소득·소비 정보자료의 정확성이 높아 신뢰성이 높은 것이 특징
 - 다만 2017~2018년 기간에는 소득·소비자료가 각각 별개의 자료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표집방법과 표본교체주기 등이 달라 다른 기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일치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함께 사용하기 부적절함
 - 2019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가 구계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목적에 부합함

- 다만 2019년부터 다시 구축되기 시작한 신계열 자료는 구계열 자료와 표본표집방법이 다르고, 연간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소득 정보를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
 - 가계동향조사 신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피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하고 월 1회씩 가계부를 수거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후 6개월 휴지 후 다시 6개월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6-6-6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
 - 구계열 자료의 경우 피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3년(중전에는 5년) 동안 매월 1회씩 작성된 가계부를 수집하여 표본자료를 구성하였음
 - 그러므로 신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월간 또는 분기소득 정보는 산출되지만 구계열자료와 달리 연간소득 정보는 산출되지 않음
 - 가계동향조사 신계열 자료는 분기별 자료와 연간자료의 2가지 형태로 자료가 제공
 - 분기별 자료는 분기 소득정보와 분기 소비지출 정보가 모두 제공
 - 연간자료는 연간 소비지출 정보가 월평균값 형태로 제공되며, 연간소득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제공된 분기자료 상호간에는 가구번호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정보를 산출하기 곤란함
 - 비록 가구번호가 제공되어 동일 가구의 서로 다른 분기소득 정보를 연결하

여 합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6개월을 최장기로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분기자료로부터 연간소득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

□ 그러므로 연간기준 소비지출 정보(월평균치 형태로 제공)로부터 역산하여 연간소득자료를 추정

○ 소득·소비 사이의 상관관계는 자료의 포괄범위가 유사한 일반 가구 대상의 미시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소비 관계방정식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비지출 정보 등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간소득 정보를 추정함

○ 소득·소비 관계방정식 추정을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

□ 연간 단위의 소득·소비지출 정보가 모두 이용가능한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의 소득·소비 관계방정식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함

○ 역소비함수(또는 소득함수)

$$- Y = \alpha_0 + \alpha_1 C + X \cdot \alpha_2 + u$$

단, Y : 소득

C : 소비지출

X : 여타 통제변수

α_j : 계수, 단, $j = 1, 2, 3$

u : 오차항

○ 평균소비성향함수

$$- APC = \beta_0 + \beta_1 C + Z \cdot \beta_2 + v$$

단, APC : 소득

Z : 여타 통제변수

β_j : 계수, 단, $j = 1, 2, 3$

v : 오차항

□ 가계동향조사 기준의 연간소득 정보는 상기의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식에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소비지출 및 여타 통제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추정

○ 두 가지 회귀방정식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식을 이용하여 연간소득 정보를 생산

- 두 가지 방정식 가운데 한계소비성향체감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체감의 법칙이 잘 작동하는 것은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식인 것으로 판단함
 - 역소비함수의 경우에도 상수항이 현저하게 절댓값이 큰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그런 특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변수의 설정(specification)에 따라 상수항의 부호가 뒤바뀌는 경우도 나타나는 등 평균소비성향체감의 특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반면에 평균소비성향방정식의 형태로 회귀분석을 시행하면 소비지출(C)의 계수추정치 절댓값이 매우 작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평균소비성향체감의 법칙이 잘 구현됨⁹³⁾
- 연간소득은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를 적용하여 소득추정식을 구성하고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간 단위로 조정된 각 가구별 소비지출액과 여타 설명변수 값을 대입하여 조건부 기대값을 산출하고,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모수적 가정하에서 추정한 오차항 분포를 토대로 무작위수 추출(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해 추출한 오차값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함
- 흔히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변수값을 추정할 때 오차항을 제외한 추정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기대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조건부 기대치를 나타낼 뿐 해당 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아님
 - 일반적으로 조건부 기대치를 추정치로 사용하는 경우 변수값에 대한 추정치, 즉 조건부 기대치의 분포 변이도(degree of variation)는 오차항의 변이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 변수의 실제 변이도보다 추정변이도가 작게 나타나는 편의(bias)를 지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조건부 기대치만으로 추정치를 구성하면, 예를 들어 분산이나 지니계수 등을 산출해보면, 실제 변수의 분산 또는 지니계수값보다 추정치의 분산·지니계수값이 훨씬 작게 추정됨

93) 평균소비성향방정식에서 설명변수를 소비지출 대신 소득으로 대체하면, 소득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절댓값이 매우 작은 음수(-)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작아지는 형태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조건부 기대치와 오차항 추정치를 합산하는 것이,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농·어가 vs.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가계동향조사 연간소득 추정을 위해 사용한 추정식 기준 회귀분석 결과, <표 V-1>)

-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주 연령(1차 및 제곱항), 가구원 수, 취업인 수, 가구주 성별, 교육더미, 종사상지위(근로자가구), 소비지출 모두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연간소득을 추정해본 결과, 가구 연간소득의 평균과 최댓값은 각각 5,830.9만원과 7억 7,635.2만원으로 추정(<표 V-2> 참조)
 - 참고: 가구 소비지출 평균과 최댓값: 각각 2,995.3만원, 5억 2,731.7만원
 - 단, 연간소득 추정치는 오차항에서 무작위 수를 추출하여 조건부기대치에 합산하여 연간소득을 구성하는 만큼, 무작위 수를 추출함에 따라 연간소득 추정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음

<표 V-1> 재정패널조사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2019년 기준)

종속변수: APC (평균소비성향)	계수추정치	t-값
상수	0.8570534174	347.520***
가구주 연령	-0.0042112754	-1304.158***
가구주 연령2	0.0000522725	200087.244***
가구원 수	-0.0015249338	-97.865***
취업인 수(소득자 수)	-0.0888213215	-3069.991***
가구주 성별 더미(남성=1)	-0.0257650284	-255.121***
교육더미(초등학교)	0.0093968831	17.633***
교육더미(중학교)	0.0159485199	26.776***
교육더미(고등학교)	-0.0179924203	-31.770***
교육더미(전문대학)	-0.0259398865	-36.422***
교육더미(대학교)	-0.0652073591	-106.155***
교육더미(대학원)	-0.1281359086	-139.289***
근로자가구 더미	-0.1189007824	-59.889***
소비지출(만원)	-0.0339799350	-468.344***
결정계수(R2)	0.0000223344	4694636.415***
오차항의 분산(표준편차) 추정치	0.06101	(0.24700)
추정방법	단순최소제곱법	
표본 수	4,653	

주: 1. 재정패널 자료 12차 연도(2019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단순최소제곱법으로 추정된 저자추정치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 <표 V-2>에서 보듯이, 재정패널자료의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연간소득 정보를 추정·산출해본 결과,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5,831만원, 평균소비지출은 2,995만원으로 평균소비성향(= 평균소비지출 ÷ 평균소득)은 약 51.4%로 추정됨

○ 지니계수 추정치: 0.45701(2019년 가계동향조사)

- 참고(2019년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 기준)

• 농가(평균소득/소비지출/지니계수): 3,614만원/2,428만원/0.45764

• 어가(평균소득/소비지출/지니계수): 4,842만원/2,395만원/0.53117

□ 비농어가(도시가구)가 농가나 어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고소득가구로 추정됨

○ 이는 도시가구(비농어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함

<표 V-2>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비농어가) 기술통계

(단위: 만원, 명, 세)

1인 가구 포함	농가	어가	비농어가	전체
평균소득	3,614.2	4,841.5	5,830.9	5,671.2
평균소비지출	2,428.1	2,395.4	2,995.3	2,952.5
평균 가구원 수	2.10	2.25	2.42	2.40
가구주 평균연령	68.35	65.27	51.47	52.73
1인 가구 제외	농가	어가	비농어가	전체
평균소득	4,118.2	5,180.9	6,964.6	6,797.2
평균소비지출	2,722.1	2,564.8	3,530.6	3,481.0
평균 가구원 수	2.369	2.46	3.03	2.99
가구주 평균연령	67.64	64.59	52.27	53.19

주: 1. 2019년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비농어가 대상)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기준

2. 가계동향조사 연간소득 정보의 경우 <표 V-1>의 평균소비성향방정식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추정치 기준

3. 2019년 농가경제조사의 연령 정보는 10세 단위로만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로 농가의 경우 연령은 10세 단위 계급구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3) 분석방법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이들 법인과 연계하여 영농·영어활동을 전개하는 농·어가의 농·어업소득 증대로 반영되는 만큼, 해당 가구의 소득변화분을 역산하여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층별 평균 소득지원액과 그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율을 측정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함

- 조세감면 효과는 소득계층별 소득지원(보전)에 따른 (평균)소득증감 효과와, 그에 따른 상대소득분배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율 측정을 통한 두 가지 형태로 분석
 - 각 효과는 농가 내부, 어가 내부 및 농·어가와 비농어를 풀링(pooling)한 전국 단위 전체 가구 기준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함
 - 소득계층은 농가 및 어가의 경우 각 내부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전 가구 중에서 소득순위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한 상태에서 누적가구비율을 매 10%씩 구분하여 분류하여 10개의 소득분위를 구성
 - 지니계수는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값이 작을수록(클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확대)된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소득분배 축소효과는 지니계수의 하락률을 기준으로 측정·평가함

다. 농·어가 소득분포 구조

- [그림 V-1]과 [그림 V-2]는 각각 2000~2019년 기간에 대해 농가, 어가, 비농어의 가구소득 평균치와, 비농어가 가구소득 대비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 상대비율 변화추이를 보여줌
 - 단, 2000~2016년의 추이는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고,
 - 그 이후 기간은 통계청 자료(보도자료: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추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각각 가구원 수 2인 이상 가구 한정)의 가구소득 추이는 <표 V-3>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대체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⁹⁴⁾
 -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세계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07~2009년, 그리고 2011년과 2019년 등 모두 다섯 번 가구평균소득이 전년보다 감소
 - 어가의 경우에는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 가구소득이 감소
 - 비농어의 경우에는 2005~2006년 사이에 가구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자료포괄범위가 2005년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하였지만 2006년부터 읍면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자료 구성범위 변동에 따라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들이 표본에 추가됨에 따른 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
 - 비농어의 경우 농·어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

- 2009~2010년을 경계로 그 이전에는 농가의 평균가구소득이 어가보다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
 - 특히 2016~2017년에는 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
 - 2019년 현재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 평균(2인 이상 가구 기준)은 각각 4,118만원과 5,181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격차가 크게 확대된 상태(<표 V-3> 참조)⁹⁵⁾

- 비농어의 경우에는 2019년에도 가구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농가와 어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

- [그림 V-1]에서 보듯이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2009~2010년을 경계로 그 이전 기간에는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고, 2010~2016년 기간에는 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소득 격차가 크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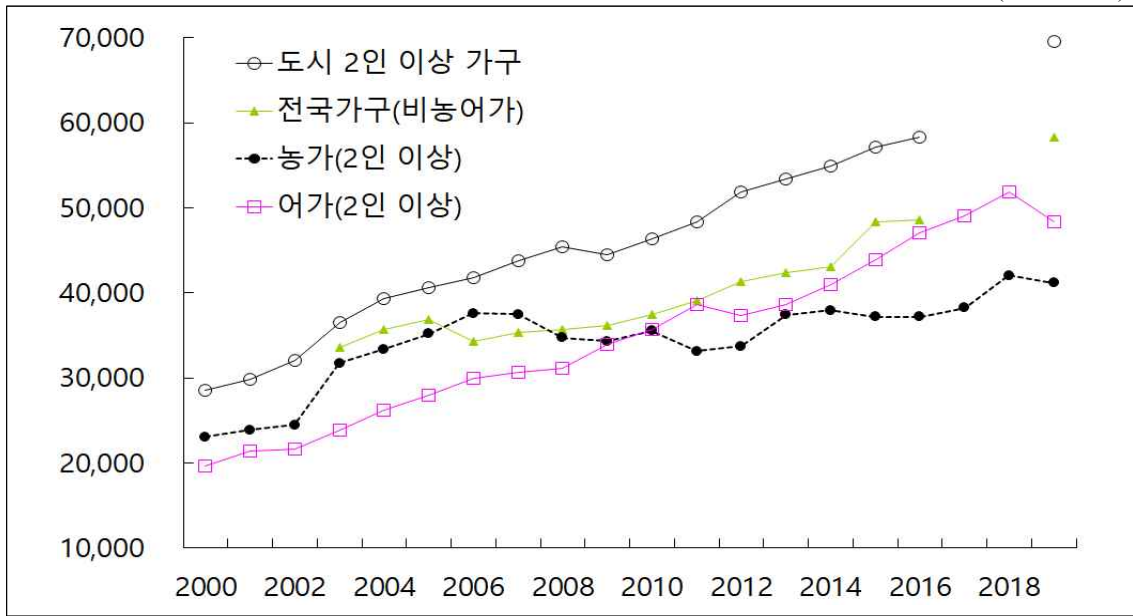
94) 2015년까지는 이동규 외(2018) 추정결과이고, 2019년은 저자 추정치

95) 본 보고서 제Ⅳ장의 <표 Ⅳ-4>는 통계청의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농가경제조사: 3,000개 농가 기준(가구원 2인 이상 2,900개, 1인 단독가구 100개), 어가경제조사: 전국 1,000개 어가)이며, <표 V-3>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인 이상 가구 기준 평균으로 추정된 값임

은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시현

[그림 V-1] 비농어가·농가·어가 총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 주: 1. 2000~2016년: 이동규 외(2018) [그림 IV-1]의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임. 농가와 어가의 원자료는 통계청(2018)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임
 2. 2017~2019년 농·어가: 통계청,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4. 28(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3. 2019년 비농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신계열)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단, 2017~2018년 자료는 동 자료의 단절로 산출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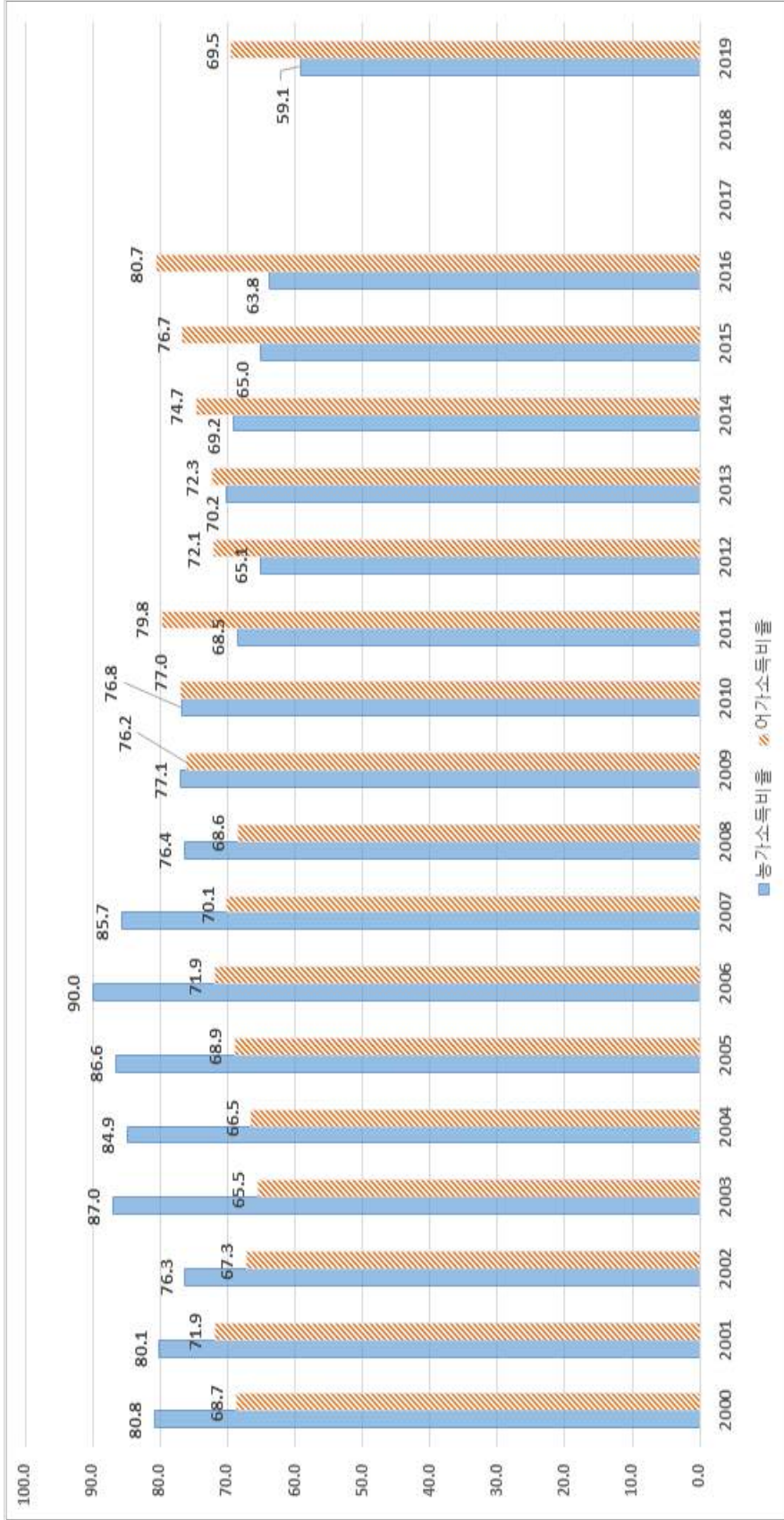
□ [그림 V-2]에서 보듯이 2000~2008년 사이에는 비농어가 대비 농가소득의 상대비율이 대략 80~90%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두 가구 유형 사이의 소득 차이가 작았지만, 2010년 이후 비농어가 소득 대비 농가소득 상대비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2019년에는 59.1%로 크게 하락(2인 이상 가구 기준)

- 한편 비농어가 대비 어가의 가구 총소득의 상대비율은 2000년대 초 7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0~2016년 사이에는, 다소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동 비율이 80%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19년에는 비농어가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어가소득이 감소하면서 동 비율이 69.5%로 크게 하락함

- 최근 비농어가와 농가의 소득상대비율과 비농어가와 어가의 소득상대비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표 V-3>에서 보듯이 농·어가 고령화 속도가 비농어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소득상대비율의 하락 현상은 관련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2003~2019년 사이의 가구주 평균 연령 추이(2인 이상 가구 기준)
- | | 2003년 | 2008년 | 2015년 | 2019년 |
|--------|-------|-------|-------|-------|
| - 농가 | 59.2세 | 63.8세 | 67.7세 | 67.6세 |
| - 어가 | 54.8세 | 58.0세 | 63.5세 | 64.6세 |
| - 비농어가 | 45.4세 | 48.5세 | 50.6세 | 52.3세 |
- 단, 2019년 농가의 경우 가구주(경영주) 연령이 10세 단위 계급구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각 연령계급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평균연령을 추정한 만큼 실제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단순히 농·어가 가구주 평균연령 상승폭이 비농어가보다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의 평균연령의 차이도 대략 12~15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가구유형 간 절대소득 차이를 크게 나타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V-2]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도시 거주 2인 이상 기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대비

(단위: %, [비농어가=100])



- 주: 1. 2000~2016년: 이동규 외(2018) [그림 IV-1]의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임. 농가와 어가의 원자료는 통계청(2018)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임
 2. 2017~2019년 농·어가: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4. 28(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3. 2019년 비농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신계열)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단, 2017~2018년 자료는 동 자료의 단절로 산출이 불가능

- <표 V-3>과 <표 V-4>는 각각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가구(총)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에 대해 소득분위별 분포와 평균에 대한 분포 추이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그림 V-3]~[그림 V-5]는 <표 V-3>~<표 V-4>의 정보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축약하여 보여줌
 - 단, 2000~2016년의 추정결과는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2019년은 저자추정치 기준임

- 2015~2019년의 4년 기간 중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농가·어가·비농어가 모두 가구(총)소득이 증가하였음(<표 V-3> 참조)
 -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각각 10.0%, 11.8%, 21.7%로 비농어가가 여타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큰 차이로 크게 증가
 -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어가와 비농어가의 경우 가구소득이 각각 10.3%와 20.4% 증가하였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2.9% 감소하여 대조적(<표 V-4> 참조)
 - 2015~2019년 사이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표 V-3>~<표 V-4>의 가구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표 V-3> 농·어·비농어가의 총소득·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분포 비교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천원, 세, 명)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583	9,674	13,337	16,605	20,178	24,208	28,975	35,156	45,388	76,789
2008	3,691	11,153	14,651	17,656	21,566	26,076	31,142	37,949	49,890	91,347	30,521	
2015	4,837	12,434	16,409	20,258	25,029	30,418	37,648	47,564	61,918	117,681	37,429	
2019	2,722	12,998	17,532	22,244	27,576	33,950	41,405	51,370	69,114	132,915	41,182	
총소득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705	8,350	11,210	14,659	17,863	20,857	24,712	30,364	38,207	71,330
2008	-3,402	10,005	14,281	18,120	22,250	27,275	33,399	40,632	52,090	97,180	31,176	
2015	-8,314	13,910	17,767	22,586	27,906	34,909	44,800	58,335	75,832	175,940	46,350	
2019	-20,192	12,086	18,670	24,718	31,010	38,366	48,688	62,260	86,169	216,713	51,809	

<표 V-3>의 계속

가계동향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2,330	18,780	23,159	26,960	30,915	34,844	39,712	45,685	53,729	78,989	36,513	
2008		13,943	22,264	27,802	32,893	37,889	43,088	49,338	56,763	69,061	101,533	45,464	
2015		11,630	24,106	32,965	40,149	46,880	53,895	61,768	71,759	87,596	141,399	57,213	
2019		14,188	23,421	31,497	38,780	46,770	56,540	67,363	83,755	110,012	224,290	69,646	
농가경제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60.88	64.99	63.86	61.47	59.75	58.87	57.55	56.65	55.26	52.71	59.20	
2008		65.88	68.25	68.44	67.04	64.89	62.61	63.15	60.40	59.44	58.18	63.83	
2015		71.66	74.89	71.94	70.63	69.58	67.9	66.42	63.36	61.08	59.79	67.72	
2019		69.24	71.62	71.03	70.66	69.58	67.54	67.36	65.09	63.12	61.2	67.64	
가구주 연령	어가경제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6.79	59.90	55.24	55.26	55.88	52.41	53.98	53.85	52.77	52.20	54.82
	2008		58.45	60.45	61.57	59.24	57.85	58.52	56.93	56.96	54.96	54.53	57.95
	2015		65.75	67.97	68.37	65.73	65.96	63.37	61.8	59.94	60.85	55.61	63.52
	2019		63.47	70.08	68.03	67.38	65.66	64.7	63.5	63.69	61.73	57.61	64.59
	가계동향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5.28	47.59	44.33	43.76	42.49	42.69	44.92	43.53	43.75	46.06	45.44
	2008		59.74	50.82	49.98	47.89	45.41	46.82	45.6	45.8	45.53	47.51	48.51
	2015		65.38	54.95	50.57	48.53	46.93	47.07	47.52	47.92	47.79	49.27	50.59
	2019		66.3	58.35	53.44	52.17	50.47	48.81	48.87	47.94	48.35	47.98	52.27
	가구원 수	농가경제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76	2.47	2.69	2.89	2.93	3.29	3.22	3.45	3.84	4.04
2008		2.37	2.26	2.33	2.44	2.62	2.67	2.76	2.89	3.60	3.64	2.76	
2015		2.45	2.56	2.45	2.37	2.33	2.58	2.74	2.97	3.13	3.25	2.68	
2019		2.12	2.09	2.14	2.15	2.17	2.29	2.34	2.59	2.68	3.06	2.36	
어가경제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72	2.96	3.04	2.93	3.12	3.44	3.41	3.06	3.66	4.10	3.24	
2008		2.71	2.55	2.66	2.77	2.84	2.78	3.03	2.94	3.12	3.42	2.88	
2015		2.69	2.45	2.53	2.79	2.77	2.7	3.01	2.99	2.66	3.42	2.80	
2019		2.58	2.2	2.26	2.31	2.2	2.28	2.45	2.56	2.77	2.96	2.46	
가계동향 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56	3.12	3.33	3.41	3.55	3.64	3.84	3.82	3.89	4.00	3.52	
2008		2.43	2.79	3.09	3.32	3.42	3.48	3.63	3.65	3.73	3.79	3.33	
2015		2.27	2.60	2.94	3.08	3.33	3.32	3.46	3.59	3.56	3.54	3.17	
2019		2.23	2.47	2.79	2.88	3.10	3.15	3.29	3.35	3.46	3.53	3.03	

주: 1. 2015년, 2019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03년, 2008년: 이동규 외(2018)의 <표 IV-1>를 발췌 인용
 3. 2019년의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경우 경영주(주로 가구주) 연령 정보가 10세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 중간값을 기준으로 평균연령을 추정함

<표 V-4> 농·어·비농어가의 총소득·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분포 비교(전 가구 기준)

(단위: 천원, 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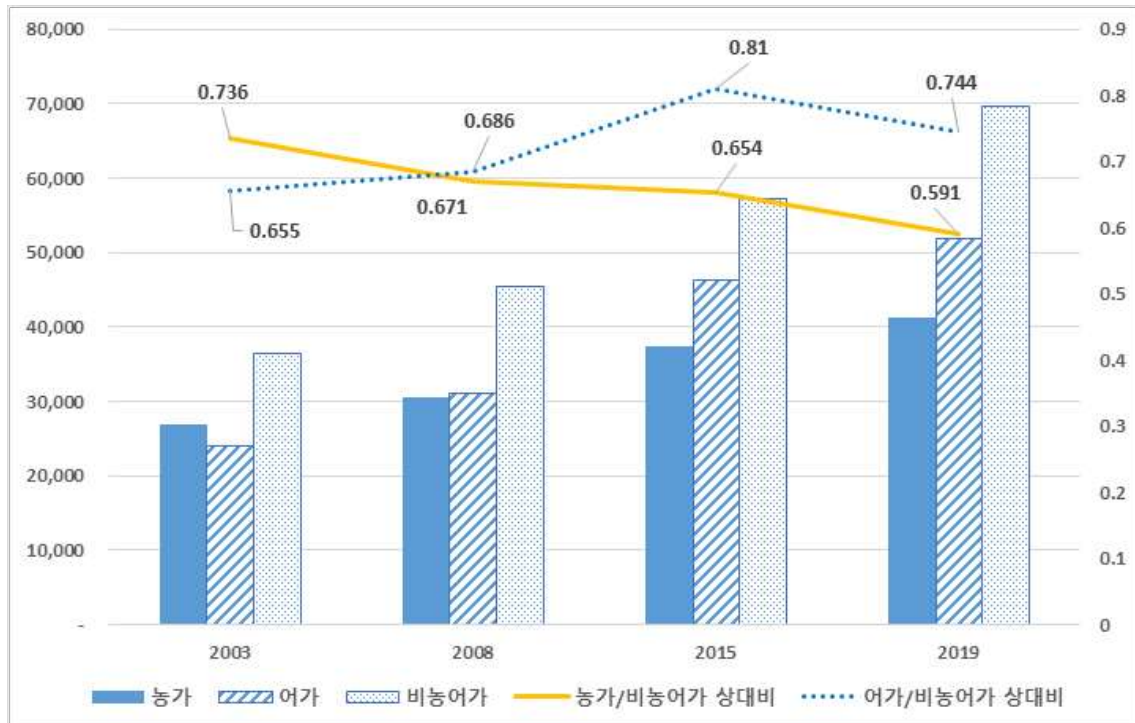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4,818	12,306	16,267	20,104	24,832	30,262	37,432	47,398	61,774	117,027
	2019	1,707	10,980	14,211	18,276	22,626	28,025	35,542	45,567	62,062	122,389	36,142
총 소 득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7,877	12,709	16,716	21,186	26,145	32,185	41,986	55,513	72,787	168,182
	2019	-17,106	11,179	16,538	21,992	27,507	34,641	44,475	58,305	81,423	206,301	48,415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	5,336	10,976	17,269	23,022	28,425	33,679	40,409	48,296	59,368	89,950
	2015	5,811	12,879	21,082	29,875	37,829	45,872	54,419	64,731	80,231	131,423	48,414
	2019	9,017	16,470	22,714	29,716	37,013	45,291	56,620	70,986	96,253	199,033	58,309
가 구 주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78.25	85.29	77.93	75.35	73.64	73.39	69.63	67.74	65.75	63.92
	2019	69.2	71.61	71.54	71.09	71.42	69.19	67.3	66.78	64.06	61.3	68.35
연 령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66.26	68.13	68.47	67.08	65.78	64.85	61.63	60.31	60.73	56.03
	2019	64.13	71.27	69.46	68.56	67.24	65.35	63.54	63.46	62	57.6	65.27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	65.77	57.78	50.60	49.18	47.59	45.68	46.11	45.21	46.00	47.27
	2015	68.95	63.87	55.25	50.81	48.37	46.81	47.20	47.17	48.48	48.67	52.56
	2019	65.6	57.03	53.66	50.42	49.68	48.9	47.4	47.26	47.74	47.00	51.47
가 구 원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2.33	2.54	2.46	2.34	2.33	2.56	2.69	2.93	3.09	3.24
	2019	2.12	2.09	2.14	2.15	2.17	2.29	2.34	2.59	2.68	3.06	2.36
수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5	2.32	2.04	2.47	2.65	2.33	2.77	2.91	2.81	2.74	3.37
	2019	2.28	1.88	1.83	2.04	2.06	2.18	2.28	2.43	2.75	2.82	2.25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	1.39	1.85	2.27	2.79	3.13	3.29	3.50	3.54	3.62	3.75
	2015	1.26	1.54	1.90	2.34	2.79	3.05	3.20	3.42	3.48	3.43	2.64
	2019	1.28	1.58	1.87	2.06	2.33	2.69	2.84	3.06	3.21	3.29	2.42

- 주: 1.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 및 가계동향조사자료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2. 단,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이동규 외(2018)의 <표 IV-1> 중 일부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발췌 인용
 3. 2019년의 농가경제조사자료의 경우 경영주(주로 가구주) 연령 정보가 10세 단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 중간값을 기준으로 평균연령을 추정함

-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산출한 [그림 V-3]에서 보듯이, 농가의 경우 비농어가 대비 가구소득 상대비가 2003~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 반면에 어가의 경우에는 비농어가 대비 가구소득 상대비가 2015년까지는 소폭 상승하여 상대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상대비가 다소 하락하면서 상대소득격차가 조금 확대된 것으로 추정
-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기준으로 분석한 [그림 V-4]에 의하면,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추세적 변화를 추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농어가 대비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상대비가 나란히 하락하고 있어 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

[그림 V-3] 농·어·비농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 추이(2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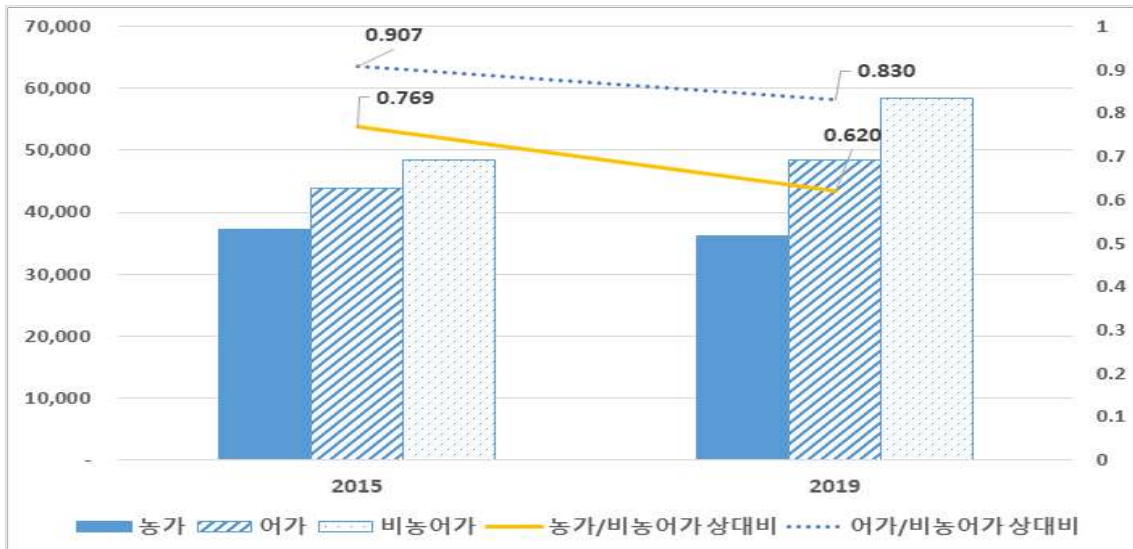
(단위: 천원)



주: 1. 2015년, 2019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03년, 2008년: 이동규 외(2018)의 [그림 IV-3]을 발췌 인용

[그림 V-4] 농·어·비농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 추이(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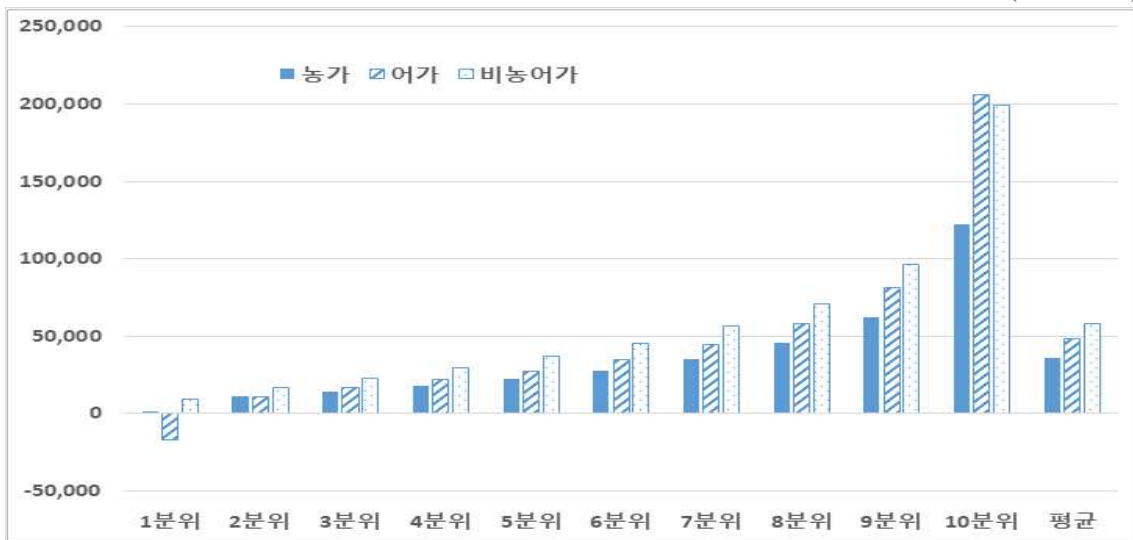
(단위: 천원)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그림 V-5] 소득 10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비교(2019년)

(단위: 천원)



주: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 [그림 V-6]과 [그림 V-7]은 각각 <표 V-3>과 <표 V-4>의 2인 이상 가구 및 전 가구 대상으로 추정된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가구주 평균 연령의 시계열적 추이 변화를 보여줌

○ [그림 V-8]은 2019년 현재 전 가구 기준의 소득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 분포를 보여줌

- [그림 V-6]과 [그림 V-7]에서 보듯이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 수준을 비교하면,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순서로 가구주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농가와 어가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고령화 현상이 더 빨리 진전되었음을 의미
 - 그 배경에는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젊은 연령인구가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였던 지역 간 인구이동 현상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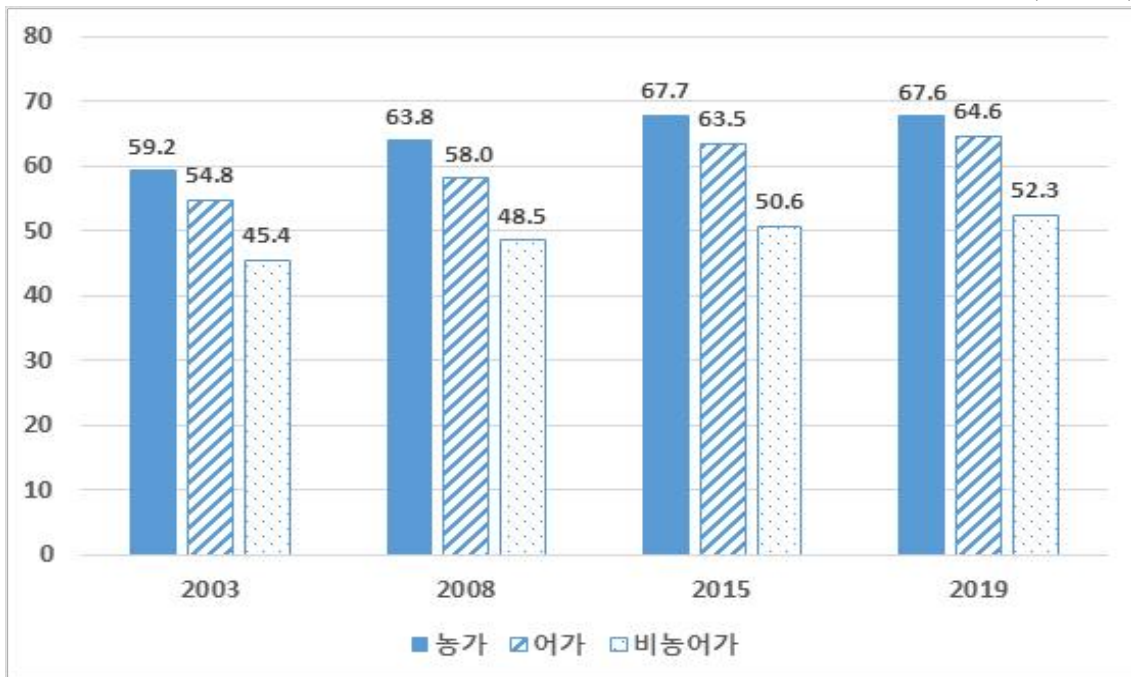
- 아울러 가구주 평균 연령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인구의 지역 간 이동 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화 현상이 만연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됨

- 가구유형별로 절대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구규모의 차이에 관계없이 2인 이상 가구 및 전 가구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분위에서 고소득분위로 이행할수록 가구주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표 V-3> ~<표 V-4> 및 [그림 V-8] 참조)
 - 예를 들어 <표 V-3>에서 2019년 어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4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7.38~70.08세인데 고소득분위로 이행할수록 평균 연령이 낮아져, 10분위에서는 57.6세로 작아짐
 - 다른 유형의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분포패턴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림 V-8]에서 보듯이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저소득분위일수록 비생산연령인구, 즉 노인 가구 비율이 더 높고, 반대로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생산연령인구(비율)가 더 높기 때문
 -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생산연령인구(비율)가 많을수록(높을수록) 경제활동을 더 왕성하게 영위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젊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고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 비생산연령인구(노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반대의 이유로 인해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의한 해석으로 보다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판단됨

- 단, 2019년 농가경제조사자료의 경우 경영주(거의 대부분 가구주) 연령정보가 실제값이 아니라 10세 단위의 연령계급값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표 V-3>~<표 V-4> 및 [그림 V-6]~[그림 V-8]의 2019년 연령 추정치는 편의상 연령계급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출
 - 마지막 연령계급은 70세 이상인데 편의상 계급연령값으로 75세를 설정하였지만 실제의 평균연령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그 이하의 연령계급에서도 연령계급 구분선의 하한보다는 상한에 가까운 연령대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
 - 이런 요인들이 복합되어 전반적으로 2019년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만약 그런 경우라면 <표 V-3>~<표 V-4> 및 [그림 V-6]~[그림 V-8]에서 추정된 것보다 고령화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림 V-6]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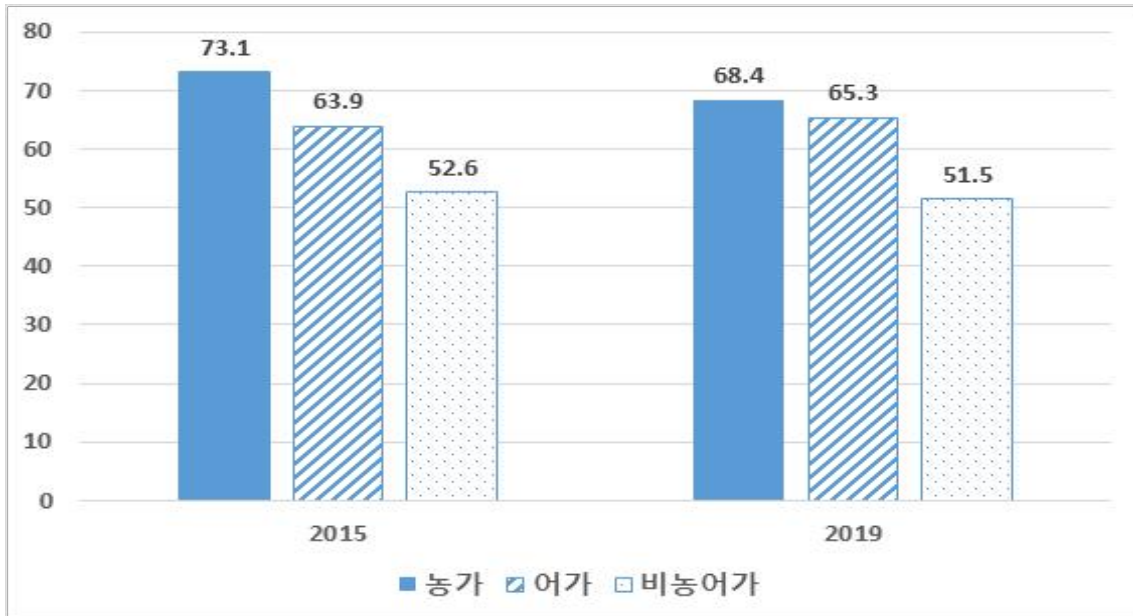
(단위: 세)



- 주: 1. 2015년, 2019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019년의 농가경제조사자료는 10세 단위의 연령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연령구간의 중간값을 계급 대표값으로 설정하여 추정
- 2. 2003년, 2008년: 이동규 외(2018)의 [그림 IV-5]를 발췌 인용
- 3. 단, 2015년 농가의 경영주(가구주) 평균 연령은 이동규 외(2018) [그림 IV-5] 추정결과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완하였음

[그림 V-7]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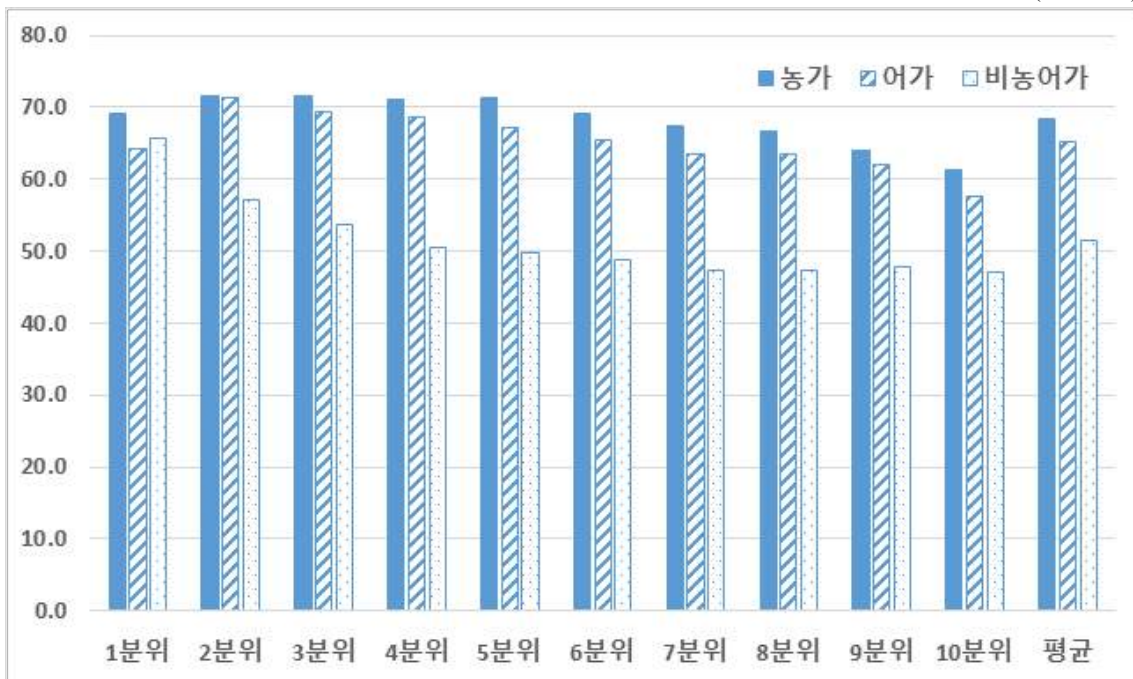
(단위: 세)



주: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019년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10세 단위의 연령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연령구간의 중간값을 계급대표값으로 설정하여 추정

[그림 V-8] 소득분위별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주 평균 연령(2019년, 전 가구 기준)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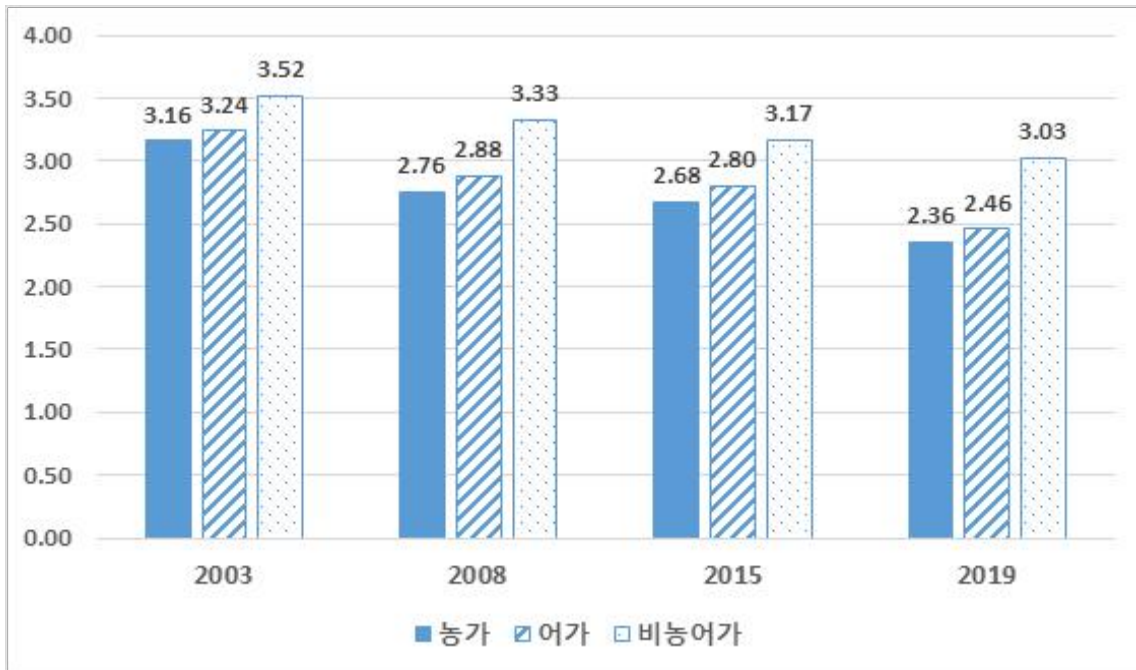


주: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 [그림 V-9]와 [그림 V-10]은 각각 2인 이상 가구와 전 가구를 기준으로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추이를 추정한 결과임
-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시계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시현
 - (예) 비농어가(전 가구 기준)
 - 2.91명(2008년) → 2.64명(2015년) → 2.42명(2019년)
 - [그림 V-9]~[그림 V-10]에서 보듯이 다른 가구 유형도 마찬가지로의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 <표 V-3>~<표 V-4>에서 보듯이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계층별 가구원 수 분포는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시현
 - (예) 농가(2019년 전 가구 기준)
 - 2.12명(1분위) → 2.14명(3분위) → 2.34명(7분위) → 3.06명(10분위)
 - 다른 가구 유형도 마찬가지로의 패턴을 나타냄
- 시계열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진전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등 두 가지 요인이 같은 방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가구원 수와 취업인 수(즉, 소득자 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 가능

[그림 V-9] 농·어·비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추이(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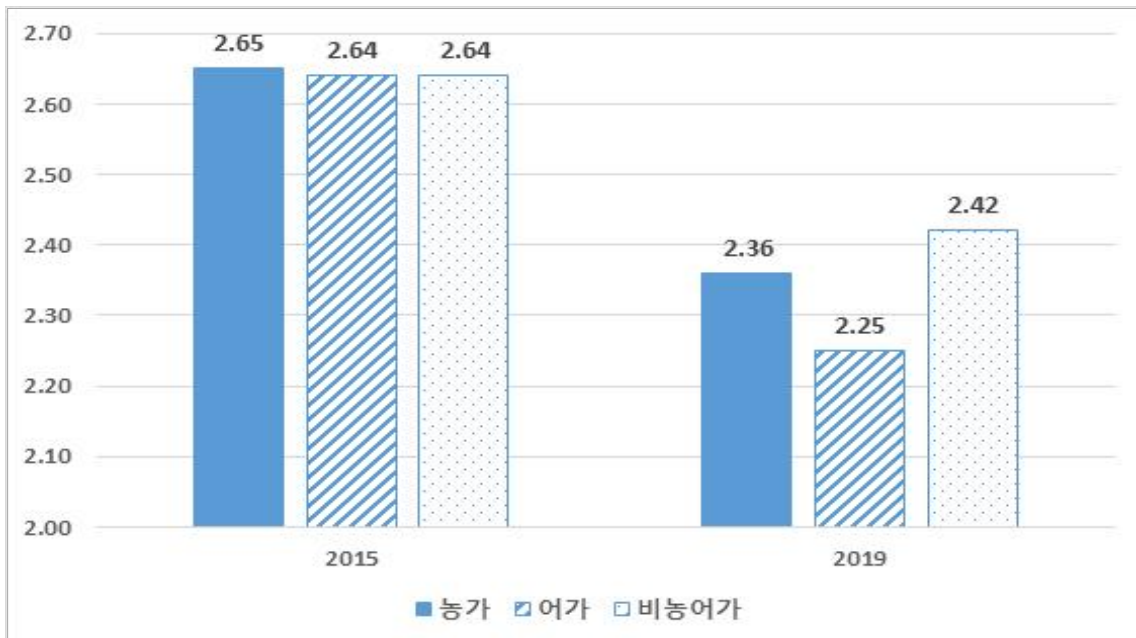
(단위: 명)



주: 1. 2015년, 2019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03년, 2008년: 이동규 외(2018)의 [그림 IV-7]을 발췌 인용

[그림 V-10] 농·어·비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추이(전 가구)

(단위: 명)



주: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라.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결정요인분석

- <표 V-5>는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가구소득결정방정식을 회귀분석(OLS)을 수행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2003년, 2008년, 2015년의 추정결과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이동규 외(2018)의 추정결과를 발췌 인용
 - 2019년의 경우에는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비농어가 대상)의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한 후 회귀분석하여 추정
 - 2003년과 2008년의 추정결과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15년과 2019년의 추정결과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대상으로 분석
 - 논의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절에서 가구소득결정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2019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

- <표 V-5>에서 보듯이 가구소득결정식 분석을 위해 사용한 설명변수는 가구유형더미(농가더미, 어가더미), 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더미(남자=1), 각급 학력별 학력더미를 채택함
 - 물론 이들 변수 외에도 가구소득 결정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분석에 사용하는 서베이 자료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 가운데 가구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변수의 범위를 선정
 - 기타 소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경력, 경험, 운,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정보들은 서베이 정보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 2019년 기준의 가구소득결정식은 상기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설정A와, 가구원 수의 제곱항을 추가로 포함시킨 설정B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
 - 사실상 두 가지 설정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는 두 가지 설정 사이에 각 계수 추정치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로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유형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설정한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가구유형 간 가구소득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설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농가더미의 계수추정치는 음수로서 -1,177.0~-1,170.7로 추정되었는데,
 - 회귀분석시에 가구소득 단위를 만원 단위로 설정한 만큼, 상기 계수추정치의 의미를 해석하면, 농가의 (연간)가구소득이 비농어가에 비해 평균 1,170만~1,177만원 정도 작음을 시사
 - <표 V-4>에서 2019년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농가소득 평균이 약 3,614만원, 비농가의 경우에는 5,831만원으로 약 2,217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 동 소득차액 중 약 절반 정도는 가구유형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 나머지 차액은 여타 소득결정요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소득격차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어가의 경우에는 더미의 계수추정치가 771.9(설정A) 또는 731.8(설정B)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게 추정
 - 이는 어가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비농어가보다 대략 750만원 정도 더 많음을 시사(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기준)
 - 그런데 <표 V-4>에서 2019년 어가의 평균소득이 4,841.5만원으로 비농어가의 5,830.9만원보다 990만원 정도 더 적음
 - 이는 가구유형의 차이에 의한 요인으로는 어가가 비농어가보다 가구당 평균 731.8만~771.9만원 정도 더 높지만, 여타의 가구소득 결정요인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략 1,720만~1,760만원 정도 어가의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더 적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9년의 두 가지 설정(A, B)을 보면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의 제곱항의 계수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가구원 수 제곱항의 계수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요인변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가구원 수의 계수값이 양수(+)로 추정되었는데, 설정B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 제
 곱항의 계수추정치가 -115.66으로 음(-)의 값을 지니면서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추정
 - 가구원 수 제곱항의 계수추정치에 대한 p-값이 2%(양측 검정 기준)로 유의성
 이 상당히 높게 추정됨
 - 가구주 연령과 동 변수의 제곱항이 부호가 반대이면서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다는 것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지만, 증가율이 점차 작아지면서 가구소득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가구소득결정식의 형태가 가구주 연령에 대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나타내
 므로, 2차방정식의 꼭지점 연령(가구주 연령 계수추정치를 가구주 연령 제곱
 항의 계수추정치의 2배로 나눈 값에서 부호를 바꾼 것)을 구해보면 46.5세

$$\left(= -\frac{235.31816}{2 \times (-2.53080)} \right)$$
, 설정B 기준)로 추정
 - 이는 가구주 연령이 46.5세보다 낮은 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구소득이 더 큰 값을 나타내지만,
 - 46.5세보다 높은 연령층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하
 기 시작함을 시사
 - 또한 평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애주기상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정점연령
 이 대략 40대 중·후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그 밖에 농가와 어가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60대 중·후반인 반면, 비농어가의 경
 우에는 평균연령이 51.47세(2019년)이기 때문에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
 격차 중 상당 부분이 가구주(경영주)의 연령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가구주(경영주) 학력이 무학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급 학력더미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중등학교 더미의 경우에는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고등학교·전문대 더미의 계수추정치는 음
 수(-)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에는
 반대로 계수추정치가 양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

- 가구주 학력이 초·중등인 가구의 경우에는 무학가구에 비해 오히려 가구소득이 더 작으며,
- 고등학교와 전문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차이가 통계적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 대학·대학원 학력을 지닌 가구의 경우에는 무학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가구소득수준이 높음을 시사
 -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주 학력이 대학, 대학원인 가구의 경우 무학가구보다 가구소득이 각각 평균 1,784.8만원과 695.9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
 - 물론 세대별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다르고 세대 차이에 의한 효과도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위의 차이를 단순히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 격차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신중해야 할 것임
 - 시계열적으로 평균 교육수준이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에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이행할수록 평균 교육수준이 더 높음
 - 따라서 구세대의 고등학교 교육수준과 신세대의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농·어가에 비해 비농어가의 가구주 학력수준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가구주(또는 경영주)의 학력수준 차이가 가구유형별 가구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V-5〉 전 가구(농·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득결정식 회귀분석 결과

대상연도	2003		2008		2015(A)		2015(B)		2019(A)		2019(B)	
	상수	-3797.75 (-6.946***)	-4969.63 (-13.788***)	271.663	80.90289	(0.636)	(0.222)	-3682.86822 (-7.030***)	-3990.70144 (-7.481***)			
농가더미	-311.957 (-4.742***)	-387.226 (-5.056***)	191.4769	175.480	(1.740*)	(1.539)	-1176.97682 (-4.498***)	-1170.69567 (-4.477***)				
어가더미	-654.994 (-7.755***)	-352.731 (-3.263***)	503.3064	506.5158	(2.782***)	(2.822***)	771.94927	731.76436	(3.023***)	(2.854***)		
가구원 수	354.9905 (15.645***)	554.22	1035.955	1271.6	(18.875***)	(3.370***)	1370.80156	2024.01192	(22.587***)	(7.863***)		
가구원 수 ²				-36.4007		(-0.562)		-115.66028		(-2.331**)		
(가구주) 연령	195.8505 (7.691***)	254.934	30.64181	27.76689	(3.687***)	(2.340**)	247.80016	235.31816	(12.988***)	(12.187***)		
연령 ²	-1.82696 (-7.184***)	-2.40141	-0.42179	-0.3948	(-8.104***)	(-4.517***)	-2.63163	-2.53080	(-16.337***)	(-15.667***)		
성별(남자)	212.6427 (3.079***)	538.4714	533.7877	489.1719	(6.400***)	(5.510***)	729.50722	643.85401	(7.582***)	(6.537***)		
초등학교	266.4364 (2.803***)	-173.174	-191.361	-201.45	(-1.598)	(-1.674*)	-793.86997	-770.69153	(-4.918***)	(-4.769***)		
중학교	452.392 (3.920***)	2.00847	326.1804	311.8435	(2.398**)	(2.271**)	-914.42151	-918.70156	(-5.591***)	(-5.622***)		
고등학교	863.3158 (7.280***)	394.6075	1050.392	1027.928	(7.306***)	(6.948***)	-216.97287	-230.75561	(-1.400)	(-1.488)		
전문대	1440.295 (9.738***)	1066.024	1165.085	1138.538	(5.686***)	(5.050***)	-182.29614	-19.07403	(-0.100)	(-0.011)		
대학	1834.639 (14.214***)	1801.92	1838.209	1814.997	(10.256***)	(9.828***)	1805.03401	1784.83536	(9.784***)	(9.653***)		
대학원	3258.013 (14.480***)	3219.387	2893.317	2862.992	(10.639***)	(10.355***)	758.20367	695.89321	(3.123***)	(2.852***)		
표본 수	8,870	8,913	13,309	13,309			12,631	12,631				
R ²	0.19254	0.23568	0.20659	0.20708			0.18359	0.18439				

주: 1. 2019년: 처자 추정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OLS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2. 2003년, 2008년, 2015년: 이동규 외(2018), <표 IV-2>를 발췌 인용
3. () 안은 z-값을 나타냄. 단,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으로 추정
4.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가구는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계수지가 (+)인 흑자가구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도 있음
 - <표 V-6>에서는 가구소비지출이 가구소득보다 더 많은 가구를 적자가구로 정의하고 적자가구비율을 가구유형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 2019년 현재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적자가구비율은 농·어·어가, 비농어가의 경우 각각 30.3%, 25.4%, 11.1%로 추정되며, 따라서 농·어가가 비농어가보다 적자가구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 농·어가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평균 60대 중·후반인데 이는 상당수의 농·어가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생애주기상 은퇴기에 속하는 반면에,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에 불과하여 생애주기상 왕성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음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생애소득경로와 생애소비지출경로 모두 연령에 대해 역U자의 형태를 보이는데, 다만 후자의 경로곡선의 곡률이 전자의 경우보다 완만한 형태를 지님
 - 따라서 생애소득·소비지출경로를 결합하여 살펴보면, 생애주기상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음(-)의 저축(즉, 자산 처분 또는 대출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부분을 충당하는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지출을 적게 함으로써 양(+)의 저축 패턴을 보임
 - 따라서 평균적 관점에서 볼 때 생애주기 동안 음(-)의 저축과 양(+)의 저축이 상쇄되어 생애순누적저축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현상을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라고 지칭하기도 함

- 따라서 비농어가에 비해 은퇴기 인구(또는 가구)비중이 (훨씬) 높은 농·어가에서 적자가구비율이 현저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을 생애주기가설에 빚대어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V-6> 농·어·비농어가의 적자가구비율 추이

(단위: %)

구분	연도	농가	어가	비농어가
2인 이상 가구	2003	24.72	31.22	6.37
	2008	26.06	29.25	5.77
	2015	27.37	21.64	10.46
	2019	30.56	26.53	10.35
전 가구	2015	27.39	21.17	13.39
	2019	30.27	25.42	11.14

주: 1. 2015년, 2019년: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03년, 2008년: 이동규 외(2018)의 <표 IV-3>을 발췌 인용
 3. 적자가구: 소비지출 > 총소득인 가구로 정의

- <표 V-7>은 2019년 전 가구 기준의 풀링자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줌
 - <표 V-5>의 가구소득결정식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에서 추정한 2003년, 2008년, 2015년의 회귀분석 결과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복 최소화 차원에서 생략하고, 본 절에서 추정한 2019년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함

- 가구소비지출 결정식은 가구유형더미(농가더미, 어가더미),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제공항 포함), 가구주 성별더미, 가구주의 각급 학력더미, 그리고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 다만 이전 연도의 경우와 달리 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정보가 실제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값이 아니고 평균소비성향결정방정식에 대한 회귀분석(<표 V-1> 참조)을 통해 가계소비지출 정보로부터 역추정한 값으로 구성되는 만큼,
 - 가구소비지출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추정소득을 다시 가구소비지출에 대한 결정식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어반복(tautology)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물론 가구소비지출로부터 평균소비성향을 추정하고, 소비성향의 역수를 취해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만큼, 가구소득 추정치가 가구소비지출에 대해 비선형의 형태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록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계수추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소득변수의 계수추정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함
 -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계수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상기의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추정치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교육더미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의 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아래에서는 2019년 소비지출함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해석함
-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추정치는 각각 -428.26994와 -22.23939인데 이는 이들 가구의 가구소비지출이 비농어가보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각각 428만원과 22만원씩 적음을 시사
- 가구원 수의 계수추정치는 470.64898인데 이는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가구소비지출이 평균적으로 471만원씩 증가함을 시사
- 회귀방정식 추정식에서 상수항이 897.26835로 추정되었는데, 횡축의 절편이 양수(+)이므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지만 소비성향의 한계 증가율이 평균증가율보다 작기 때문에 가구소비지출이 가구원 수에 대해 일정한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가구주 연령의 계수추정치는 양수(+85.20129)로 추정된 반면, 동 변수의 제곱항의 계수추정치는 -0.87432로 추정되어, 가구주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구소비지출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
- 가구주 연령에 대한 가구소비지출의 정점 연령을 나타내는 꼭지점 연령은 $48.7\text{세}(= -\frac{85.20129}{2 \times (-0.87432)})$ 로 추정
 - 이는 가구주 연령이 48.7세보다 연령이 적은 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구소비지출이 평균적으로 더 큰 값을 가지는 반면,
 - 48.7세보다 연령이 많은 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구소비지출이 적어짐을 시사

- 가구주 학력더미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무학인 경우와 비교해볼 때 가구주 학력이 초등·중등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평균 약 356만~359만원 정도 적고, 대학·대학원인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334만~556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가구주 학력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인 경우에는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 관점에서 가구소비지출 수준이 평균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확신하기 어려움

- 가구소득에 대한 계수는 0.12961로 추정되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19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연간 기준 가구소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지출 정보로부터 소득값을 역산하여 추정하였던 만큼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표 V-7〉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비합수 회귀분석 결과(OLS)

대상연도	2003		2008		2015		2019	
	상수	-1214.92 (-5.500***)	-1306.67 (-8.886***)	679.9119 (2.523**)	897.26835 (5.793**)			
농가타미	10.83523 (0.480***)	104.2615 (3.738***)	378.204 (11.329***)	-428.26994 (-5.684***)				
어가타미	-100.489 (-3.160***)	-67.3412 (-2.013**)	370.7299 (69.439***)	-22.23929 (-0.527)				
가구원 수	188.8947 (19.164***)	269.5473 (22.201***)	340.8163 (11.613***)	470.64898 (19.857***)				
(가구주) 연령	63.76548 (6.199***)	70.23818 (12.407***)	2.38459 (0.545)	85.20129 (14.471***)				
연령 ²	-0.62081 (-6.072***)	-0.69105 (-13.620***)	-0.09109 (-3.310***)	-0.87432 (-17.253***)				
성별(남자)	-2.75727 (-0.098)	107.4565 (4.509***)	46.57537 (1.357)	151.59760 (5.294***)				
초등학교	83.9889 (2.399**)	-62.5541 (-1.800*)	-183.516 (-1.705*)	-356.28852 (-7.407***)				
중학교	228.245 (5.312***)	65.82014 (1.625)	-37.4284 (-0.302)	-358.78862 (-7.237***)				
고등학교	346.0183 (7.889***)	238.2891 (5.484***)	167.6455 (1.156)	-96.66611 (-1.945*)				
전문대	463.702 (8.161***)	462.5679 (7.113***)	253.4556 (1.505)	-5.09961 (-0.016)				
대학	624.6057 (12.055***)	618.8425 (10.592***)	423.7562 (2.454**)	334.21999 (5.853***)				
대학원	979.1178 (9.452***)	837.5453 (8.070***)	574.981 (2.891***)	555.50533 (8.356***)				
소득	0.2559 (20.337***)	0.2391 (18.035***)	0.20235 (9.455***)	0.12961 (13.767***)				
표본 수	8,870	8,913	13,309	12,631				
R ²	0.51965	0.58013	0.37885	0.41749				

주: 1. 201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자료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OLS로 추정된 저자 추정치. 단, 오차항의 표준 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범(robust standard error)으로 추정
 2. 2003~2015년: 이동규 외(2018) <표 IV-4>의 추정결과를 인용
 3. () 안은 z-값을 나타냄.
 4.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마.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소득계층별 분포

- 본 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이 농가와 어가 가구, 그리고 농·어가와 비농어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 단위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분위별 소득지원효과, 즉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해봄
 - <표 V-8>과 <표 V-9>는 2019년 현재 각각 농가와 어가 가구(1인 가구 포함)에서의 소득분위별 소득증가효과를 추정
 - <표 V-10>은 농·어가와 비농어를 모두 포괄한 전 가구(1인 가구 포함) 기준의 소득분위별 소득증가효과를 추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효과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가 불확실함
 - 따라서 <부록 2>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의한 소득증대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농가 소득증대효과의 하한선(lower limit)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직·간접적으로 동 법인들과 관계하여 영농·영어활동을 왕성하게 영위하는 농·어가일수록 시장소득, 즉 농업소득·어업소득의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특히 그런 가구일수록 농·어가 안에서는 중·고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가능
 - 이런 예측은 이미 선행연구(이동규 외, 2018)에서 확인된 바 있음
 - 이동규 외(2018)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동 법인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농가와 어가 안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효과가 누적적으로 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소득증가 혜택의 소득분위별 점유비중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는데, 동 점유비중이 가구소득의 소득분위별 비중분포에 비해 고소득층 집중도가 더 높게 추정되었음

- <표 V-8>과 <표 V-9>에서 보듯이 2019년 농·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와 비슷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의 경우에도 그 이전 기간(예: 2015년)의 경우와 대동소이하게 농가와 어가 안에서는 동 조세감면에 의한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 증가효과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액뿐만 아니라 혜택비중도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
- <표 V-8>에서 보듯이 2019년 상기의 조세감면을 통해 증가된 농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약 55,000원 수준
 -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원혜택(즉, 소득증가 효과)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분위별 소득증가 효과의 점유비중 분포
 - 분위별 소득증가 혜택의 수혜점유비중(%)
0.6%(1분위) → 3.6%(4분위) → 7.0%(6분위) → 10.3%(8분위) → 44.4%(10분위)
 - 이런 패턴은 이동규 외(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19년 이전 기간에도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어가의 경우(<표 V-9> 참조)에도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는 패턴은 농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임
 - 2019년 현재 상기의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가구당 평균 어가소득의 증대효과는 약 65,000원 수준으로 추정
 - 소득증가 효과의 대부분은 상위 30% 가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
 - 전체 소득증가 효과 중 8~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소득증가 혜택의 거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
- 이상에서 보듯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농가와 어가 안에서는 상기의 조세감면 정책이 상대소득격차를 다소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소득보전(즉 증가) 규모가 가구(총)소득 대비 0.13%(어가)에서 0.15%(농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농가와 어가 내부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소득분배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음

<표 V-8> 총소득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가, 1인 가구 포함)

(단위: 만원, 원, %)

2019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 (A, 만원)	170.4	1,097.1	1,419.7	1,825.6	2,259.8	2,798.7	3,549.6	4,551	6,197.3	12,214.5	3,608.6
세제지원 후 (B, 만원)	170.7	1098	1,421.1	1,827.6	2,262.6	2,802.5	3,554.2	4,556.7	6,206.2	12,238.9	3,614.2
지원액=차이 (B-A, 원)	3,324	9,859	14,305	19,991	27,761	38,800	46,725	57,032	88,484	244,773	55,106
지원액 비중	0.6	1.8	2.6	3.6	5.0	7.0	8.5	10.3	16.1	44.4	100.0

주: 2019년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표 V-9> 총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어가, 1인 가구 포함)

(단위: 만원, 원, %)

2019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 (A, 만원)	-1,710.8	1,117.3	1,653.0	2,197.6	2,748.6	3,461.4	4,443.0	5,823.7	8,132.7	20,593.9	4,835.0
세제지원 후 (B, 만원)	-1,710.6	1,117.9	1,653.8	2,199.2	2,750.7	3,464.1	4,447.5	5,830.5	8,142.3	20,630.1	4,841.5
지원액=차이 (B-A, 원)	2,215	6,009	8,422	15,281	21,031	27,082	44,582	68,114	95,775	361,947	64,822
지원액 비중	0.3	0.9	1.3	2.4	3.2	4.2	6.9	10.5	14.8	55.8	100.0

주: 2019년 어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 앞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듯이, 농가와 어가 안에서는 상기의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증가된 농·어가 소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농·어가의 가구소득 수준이 비농어가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낮기 때문에, 농·어가와 비농어가를 함께 풀링(pooling)한 경우에는 농·어가 안에서 본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물론 <표 V-10>에서 보듯이 조세감면을 통해 증가된 농·어가의 가구소득 분포가 전 가구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소득층일수록 평균적인 가구소득 증가액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점유비중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지는 분포 패턴을 보임

- 소득분위별 소득증가 점유비중: 2.3%(1분위) → 6.6%(5분위) → 31.0%(10분위)
- 농가와 어가 안의 경우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효과 집중도가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다만 이 정도의 소득계층별 소득증가 효과의 비중 분포 차이가 가구소득 비중 분포 차이에 비해 얼마나 더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표 V-10>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음

- 다음 항에서 동 정책의 조세감면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 변화율로 측정·평가한 결과를 미리 간략히 소개하자면, 비록 소득증가 효과의 절대 크기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치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세감면의 결과 지니계수가 작아지므로 (+)의 소득분배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가구(총)소득 규모에 비해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증가액 수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성의 절대크기는 매우 작음

<표 V-10> 총소득 분포 및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2019년, 농·어·비농어가 포함 전 가구)

(단위: 만원, 원, %)

2019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 (A, 만원)	855.4	1,575.0	2,180.9	2,843.6	3,591.2	4,382.4	5,502.2	6,916.2	9,398.6	19,468.1	5,671.2
세제지원 후 (B, 만원)	855.5	1,575.2	2,181.2	2,844.0	3,591.5	4,382.8	5,502.6	6,916.6	9,399.1	19,469.4	5,671.6
지원액=차이 (B-A, 원)	968	1,939	2,544	3,208	2,768	3,808	3,957	4,636	5,032	12,951	4,181
지원액 비중	2.3	4.6	6.1	7.7	6.6	9.1	9.5	11.1	12.0	31.0	100.0

주: 1. 2019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통합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19년 통계청 추계가구 수(19,971,359가구)와 농가경제조사자료와 어가경제조사자료의 농가 수(808,970가구)와 어가 수(50,909가구)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추정한 분석결과임

바. 농·어가 소득지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 <표 V-11>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농·어가 내부의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과, 전 가구 기준의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방법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를 보여줌

- <표 V-11>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어가의 지니계수(총소득 기준)는 0.531363으로 농가의 0.45781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 <표 V-4>에서 보듯이 어가의 평균 가구소득(4,841.5만원)이 농가의 평균소득(3,614.2만원, 각각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 기준)보다 현저하게 높지만,
 - 상대소득격차는 어가가 농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가의 가구소득 분포의 변이도가 농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표 V-8>~<표 V-9>에서 보듯이 농가와 어가 안에서는 상기 조세감면 정책을 통한 소득증가 효과가 고소득층에 누적적으로 많이 집중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농가와 어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37%(0.457645 → 0.457816)와 0.036%(0.531175 → 0.531363) 상승함으로써 동 정책의 결과 상대소득분배격차가 조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농가와 어가 안에서는 생산 활동을 촉진한 정책의 결과로서, 영농·영어 생산 활동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취지가 잘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전 가구 대상으로 조세감면 정책의 소득분배구조 효과를 추정하면, 조세감면에 따라 지니계수가 0.0017% 감소(하락, 0.460531 → 0.460523)하는 것으로 추정
 - 비록 정책효과의 절대크기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표 V-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기준)

(단위: %)

2015년	농가	어가	전체 가구
지원 전	0.425477	0.490939	0.4039481
지원 후	0.425644	0.491094	0.4039475
증감률	0.039267	0.031673	-0.000146
2019년	농가	어가	전체 가구
지원 전	0.457645	0.531175	0.460531
지원 후	0.457816	0.531363	0.460523
증감률	0.037477	0.035538	-0.001675

- 주: 1. 농가는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 동향조사자료)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
 2. 2019년: 저자 추정치
 3. 2015년: 이동규 외(2018)의 <표 IV-8>을 일부 발췌 인용 및 오류(전체 가구 부분 추정결과)에 대해 저자 수정하여 추정

2. 정책시사점

- 상기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농 간 또는 도·어 간 상대소득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동규 외(2018)의 효과성 분석에서도 위와 동일한 정책효과성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던 것과 연계해보면, 지속적으로 동 조세감면 정책의 정책효과성이 유의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동규 외(2018)에서 2015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가구 기준의 지니계수 감소율이 0.0001%로 2019년의 효과(0.0017% 감소)보다 훨씬 작았던 것을 보면, 작지만 정책효과성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 정책의 목적이 고령화 및 젊은 층의 이농·이어 및 향도 현상에 따른 농어촌 인구 공동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의 침체라는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만큼, 2019년에도 동 정책의 정책효과는 계속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평가됨

- 다만 동 정책의 합목적성에 의한 양(+)의 정책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 효과의 절대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량적 관점에서 정책효과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 밖에 농·어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자활과 경제활동의 독립성·자립성을 확보하여 동 조세감면 정책의 도움 없이 농어촌 경제구조가 자립·자활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동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동 정책은 다른 조세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경제구조가 자립·자활단계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어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을 통한 직접적인 농·어가 소득보조·지원을 통해 소득증가 효과가 달성된 만큼 농·어촌의 경제활동 수준이 자립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임

VI. 결론



Ⅵ. 결론

1. 요약

- 농업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위하여 농어업법인 현황을 우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농업법인은 23,315개이며, 영농조합법인이 10,230개, 농업회사법인이 13,085개로 과반 이상(56.1%)이 농업회사법인임
 - 법인별 매출액 규모, 자본금 등을 살펴보면 법인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인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1억원 미만 법인이 전체 결산법인의 37.6%, 1억~10억원 미만이 32.7%,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29.7%임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478백만원,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660백만원 정도임
 - 농업법인 종사자는 약 16만명으로 농업법인당 평균 6.9명이 종사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중심(39.9%), 농업회사법인은 가공·유통업 중심(58.3%)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주로 농업인인 데 비하여,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음
 - 2019년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비중은 3.7%(833억원),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비중은 20.8%(9,626억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비중 한도인 90%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수는 법인당 평균 15.0명,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수는 법인당 평균 6.4명임

- 2016년 기준으로 어업법인은 1,127개이며, 이 중 영어조합법인이 985개, 어업회사법인이 142개로 영어조합법인이 전체의 87.4%를 차지함

- 해수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료이기는 하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영어 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운영주체별 어업법인을 보면, 2016년 어업법인 1,127개 중 출자자 공동운영 및 대표자 단독운영으로 구성된 실질운영법인은 1,084개이며, 출자자 개별 운영법인은 43개임
 - 영어조합법인은 총 985개로 이 중 실질운영법인은 946개, 출자자 개별 운영법인은 39개임
- 어업가구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업가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양식어업 가구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어선을 이용한 어로어업가구 비중은 증가함
- 양식어업가구의 비중은 1985년 46.0%에서 2019년 30.0%로 감소
 - 어로어업가구의 비중은 1985년 27.3%에서 2019년 40.3%로 증가
- 동 조세특례 지원수준을 보면, 주로 농업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어업은 상대적으로 법인 수 등의 차이로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전체의 약 5.6%(30억원) 정도로 농가 수 대비 어가 수의 비율과 유사함
- (타당성 분석) 농·어업 산업여건상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방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원방법 적절성) 농어촌 인구고령화와 공동화로 소규모 영세경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려움
 -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대형화를 유도하려면 조세지원 방식이 적절함
 - (지원수준 적정성)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을 장려하는 목적이 농업인 전반의 소득증대라면, 현행 감면조건은 법인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비슷한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음
 - 그러나 조합원 중 일부는 해당 소득이 감면한도를 초과하고 다른 일부는 감

면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의 세금감면액이 개인사업자보다 높을 수도 있음

- (유사중복성) 「조특법」상 조세지출제도가 개별 세법상 세금감면제도 및 재정사업 중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평가

□ (효과성 분석) 동 지원제도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변화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미약하나마 있는 것을 분석됨

- 소득분위별 소득지원효과(소득증대효과)를 추정된 결과, 농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55,000원 수준, 어가는 평균 65,000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구(총)소득 규모에 비해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증가액 수준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음(농가의 경우 0.15%, 어가의 경우는 0.13% 수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고리가 불확실함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의한 소득증대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농가 소득증대효과의 하한선을 도출하면 가구당 평균 32,600원 정도임⁹⁶⁾

□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따라 소득증가 효과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봄

- 농가와 어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37%(0.457645 → 0.457816), 0.036%(0.531175 → 0.531363)로 약간 상승하여 상대소득분배격차가 약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할 경우 농가의 지니계수 상승이 0.022%로 축소되어 상대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줄어들⁹⁷⁾
- 비농어를 포함하는 전 가구 대상으로 동 제도의 소득분배구조 효과를 추정하면 지니계수가 0.0017%(0.460531 → 0.46052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제도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96) 보다 자세한 것은 <부록 2>의 내용 참조

97) <부록 2> 참조

2. 농업회사법인의 관리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농지 투기 등의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부실이 이러한 일탈 행위를 방조하게 됨
 - 2019년 현재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약 45%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운영(휴업, 폐업), 소재불명 등인 법인으로 밝혀짐

- 농업법인제도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간의 실질적 구분이 모호하고, 관리기구가 없으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농지 소유와 농업 진출의 통로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⁹⁸⁾
 - 농업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어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목적 외 사업을 통해 투기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를 제재하는 것이 마땅함
 - 그러나 이러한 제재를 동 세제지원의 축소를 통해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임

- 우선적으로 농업법인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21년 3월, 도시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에 발의한 바 있음⁹⁹⁾

- 농업법인 관리기구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8) 마상진 외(2020), p. 46.

9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3. 29.)

- 프랑스, 일본, 독일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구를 두고 있음¹⁰⁰⁾
 - 프랑스: 농업회의소에서 컨설팅 진행
 - 일본: 농업회의소 산하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에서 설립 운영 상담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지도 등
 - 독일: 협동조합협회에서 회원조합의 경영 및 조세문제, 법률문제 상담, 경영 상태 심사 등

-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때마침 2021년 7월 23일 국회에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통과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일부 반영됨¹⁰¹⁾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함
 -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 도입
 - 현행 법률은 법인 설립등기 후에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게 되어 있던 것을 법인 설립등기 이전에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¹⁰²⁾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은 ①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②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함

100) 마상진 외(2020), p. 175.

10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7. 24.)

10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3. 결어

- 3개 평가대상 감면제도는 조세지출이라는 지원방법의 적절성, 유사중복지원의 배제 등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지원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법인화를 유도하기에는 지원수준이 다소 낮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살펴보면, 개인(가족)농의 비중이 법인 농업경영체보다 훨씬 높음
 -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농업의 속성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다른 농산물 가공·유통이나 수출업 등에 있어서는 가공 기술, 마케팅이나 무역 전문성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함
 -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인력과 함께 일련의 농업 생산 및 유통을 하고, 그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농업 생산의 속성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추론한다면, 법인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해서 법인화가 크게 증가할지는 미지수임

- 효과성 측면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효과성도 인정할 수 있음
 - 소득 증대 규모는 가구 총소득 규모의 0.08~0.15% 수준이나, 농어가 소득이 비농어가 가구에 비하여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무시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3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연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본래 목적에 충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부 일탈 법인 때문에 동 조세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세제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농업법인제도(어업법인 포함)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나타나는 일부 농업법인의 제도 악용 현상임
- 따라서 세제 개선보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업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 관련 3개 개정 법률안은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2021. 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동신·조덕호·여창환,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2016, pp. 161~184.
- 김미복·김수석,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수석,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p. 105~126.
- 김수석·박석두,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_____,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KREI 이슈리포트』 제36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김용민,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Vol. 2, No. 1, 2010, pp. 77~85.
- 김정섭·김미복,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김정호·정영환·최은아, 『농업법인조사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환경농업연구원, 2015. 11.
- 김학수·박노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2013.
- 나채준·왕승혜·김수홍,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업무편람』, 2011. 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_____,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0a.
- _____,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2020b.
- _____,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매뉴얼』, 2019.
- _____, 『농업법인 실태조사』, 2016.
- 마상진·안석·김유나,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0.
- 박문호·임지은,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1.
- 사동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2018, pp. 235~259.
-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전남대학교, 2017. 1.
- 서희열·심충진·최천규,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세무학회, 2010. 8.
-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2.
- 윤준상·김성록·김현상·김두순,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 조직 형태와 주민 참여율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2017, pp. 15~25.
- 이동규·김승래·성명재·이명현,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이원일·허철행, 「우리나라 어선감척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수산경영논집』, 제49권 제4호, 2018, pp. 69~81.
- 이준구·조명환, 『재정학』, 제6판, 문우사, 2021.
- 임소영·원은송,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쟁점과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10.
- 임종선·김경신, 「영어조합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2016, pp. 375~412.
- 장태평·정규언·서희열,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2011, pp. 299~325.

- 정재원·이인규·김성섭,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계획』, 제24권 제3호, 2018, pp. 55~62.
- 조훈석·남종오,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주요 연안어업의 자원회복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수산경영논집』, 제50권 제1호, 2019, pp. 17~37.
- 통계청,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18.
- _____,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0.
- _____,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1.
-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6 어업법인 조사보고서』, 20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독일-세법개정안 2020 승인」, 『주요국의 조세동향(21-01호)』, 2021.
- 홍범교, 『농지 관련 세제 개편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 홍범교·이태호·이명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황영모·신동훈·배균기,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과 농산물 판매성과 간의 관계분석:농업총조사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26권 제2호, 2016, pp. 87~121.
- 農林水産省, 『農業経営統計調査』, 2021. 2. 26.
- _____, 『2020年 農林業センサス結果の概要(概数值)』, 2020. 11. 27.
- Agreste, *GRAPH'AGRI 2020 - L'agriculture, la forêt, la pêche et les industries agroalimentaires-*, 2020.
- BMEL, *Agrarpolitis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19*, 2019.
- _____, *Daten und Fakten*, 2017.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BMEL) *Wichtige steuerliche Regelungen für die Land- und Forstwirtschaft*, 2019.
- DEFRA,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9*, 2020.
- Van Der Veen, H., et al., *Exploring agricultural taxation in Europe*, LEI, 2007.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2021. 7. 24.

_____,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2021. 3. 29.
농민신문, 「농가 경영악화 ‘현실’…지난해 주요 농작물 34개 소득 줄어」, 2020. 9. 28.

<웹사이트자료>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360/subview.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Idx=224>

독일연방 농식품부, <https://www.bmel.de/>

독일연방 법무부, <http://www.gesetze-im-internet.de/>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

일본 농업법인협회, <https://www.hojin.or.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프랑스 농림축산식품부, <https://agriculture.gouv.fr/>

프랑스 농업회의소, <https://chambres-agriculture.fr/>

후쿠이현 홈페이지, <https://www.pref.fukui.lg.jp/>

EU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YAMATO, <https://www.yamato-gyosei.com/kigyo-sogyo/nogyo/農業法人形態による制度の比較/>

부 록



<부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록 2> 농업회사법인의 효과를 제외한 정책효과 분석

- 여기서는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조세감면(2019년 기준 총 227억원: 소득세 41억원, 법인세 186억원) 효과가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동 효과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농업생산물을 취급하고 또한 농민들이 주된 조합원이기 때문에 동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대부분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이 9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명확함
 - 농가경제조사를 비롯하여 국내의 모든 미시서베이 자료는 종사하는 업종(산업)이나 직종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종사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주주 여부 또는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농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불확실함
 - 그러므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상기의 조세감면 효과 중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제외한 경우를 정책효과의 최저한(lower limit)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부록의 추정치는 농가소득 지원정책 효과성의 최저한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포함한 <표 V-8>과 <표 V-10>에 대응하여 농가 대상 및 농가를 포함한 전 가구 대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지원 효과를 각각 <부표 1>과 <부표 2>에 정리하였으며, 지니계수 변화 효과는 본문의 <표 V-11>에 대응하여 <부표 3>으로 정리하여 보고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조세감면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는 농가 가구당 평균 40.9% 정도 축소됨(55,106원 → 32,567원, <부표 1> 참조)
 - 미시서베이자료(농가경제조사)에 주어진 정보로는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보유 또는 근무(종사) 여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
 - 따라서 정책효과의 최저한이라는 의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이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지원 효과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비례적으로 소득증대 효과를 조정하여 추정
 - 정책효과를 지니는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효과 변화가 비례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효과를 추정
 - 그에 따라 소득계층별 수혜분포 역시 비례적으로 하향 추정되었으며, 분위별 비중은 변화가 없음

<부표 1> 총소득 및 영농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가, 1인 가구 포함)

(단위: 만원,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 (A, 만원)	170.5	1,097.5	1,420.3	1,826.5	2,260.9	2,800.2	3,551.5	4,553.3	6,200.9	12,224.5	3,610.9
세제지원 후 (B, 만원)	170.7	1,098.0	1,421.1	1,827.6	2,262.6	2,802.5	3,554.2	4,556.7	6,206.2	12,238.9	3,614.2
지원액=차이 (B-A, 원)	1,965	5,827	8,454	11,815	16,406	22,930	27,614	33,705	52,293	144,659	32,567
지원액 비중	0.6	1.8	2.6	3.6	5.0	7.0	8.5	10.3	16.1	44.4	100.0

주: 2019년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 한편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어가와 비농어를 포함하여 전 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소득지원 효과가 38.9% 감소(4,181원 → 2,567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단독의 경우보다 혜택 감소율이 다소 작아짐 (<표 V-10>과 <부표 2> 참조)

<부표 2> 총소득 분포 및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2019년, 농·어·비농어가 포함 전 가구)

(단위: 만원,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 (A, 만원)	855.5	1,575.1	2,181.0	2,843.8	3,591.3	4,382.6	5,502.3	6,916.4	9,398.8	19,468.6	5,671.4
세제지원 후 (B, 만원)	855.5	1,575.2	2,181.2	2,844.0	3,591.5	4,382.8	5,502.6	6,916.6	9,399.1	19,469.4	5,671.6
지원액=차이 (B-A, 원)	581	1,160	1,528	1,931	1,671	2,305	2,426	2,825	3,093	8,150	2,567
지원액 비중	2.3	4.5	6.0	7.5	6.5	9.0	9.5	11.0	12.0	31.7	100.0

주: 1. 2019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통합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2019년 통계청 추계가구 수(19,971,359가구)와 농가경제조사자료와 어가경제조사자료의 농가 수(808,970가구)와 어가 수(50,909가구)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추정된 분석결과임

- 농가, 어가, 비농어가 각각의 평균소득이 다르고, 따라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각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귀속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우 농가소득 증가효과가 계층별로 비대칭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 가구 대상의 소득지원 효과비중 분포는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포함한 경우의 분포(<표 V-10>의 다섯째 행)와 이를 제외한 경우의 분포(<부표 2>의 다섯째 행)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의 절대크기 차이가 매우 작지만, <표 V-10>(다섯째 행)에 비해 <부표 2>(다섯째 행)의 비중은 2~6분위와 8분위에서 소폭 비중이 감소(0.1~0.2%p)한 반면, 10분위에서는 오히려 0.7%p 상승(31.0% → 31.7%)

- 전체 가구 가운데 농가의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낮는데, 농업법인회사 조세감면이 농가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제외하고 영농조합법인 조세감면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효과만 분리하면,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축소되기 때문에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속된 중·저소득층에서는 소득지원 효과의 비중이 축소
 - 한편 농가의 분포비중이 매우 낮은 최고소득분위(즉, 10분위)에서는 농가의 소득지원 효과 축소에 따른 지원효과의 변화 정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 10분위에서 추가적인 소득지원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이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제외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농·영어조합법인 조세감면에 따른 상대소득격차(지니계수 변화율 기준)의 변화 효과는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음

<부표 3> 영농·영어조합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1인 가구 포함 전 가구, 2019년 기준)

구분	농가	어가	전체 가구
지원 전	0.457715	0.531175	0.460527
지원 후	0.457816	0.531363	0.460523
증감률(%)	0.022061	0.035538	-0.000860

주: 농가는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된 저자 추정치

-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포함해서 분석한 결과(<표 V-11>의 두 번째 블록)와 비교해볼 때, 지니계수 절대수준의 변화방향은 동일하지만 효과의 절대크기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
 - 그에 따라 조세감면을 통한 상대소득격차의 변화효과도 같은 방향에서 절대효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농가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조세감면이 모두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추정된 소득분배 효과는 지니계수 0.037% 상승(<표 V-11>)이었으나,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제외한 경우에는 0.022% 상승(<부표 3>)으로 소득분배격차의 확대 효과가 축소됨
 - 단, 농업회사법인과 어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어가 소득분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음

-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가의 평균소득 수준이 비농어가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에 따른 전 가구 소득 지니계수는 0.0008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부표 3> 참조)
 - 절대수준은 매우 작지만 영농·영어조합법인 조세감면을 통해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소폭 축소
 - 다만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효과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이를 포함한 경우의 소득격차 감소율(0.001675%, <표 V-11>의 두 번째 블록 네번째 행의 마지막 항)보다는 지니계수 변화율이 조금 작음
 - 그런 관점에서 <부표 3>의 추정치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하한선(lower limit)으로 볼 수 있음

